강원특별자치도

도 보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5081 호 2024. 7. 5(금)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2호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3호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4호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 ····· 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5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6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7호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 · 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 1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8호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 1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1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3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1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4호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5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회람								

발행: 대 변 인 실(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7호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8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 3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9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3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0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3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1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2호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3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3호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5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6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7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8호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9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 5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0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5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1호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5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2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3호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6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5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6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6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7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7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7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 ····· 7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8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85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7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7호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91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5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7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6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1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7호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5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82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고시 ····· 11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2호 북면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공사 설치인가 고시 ····· 119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3호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13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4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144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5호 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고시 ····· 264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6호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ㆍ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28차) 변경고시 ····· 269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7호 인제군 용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 28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9호 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정정 고시 ····· 290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26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공모 ····· 308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2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16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3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17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32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 318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4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19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4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20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4-367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강원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21

춘천시 고시 제2024-368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송곡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23
춘천시 공고 제2024-1366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8호선, 대로1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 327
춘천시 공고 제2024-1367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 329
춘천시 공고 제2024-1368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6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 331
원주시 고시 제2024-22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3-1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33
원주시 고시 제2024-23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 고시 ····· 334
원주시 고시 제2024-23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 335
원주시 고시 제2024-237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2-1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37
원주시 고시 제2024-239호 원주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30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38
원주시 고시 제2024-24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70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40
원주시 고시 제2024-24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44
원주시 공고 제2024-1810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349
원주시 공고 제2024-183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3-10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351
강릉시 고시 제2024-2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354
강릉시 고시 제2024-242호 강릉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55
강릉시 공고 제2024-239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4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74
강릉시 공고 제2024-1102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열람 · 공고 ····· 377
강릉시 공고 제2024-1151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재열람 · 공고 ····· 381
강릉시 공고 제2024-117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6호선, 소로2-200호선, 소로2-392호선, 소로2-86호선)사업 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 ··· 385
동해시 고시 제2024-115호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88
동해시 고시 제2024-117호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390
삼척시 고시 제2024-140호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의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399
삼척시 고시 제2024-141호 삼척 도시계획시설(학교: 미로초등학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403
삼척시 공고 제2024-1109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호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 405

영월군 고시 제2024-120호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408
영월군 고시 제2024-1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425
평창군 고시 제2024-107호	지적재조사사업(계촌6・홍정1지구)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하천용도구역 변경)	442
정선군 고시 제2024-51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43
정선군 고시 제2024-5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48
정선군 공고 제2024-763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459
양구군 공고 제2024-831호	2030년 양구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 재공람 · 공고	460
고성군 공고 제2024-767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거진도시계획도로 소1-29)사업 공사완료 공고	462
고성군 공고 제2024-768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5)사업 공사완료 공고	463
고성군 공고 제2024-780호	고성군 공인 폐기 공고	464
고성군 공고 제2024-781호	고성군 공인 폐기 공고	465
양양군 고시 제2024-78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경미한 변경) ·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66

조 례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2호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000억원”을 “6,500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1억주”를 “1억3천만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입”을 “산입(算入)”으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공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대비해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과 이에 따른 발행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 인용법령 현행화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3호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기부활성화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사무의 수정 및 상위법개정에 따른 제도 홍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공모전 등 개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4호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에 근거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기에 도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5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연령 기준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6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시행령 제7조”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연령 기준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7호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의 시설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8호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552방첩부대장
22. 춘천교도소장
23. 원주교도소장
24. 강릉교도소장
25. 영월교도소장
26. 강원북부교도소장
27. 강원서부보훈지청장
28.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제4조제2항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간사 :”를 각각 “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3·5군단 작전과장, 8군단 해안경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를 “제2·3·5군단 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52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과장”을 “552방첩부대 2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간사 :”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7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상황실”을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를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 조직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

원반을 둔다.

⑤ 군·경합동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2군단 대외정책협력장교가 되며 분야별 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⑥ 군·경합동상황실은 정보작전반, 지속지원반, 통신지원반, 경찰반으로 편성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고 조례를 현행화하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의회운영”을 “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회사무처”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행정규칙의 제정·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사회문화위원회: 문화체육국, 복지보건국, 관광국, 대변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산림환경국, 해양수산국,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산업위원회: 경제국, 산업국, 미래산업국, 국제협력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SOC정책관,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3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이 포함된 최초의 인사발령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및 시행(‘24.6월 예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개편 또는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실효성이 미미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제도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심판이 전부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신청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당사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강원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고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25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주택 소유자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4.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양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자녀 이상 가정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저출산 대응 및 양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3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나. 법령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운영으로 강원자치도 및 기관, 단체,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평가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사업

2.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공직자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대상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 중에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청렴대상 수상자가 수상 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을 취소한다. 이 경우 수여한 상패 등은 반환 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

④ 청렴대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수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0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군
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소속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11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장·군수
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4. 개인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조사 등 검증을 거친 후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 등을 마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기여도, 청렴·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감사위원회 위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위원
4. 그 밖에 청렴 또는 부패방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청렴해피콜) 도지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여부와 적극성, 친절도와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측정을 하기 위한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렴해피콜 업무처리) ① 청렴해피콜 운영 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강원자치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도·투명성 등 측정
2. 강원자치도 소관 민원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양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

년도	수상 부문	수상 등급	수상자	주 요 공 적 사 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4호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중 “정착”을 “정착 및 자립”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 등)”을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지원”을 “보건·의료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고충·법률·제도 등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육행사 등 개최

4.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5. 언어·기초학력 및 지역문화 등 사회적응 교육

6. 북한이탈주민의 학업·취업 지원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종전의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민간단체의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를 “지원단체”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를 각각 “지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를 “지원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정착지원에 대한 시책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5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치·관리하고”를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고금리 예금·예치 등)를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무형”을 “유형·무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조직위원회 또는 청산인”을 “조직위원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각각 그 청산법인을 포함한다)”로, “출연, 증여, 기부 받”을 “출연·증여·기부받”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 이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증여·기부받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7호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80(송암동)에 둔다.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단체의 사무실 제공
2. 국가 및 강원자치도 소속 대표 선수의 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제공
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레저활동 시설 제공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의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회관 운영과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4. 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

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회계 및 운영)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하며,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체육회관을 체육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충돌 여지가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8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산업 진흥)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3.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광 통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관광’(관광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다양한 콘텐츠의 경험, 편의, 모빌리티, 실시간 소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9호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0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1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발굴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홍보 및 경영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분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및 판매,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국토보전·수자원함양·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기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2호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작물 재배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물의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작물에 관한 조사·연구
2.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보급
3.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훈련
4.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농업인과 작물의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국내외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이 작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급격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우박·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와 작물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3호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산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을 말한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축산농장 소유자 및 시·군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증지원)”을 “(인증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농장의”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으로, “농장의 운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명단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고,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훈련시책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를 “교육훈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농업기계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의 조문을 수정·삭제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 촉진 기술교육 및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5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

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의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6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양식업을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당 지원 사업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 내용 및 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결정·통지) 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사실,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신청 및 결정·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위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는 등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7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 재정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어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2. 사고 또는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지원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업인의 날) 도지사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5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8호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동해안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
2. “크루즈(cruise)”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국적 크루즈”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적 크루즈”란 크루즈에 상응하는 선박으로 다른 나라에서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 건조(建造)와 크루즈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크루즈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모항(母港)”이란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8. “기항(寄港)”이란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9. “크루즈 운영사”란 크루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2. 크루즈산업 국내외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선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
9.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7조(재정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
2.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준 등) 제7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분담)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시·군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담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 정책
2. 중앙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강원자치도의 전략
3. 크루즈선 유치전략 및 현안사항
4. 크루즈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크루즈산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사직·제명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3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크루즈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는 등 체계를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9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소득
2. 어업진흥
3. 어촌관광 활성화

② 어업인대상의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이하 “시상부문”이라 한다)별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단체 중 1인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어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 중 3년 이상 어업의 성장과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단위 수산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업인

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수산업 경영의 대를 이어오는 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시상부문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어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여성어업인
4. 그 밖에 어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시상)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문안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0조(수상자 특전)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수상 후보자 추천, 위원회의 설치·구성, 수상자 선정, 시상,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제○○○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부문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단체명)

귀하께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소득 향상 등 어촌마을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제○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직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과 결과에 따라 어업인의 정의와 수상자 특전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0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군에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교부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설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집·운반·처리 등의 조기 정상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1호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에 적용한다.

1.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이 설치 및 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 기준 등의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 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설치 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제6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디자인 공모전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2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동종업종 점포가 모여 있는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거리의 지정·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화거리의 지정·지원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특화거리의 지정·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의 지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화거리의 지정 신청 등) ① 관할 지역에 특화거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특화거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거리 지정신청서
2. 상인(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상인을 말한다)의 특화거리 지정동의서
3. 상인조직(특화거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칙(상인조직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의 상인명부
5.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역사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기준 등)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에 상인조직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동종업종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10명 이상일 것
3.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특화거리의 지정에 동의할 것
4.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점포 중 어느 두 점포 사이 거리가 1킬로미터를 넘지 않을 것

제7조(특화거리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심각한 위생·품질 문제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받은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
2. 홍보·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사업
3.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
4. 특화거리 내 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5. 그 밖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촉의 요건인 해당 소비자단체 또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 활성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3호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회적·경제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강원자치도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도지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연계되도록 하여야”를 “연계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와”를 “협력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책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종”을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를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도, 시·군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송환경개선, 상표”를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연구”를 “시험 연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지 및 시설 지원)”을 “(공유재산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을 “무상으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보존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5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위치
2. 비상소화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소방취약지역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6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계 기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제6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도지사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해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교통약자 탑승차량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7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전부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자.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도, 시·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8.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마을방송시설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③ 관리주체는 강원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유사시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3.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방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교육·훈련 등)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무원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 전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급식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해야 있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③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제3조)
○ 급식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4조)
○ 급식 종사자 배치 및 휴게 시설 설치·운영을 규정(제5조,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문화관과 분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공무

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문화관과 분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제3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활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진로활동지원금”이란 학생의 진로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진로활동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진로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및 횟수)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 등) ① 교육감은 진로활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진로활동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진로활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생 진로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지급대상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환수에 관한 사항(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셋 이상”을 “둘 이상”으로, “셋째”를 “첫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을 “ “교육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를 “ “수익자부담경비”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에 대해서는”을 “학생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다자녀 학생’, ‘교육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개념 정비(제2조)

가. ‘다자녀 학생’의 기준 변경

- 당초: 셋 이상 자녀의 양육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 변경: 둘 이상 자녀의 양육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

나. ‘교육비’ 개념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교육비 개념의 정비

다. ‘수익자부담경비’ 개념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수익자부담경비 개념의 정비

○ 교육비 정의 개정으로 수업료, 입학금 지원항목 삭제(제5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장비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사
2. 체육관
3. 기숙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장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장비 설치 목표
2. 응급장비 설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응급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숭고한 생명 나눔 활동인 헌혈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헌혈 교육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 제고 및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제7조)

규 칙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1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매입필증이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은행은 매입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각각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매입의무자 작성용)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개발채권	채권발행번호			
	매입금액	원정(₩)		
	매입의 목적(계약명)			
	제출기관			
	발행은행			
	발행일자	. . .		
	미사용 사유(상세히)			

위 기재사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귀 기관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귀하

위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인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70g/㎡)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

일 련 번 호	신청인(매입자)		매입필증		매입목적	제출받는기관
	주 소	성 명	채권발행번호	매입금액(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채권을 매입하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채권 매입필증 재발급 가능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제10회 조례 · 규칙심의회(2024. 6.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7호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장·국장·본부장·대변인·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기획관”을 “실장·국장·본부장·대변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또는”을 “여부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등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입법 형식	[ ] 조 례 [ ] 규 칙 [ ] 훈 령 [ ] 예 규		
자치법규명		**최근 개정일**	20 . . .
입법 방식	[ ] 제 정 [ ] 전부 개정 [ ] 일부 개정 [ ] 폐 지		
상위 법령 또는 근거 법령		**최근 개정일**	20 . . .
사전 절차 이행 사항	• 3대평가 결과 (의견 있음/없음 표기, 의견 있을 시 간략하게 서술) – 규제심사 : – 부패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 • 사전 협의 등 이행 결과(해당 없을 시 생략) –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중앙부처 협의 등)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 . . . (매주 금요일 도보 발행)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 . . (심의회 개최 7일 전) • 도의회 상정(조례) : 20 . . . (도의회 개최 10일 전) • 시행예정일 : 20 . . .		
제정·개정·폐지 사유	• •		
주관부서		**담 당 자**	(☎ :)

○ 필수 제출 서류(변경 절대 금지)

1. 신·구조문대비표(별표·별지서식 포함)
2. 관련 법령 발췌
3. 비용추계서 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서류(관련 지침, 보고전 등)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6조 관련)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②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불필요	□
	◦필요	□
③ 상위법령 /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지?		
	◦없다 ➠ 자치법규 제정 검토	□
	◦있다 ➠ 자치법규 개정 검토	□
④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무는?		
	【판단기준】 ♦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고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비추어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사무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규칙 제정・개정 검토	□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 제정・개정 검토	□
⑤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상위법령 위반 검토, 법령과 조례의 목적 동일 여부 확인	□
⑥ 제정・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되는지?		
	◦없다	□
	◦있다 ➠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⑦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기준】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예: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추천)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없다	□
	◦있다 ➠ 견제와 균형 법리 검토	□
⑧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공포일 시행	□
	◦있다 ➠ 시행 유예 검토	□
⑨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부칙에 경과조치 / 적용례 검토	□
⑩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	□
	◦있다 ➠ 부칙에 적용례 검토	□
⑪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있다 ➠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개정 검토	□
⑫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판단기준】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항, 공청회 실시요건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상위법령 및 필요성 검토	□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⑬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상위법령의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있음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있음 □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없음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없음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조문은 맞는지?	맞음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맞음 □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없음 □
	◦도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졌는지?	□
	◦제·개정문 작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

*** 작성 요령**

- 점검결과에 따라 표시 칸에 □ 또는 ■ 으로 표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법제사무 처리를 위한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5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예술단 단원 채용 및 관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예술단 구성 및 각종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여 예술단 운영과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

2. 주요내용

○ 지휘자·안무자 단장 추천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 직책단원(악장·단무장·수석·차석) 임명 절차 보완(안 제2조제3항)

○ 실효성 없는 겸임수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5)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94

○ 팩스 : 033-249-4052

○ E-mail : eunyom@korea.kr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원 중 지휘자·안무자 추천으로” 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 라 한다)·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 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 (생 략) ② 지휘자·안무자는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단원 중 지휘자·안무자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 한다.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
제8조의2(겸임수당) 대학교수 등 겸직이 승인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해당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삭 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6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여 도민 주거안전성 확보

○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해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형건설사 등이 주로 시공하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하자발생율이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점검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 근절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

2. 주요내용

○ 품질점검 대상의 규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전화 : 033-249-3467

○ 팩스 : 033-249-4057

○ E-mail : forkds@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에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식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② (생 략)	제5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에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서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7호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2024.6.1.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개정(안 별표 1)

○ 조직개편 등에 따라 폐지된 사업소 관서 지정 제외(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 전화 : 033-249-2883
- 팩스 : 033-249-4029
- Email : pse1215@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도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행정국장	-	-	-
징수관	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국장	-	-	-
채권관리관	각 실·본부·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	-	-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	의정관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	-	-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	-	-
지출원	지출업무팀장 (단,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지출업무팀장	지출업무팀장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팀장	각 부서 주무팀장,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팀장	각 실·과 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강원도립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삭제)
강원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원종장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춘천소방서 후평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춘천소방서 소양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춘천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춘천소방서 대룡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춘천소방서 강촌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춘천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춘천소방서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원주소방서 혁신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원주소방서 명륜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원주소방서 학성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연구원	원주소방서 우산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	원주소방서 태장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원주소방서 문막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원주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춘천소방서	원주소방서 흥업119안전센터
원주소방서	원주소방서 기업119안전센터
강릉소방서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동해소방서	강릉소방서 유천119안전센터
태백소방서	강릉소방서 옥천119안전센터
속초소방서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삼척소방서	강릉소방서 주문진119안전센터
홍천소방서	강릉소방서 내곡119안전센터
횡성소방서	강릉소방서 포남119안전센터
영월소방서	강릉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
평창소방서	강릉소방서 119구조대
정선소방서	동해소방서 천곡119안전센터
철원소방서	동해소방서 묵호119안전센터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화천소방서	동해소방서 북삼119안전센터
양구소방서	동해소방서 북평119안전센터
인제소방서	동해소방서 119구조대
고성소방서	태백소방서 황지119안전센터
양양소방서	태백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특수대응단	태백소방서 철암119안전센터
환동해특수대응단	태백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태백소방서 119구조대
춘천경찰서	속초소방서 노학119안전센터
원주경찰서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강릉경찰서	속초소방서 설악119안전센터
동해경찰서	속초소방서 119구조대
태백경찰서	삼척소방서 봉황119안전센터
속초경찰서	삼척소방서 도계119안전센터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근덕119안전센터
영월경찰서	삼척소방서 원덕119안전센터
정선경찰서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홍천경찰서	홍천소방서 홍천119안전센터
평창경찰서	홍천소방서 양덕원119안전센터
횡성경찰서	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
고성경찰서	홍천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인제경찰서	홍천소방서 119구조대
철원경찰서	횡성소방서 횡성119안전센터
화천경찰서	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양구경찰서	횡성소방서 우천119안전센터
	횡성소방서 공근119안전센터
	횡성소방서 119구조대
	영월소방서 영월119안전센터
	영월소방서 주천119안전센터
	영월소방서 산솔119안전센터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평창소방서 평창119안전센터
	평창소방서 진부119안전센터
	평창소방서 봉평119안전센터
	평창소방서 대관령119안전센터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정선소방서 조양119안전센터
	정선소방서 신동119안전센터
	정선소방서 고한119안전센터
	정선소방서 임계119안전센터
	정선소방서 사북119안전센터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정선소방서 119구조대 철원소방서 태봉119안전센터 철원소방서 동송119안전센터 철원소방서 김화119안전센터 철원소방서 갈말119안전센터 철원소방서 119구조대 화천소방서 화천119안전센터 화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 화천소방서 119구조대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양구소방서 119구조대 인제소방서 인제119안전센터 인제소방서 원통119안전센터 인제소방서 기린119안전센터 인제소방서 119구조대 고성소방서 간성119안전센터 고성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 고성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 고성소방서 119구조대 양양소방서 양양119안전센터 양양소방서 하조대119안전센터 양양소방서 강현119안전센터 양양소방서 119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

주 소 :

연 락 처 :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82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2024. 6. 20.)에서 승인받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1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세계잉여금 (C=A-B)	잉여금 처리(D)		순세계잉여금 (C-D)
					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합 계	8,169,184	8,318,878	7,916,875	402,003	188,462	4,879	208,662
일 반 회 계	7,311,635	7,461,824	7,100,705	361,119	158,282	4,272	198,565
특 별 회 계	857,549	857,054	816,170	40,885	30,180	607	10,098
지역균형발전	8,765	8,770	8,700	70	-	-	70
학교용지부담금	17,504	16,602	14,623	1,979	-	-	1,979
지역자원시설세	6,616	6,601	6,522	79	-	-	79
의료급여기금운영	325,155	325,168	321,987	3,181	-	-	3,181
소방	499,509	499,913	464,338	35,575	30,180	607	4,789

* 일반회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9,178백만 원) 미포함

2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세입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별		징수율 (C/B)
					정 리 보 류 액	다음연도 이 월	
합 계	7,311,635	7,491,327	7,461,824	29,503	1,284	28,219	99.6
지방세	1,856,477	1,931,881	1,905,667	26,214	1,152	25,063	98.6
세외수입	184,193	213,173	210,357	2,816	133	2,684	98.7
지방교부세	1,132,643	1,205,696	1,205,696	0	-	-	100.0
보조금	3,402,802	3,389,519	3,389,519	0	-	-	100.0
지방채	-	-	-	0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5,521	751,058	750,586	472	-	472	99.9

② 세 출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집행율 (B/A)
합 계	7,311,635	7,100,705	167,459	43,471	96.9
일반공공행정	519,090	512,407	3,868	2,814	98.7
공공질서 및 안전	605,257	598,263	6,410	584	94.6
교육	279,033	279,013	7	14	99.1
문화 및 관광	370,370	361,803	6,845	1,722	97.7
국토 및 지역개발	445,150	440,928	1,456	2,766	99.1
사회복지	2,489,105	2,486,610	1,254	1,241	99.8
보건	199,822	190,514	8,140	1,167	95.3
농림해양수산	1,006,897	954,016	49,362	3,518	94.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7,212	282,265	5,761	9,186	95.1
교통 및 물류	415,929	344,948	65,556	5,425	82.9
국토 및 지역개발	392,069	371,784	18,799	1,487	94.9
과학기술	10,148	10,120	-	28	99.7
예비비	7,877	-	-	7,877	-
기타	273,677	268,034	-	5,642	98.8

* 자금없는 이월액(9,178백만 원) 포함

3 특별회계

① 세 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회계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별		징수율 (C/B)
					정 리 보류액	다음연도 이 월	
합 계	857,549	857,124	857,054	69	6	63	99.9
지역균형발전	8,765	8,770	8,770	-	-	-	100
학교용지부담금	17,504	16,602	16,602	-	-	-	100
지역자원시설세	6,616	6,603	6,601	1	-	1	99.9
의료급여기금운영	325,155	325,168	325,168	-	-	-	100
소방	499,509	499,981	499,913	68	6	62	99.9

② 세 출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회계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지출율 (B/A)
합 계	857,549	816,170	30,180	11,199	95.2
지역균형발전	8,765	8,700		65	99.3
학교용지부담금	17,504	14,623		2,881	83.5
지역자원시설세	6,616	6,522		94	98.6
의료급여기금운영	325,155	321,987		3,168	99.0
소방	499,509	464,338	30,180	4,991	93.0

Ⅱ. 기금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 기금별	전년도말 조 성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조 성 액
		소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744,296	164,500	614,163	449,663	908,795
지역개발기금	201,687	11,567	235,582	224,015	213,25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090	37,496	85,603	48,106	178,587
폐광지역개발기금	96,736	79,987	173,797	93,810	176,723
중소기업육성기금	90,096	1,398	26,963	25,565	91,494
비축무연탄관리기금	79,498	△9,406	1,973	11,378	70,092
농어촌진흥기금	42,923	1,798	35,337	33,539	44,720
재난관리기금	33,607	6,479	14,204	7,725	40,086
신청사 건립기금	4,782	28,405	29,648	1,243	33,187
재해구호기금	12,708	6,253	9,273	3,020	18,961
남북교류협력기금	17,896	408	468	60	18,303
양성평등기금	10,209	68	210	142	10,277
식품진흥기금	6,006	△233	421	653	5,774
청소년육성기금	3,973	△47	78	124	3,926
자활기금	3,086	△4	276	280	3,082
고향사랑기금	0	330	330	0	330

Ⅲ. 재무제표(재무결산)

1 요약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전년대비	
	금 액(A)	구성비	금 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율 (C/B)
유동자산	1,289,227	8.1%	1,382,535	8.8%	△93,308	△6.8%
투자자산	929,145	5.9%	954,776	6.0%	△25,631	△2.7%
일반유형자산	1,259,099	7.9%	1,201,103	7.6%	57,996	4.8%
주민편의시설	939,441	5.9%	997,160	6.3%	△57,719	△5.8%
사회기반시설	11,389,893	71.9%	11,225,445	71.1%	164,448	1.5%
기타비유동자산	30,944	0.3%	28,993	0.2%	1,951	6.7%
자산총계	15,837,749	100.0%	15,790,012	100.0%	47,737	0.3%
유동부채	506,657	34.0%	418,018	29.7%	88,639	21.2%
장기차입부채	905,077	60.7%	936,341	66.5%	△31,264	△3.3%
기타비유동부채	78,337	5.3%	53,326	3.8%	25,011	46.9%
부채총계	1,490,071	100.0%	1,407,685	100.0%	82,386	5.9%
고정순자산	12,749,295	88.9%	12,720,885	88.4%	28,410	0.2%
특정순자산	713,323	5.0%	642,609	4.5%	70,714	11.0%
일반순자산	885,063	6.1%	1,018,834	7.1%	△133,771	△13.1%
순자산총계	14,347,678	100.0%	14,382,328	100.0%	△34,650	△0.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5,837,749	-	15,790,013	-	47,736	0.3%

2 요약 재정운영표(기능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전년대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A)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B)	금액 (C=A-B)	증감율 (C/B)
Ⅰ. 사업순원가	6,612,957	3,707,485	2,905,472	-	2,905,472	6,878,518	3,857,364	3,021,154	-	3,021,154	△115,682	△3.8%
Ⅱ. 관리운영비	-	-	1,221,032	△499,503	721,528	-	-	1,114,534	△467,399	647,135	74,393	11.5%
Ⅲ. 비배분비용	-	-	106,148	△1,641	104,507	-	-	114,454	△6,930	107,524	△3,017	△2.8%
Ⅳ. 비배분수익	-	-	216,811	△1,641	215,170	-	-	150,312	△6,930	143,382	71,788	50.1%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4,015,840	△499,503	3,516,337	-	-	4,099,830	△467,399	3,632,431	△116,094	△3.2%
Ⅵ. 일반수익	-	-	3,983,851	△499,503	3,484,348	-	-	4,313,281	△467,399	3,845,882	△361,534	△9.4%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	-	31,989	-	31,989	-	-	(213,451)	-	(213,451)	245,440	△114.9%

3 요약 재정운영표(성질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전년대비	
	금 액(A)	구성비	금 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율 (C/B)
인건비	667,651	9.0%	621,587	8.1%	46,064	7.4%
운영비	1,066,523	14.3%	1,260,946	16.5%	△194,423	△15.4%
정부간이전비용	5,226,153	70.2%	5,313,947	69.6%	△87,794	△1.7%
민간 등 이전비용	363,914	4.9%	332,362	4.4%	31,552	9.5%
기타비용	114,841	1.5%	104,336	1.4%	10,505	10.1%
비용총계	7,438,992	100.0%	7,633,178	100.0%	△194,186	△2.5%
자체조달수익	2,254,486	30.4%	2,230,634	28.4%	23,852	1.1%
정부간이전수익	5,096,767	68.8%	5,546,605	70.7%	△449,838	△8.1%
기타수익	55,749	0.8%	69,390	0.9%	△13,641	△19.7%
수익총계	7,407,002	100.0%	7,846,629	100.0%	△439,627	△5.6%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31,989	-	(213,451)	-	245,440	△114.9%

4 채권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095,195	△50,803	161,224	212,027	1,044,392
일반회계	33,781	△1,513	1,489	3,002	32,268
특별회계	20	-	-	-	20
기금	1,061,394	△49,290	159,735	209,025	1,012,104

5 채무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158,140	△9,248	170,352	179,600	1,148,892
일반회계	161,238	△16,098	-	16,098	145,140
특별회계	4,600	-	-	-	4,600
기금	992,302	6,850	170,352	163,502	999,152

Ⅳ. 성과보고서

(단위 : 개 /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4	222	501	87	383	31	7,916,874,920,588	8,111,950,343,767	△195,075,423,179
대변인	1	1	9	1	7	1	7,380,060,413	9,852,664,792	△2,472,604,379
기획조정실	1	15	30	5	20	5	872,927,220,358	1,006,182,216,860	△133,254,996,502
재난안전실	1	8	20	6	14	0	215,058,308,469	141,258,690,174	73,799,618,295
행정국	1	5	12	4	7	1	218,189,404,610	215,054,185,631	3,135,218,979
특별자치추진단	1	3	10	8	2	0	3,098,828,230	276,837,260	2,821,990,970
경제국	1	16	29	7	19	3	219,207,946,988	298,508,428,040	△79,300,481,052
산업국	1	19	26	7	18	1	219,358,776,737	487,608,661,541	△268,249,884,804
문화체육국	1	7	19	4	12	3	259,763,879,453	350,686,109,220	△90,922,229,767
복지보건국	1	24	33	6	22	5	2,771,893,363,760	2,799,092,540,044	△27,199,176,284
농정국	1	11	38	5	32	1	499,472,041,874	490,250,112,714	9,221,929,160
산림환경국	1	15	33	1	32	0	682,522,044,432	736,900,466,341	△54,378,421,909
건설교통국	1	12	29	3	25	1	656,786,944,241	570,426,400,461	86,360,543,780
소방본부	1	28	79	9	66	4	841,078,384,869	753,081,035,535	87,997,349,334
의회사무처	1	1	3	2	0	1	16,298,417,095	14,521,563,022	1,776,854,073
농업기술원	1	13	32	6	26	0	66,476,256,183	60,448,260,729	6,027,995,454
공무원교육원	1	1	6	1	5	0	5,735,337,107	5,489,859,279	245,477,828
보건환경연구원	1	2	18	0	18	0	21,309,927,025	20,249,597,370	1,060,329,655
총괄기획관	1	2	2	2	0	0	9,332,023,428	0	9,332,023,428
미래산업국	1	6	8	0	8	0	43,449,787,346	0	43,449,787,346
관광국	1	12	20	0	15	5	119,680,207,630	0	119,680,207,630
해양수산정책관	1	11	20	5	15	0	153,061,551,045	137,557,843,839	15,503,707,206
강원경제자유구역청	1	6	11	2	9	0	5,211,025,985	4,519,147,155	691,878,830
감사위원회	1	1	7	0	7	0	459,579,690	422,635,070	36,944,620
자치경찰위원회	1	3	7	3	4	0	9,123,603,620	9,563,088,690	△439,485,070

* 성과달성도 :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100~130%미만), 미달성(100%미만)

V.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건, 천㎡, 백만 원)

종류별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감	
합계	건 수	73,056,023	5,251,705	9,800,374	4,548,669	78,307,915
	면 적	343,857	18,892	22,655	3,763	362,749
	가 격	14,316,500	317,433	412,204	94,771	14,633,932
토지	건 수	58,267	4,152	5,001	849	62,419
	면 적	339,493	18,836	22,583	3,747	358,329
	가 격	1,628,226	32,808	114,372	81,564	1,661,034
건물	건 수	778	27	49	22	805
	면 적	4,237	55	70	15	4,292
	가 격	1,221,645	28,706	40,071	11,365	1,250,351
기타	건 수	72,996,682	5,247,373	9,795,171	4,547,798	78,244,055
	면 적	129	-	1	1	129
	가 격	10,814,863	81,314	83,157	1,843	10,896,177

VI.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취 득	처 분	
수 량	4,667	118	410	292	4,785
금 액	142,420	4,041	23,293	19,252	146,46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2호

북면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공사 설치인가 고시

'북면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공사' 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강 원 득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인제군수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읍 인제로199번길 10

2. 사업 목적 : 북면 원통리 갈골 외 1개소 공공하수관로 확장을 통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수를 차집·처리하여 방류수역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격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254-2번지 일원
   나. 면적 : 12,764㎡(영구점용 2,010㎡, 일시점용 10,754㎡)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오수관로 6.229km
   ※ 맨홀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71가구 포함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0.16㎢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인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7.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5년(공사 : 2024~2025)

8. 기타 설계도서 및 사업관련 관계서류는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033-460-21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총계				2,010	10,754					
1	원통리	302-5	제방	1,019	48	229	농수산부	국			
2	원통리	302-1	구거	11,518	21	111	농수산부	국			
3	원통리	300-4	제방	60		10	국토교통부	국			
4	원통리	301-1	제방	181	6	32	인제군	국			
5	원통리	301-2	하천	47	1	11	인제군	국			
6	원통리	300-6	제방	14	1	3	국토교통부	국			
7	원통리	300-3	제방	241	14	67	인제군	국			
8	원통리	299-4	도로	223		5	인제군	국			
9	원통리	302-7	제방	679	30	150	농수산부	국			
10	원통리	308-3	도로	81	2	19	인제군	국			
11	원통리	309-1	도로	136	9	44	인제군	국			
12	원통리	415-1	도로	900	26	130	국토교통부	국			
13	원통리	310-15	도로	19	3	12	인제군	국			
14	원통리	310-2	전	513	1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310호	이만성 외 3인			
15	원통리	310-1	전	6,351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310호	이만성 외 3인			
16	원통리	415-14	도로	287	3	26	인제군	국			
17	원통리	310-14	도로	92	5	26	인제군	국			
18	원통리	310-4	대지	383	3	14	310-4	전재운			
19	원통리	310-16	도로	95	7	30	인제군	국			
20	원통리	310-3	대지	640		4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08-2	정금옥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21	원통리	310-12	전	223	1	1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08-2	정금옥			
22	원통리	310-17	도로	124	8	37	인제군	국			
23	원통리	310-7	도로	1,725	6	29	인제군	국			
24	원통리	415-10	도로	358	7	35	인제군	국			
25	원통리	414	도로	268	7	4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109	이종례			
26	원통리	413-1	구거	148	2	9	재무부	국			
27	원통리	413-6	도로	477	4	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109	이종례			
28	원통리	412-1	도로	1,001	32	168	재무부	국			
29	원통리	412	하천	1,647	6	27	재무부	국			
30	원통리	306-12	대지	1,842	6	28	1652-12	최휘상			
31	원통리	306-2	대지	1,300	13	64	1652-12	장춘영			
32	원통리	306-5	임야	369	27	139	705-14	장춘영			
33	원통리	306-14	도로	398	17	79	인제군	국			
34	원통리	306-4	대지	1,285	1	7	608-6 설악빌라 1-101	최용상			
35	원통리	303-1	도로	283	8	46	인제군	국			
36	원통리	307-1	제방	620	7	32	인제군	국			
37	원통리	307-2	제방	122		2	인제군	국			
38	원통리	295-1	전	10,526	3	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16번길 92	최남엽 외 1인			
39	원통리	302-6	구거	2,233	10	51	농수산부	국			
40	원통리	296	답	1,590	6	22	647-21	박두원 외 3인			
41	원통리	297	답	5,140	5	32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41	김병록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42	원통리	440	대지	678	9	52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48 한백내린천아파트 101-706	김연춘			
43	원통리	300-1	도로	1,608	61	296	국토교통부	국			
44	원통리	439-6	답	1,236		4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316번길 8-1	박미경			
45	원통리	299-3	전	4,604	4	22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41	김병록			
46	원통리	299-2	대지	660	10	46	299-2	김병록			
47	원통리	417	대지	306	1	8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37	김인수			
48	원통리	417-9	전	475	9	39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17	김인수			
49	원통리	417-6	대지	627	2	8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85-9 동성빌라 가-202	박정협			
50	원통리	416-1	전	1,432	5	23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152번길 35,201호	강주일 외 1인			
51	원통리	416	전	5,482	53	277	298	심상배			
52	원통리	417-4	대지	806	5	20	417-4	심경숙			
53	원통리	417-1	대지	660	2	9	417-1	정영태			
54	원통리	308-2	대지	160	1	5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2길 31-16, 303호	탁기원			
55	원통리	416-2	도로	29		1	인제군	국			
56	원통리	417-5	전	1,794		1	417-1	정영태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57	원통리	421-12	대지	991		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8-5 극동연립 -210	최영철			
58	원통리	424-13	전	438	12	5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39번길 5	강미옥 외 4인			
59	원통리	421-2	대지	495		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8-5 극동연립 -210	최영철			
60	원통리	424-6	도로	1,259	3	72	인제군	국			
61	원통리	421-13	도로	48	1	8	인제군	국			
62	원통리	421-15	도로	919	24	133	서화면 천도리 631-2	김수배			
63	원통리	900-22	도로	1,621	11	58	국토교통부	국			
64	원통리	413-4	도로	94	5	26	재무부	국			
65	원통리	421-3	전	5,094	26	151	서화면 천도리 631-2	김수배			
66	원통리	421-11	도로	194	17	65	421-6	안기성 외 4인			
67	원통리	421-4	전	560	12	58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21-1	이옥자			
68	원통리	421-17	대지	400	3	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7안길 5-14, 202호	이덕희			
69	원통리	421-16	전	591	8	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7안길 5-14, 202호	이덕희			
70	원통리	421-21	전	225		15	인제군	국			
71	원통리	447-1	전	877	3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107동 205호	성찬식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72	원통리	447-5	전	123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107동 205호	성찬식 외 1인			
73	원통리	447	전	621	3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107동 205호	성찬식			
74	원통리	447-4	전	79	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107동 205호	성찬식			
75	원통리	448-1	전	9,524	11	62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98 강선마을 1903-1402	신상한			
76	원통리	443-1	전	783	2	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95, 207동 702호	김경삼			
77	원통리	443-7	대지	60	6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길 29-15 (목동)	송중원			
78	원통리	443-6	전	1,554	14	7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0-14	김인여			
79	원통리	443-3	도로	99	4	2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0-14	김인여			
80	원통리	443-8	도로	294	1	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8번길 61-7	허복순			
81	원통리	451	전	3,854	24	133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8-8	김선중			
82	원통리	산3	임야	45,421	40	208	인제군	국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83	원통리	433-5	체육용지	9,747	25	13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이평로 191	박순예			
84	원통리	433-1	임야	228	2	4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6-5	김금희			
85	원통리	453-2	전	1,023	7	3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502-8 주공아파트 711-801	전인순 외 2인			
86	원통리	431-3	답	1,487		2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91, 104동 1001호	정동운 외 1인			
87	원통리	431-2	도로	1,261	23	121	인제군	국			
88	원통리	429-3	도로	175		4	인제군	국			
89	원통리	453-4	도로	173	4	25	인제군	국			
90	원통리	453-5	도로	568	10	52	인제군	국			
91	원통리	452-1	구거	1,624	4	24	농수산부	국			
92	원통리	452-10	도로	52	1	6	인제군	국			
93	원통리	452-11	도로	23		3	인제군	국			
94	원통리	452-8	도로	533	20	98	인제군	국			
95	원통리	452-6	도로	58	4	23	인제군	국			
96	원통리	427-2	전	69	2	6	기획재정부	국			
97	원통리	426-1	구거	504	4	24	농수산부	국			
98	원통리	1184-3	도로	191	12	59	농수산부	국			
99	원통리	1184-4	도로	248	17	89	농수산부	국			
100	원통리	1172	답	172		2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171-1	강양희			
101	원통리	454-5	도로	18	1	5	인제군	국			
102	원통리	454-6	답	53	1	9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32	차명식 외 1인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103	원통리	454-1	답	98	3	1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332	차명식 외 1인			
104	원통리	1184-6	구거	213	1	7	농수산부	국			
105	원통리	1184-5	도로	38		3	농수산부	국			
106	원통리	1173	도로	58	2	5	국토교통부	국			
107	원통리	1172-2	도로	27	3	12	국토교통부	국			
108	원통리	1172-5	답	235		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171-1	강양희			
109	원통리	1172-3	도로	265	12	61	국토교통부	국			
110	원통리	1184-24	도로	24	1	4	기획재정부	국			
111	원통리	1186-11	도로	153	5	23	기획재정부	국			
112	원통리	1184-29	제방	2,805	34	191	농수산부	국			
113	원통리	900-6	제방	9,799	148	794	국토교통부	국			
114	원통리	900	하천	408,901	77	415	국토교통부	국			
115	원통리	424-7	도로	477	7	45	인제군	국			
116	원통리	432	답	1,210	10	58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32	허복일			
117	원통리	433-7	답	202	7	33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10	김미경			
118	원통리	424-2	답	1,650	11	60	777-3	안지송			
119	원통리	423	묘지	372	10	59	재무부	국			
120	원통리	422-2	대지	660		7	658-30	원영복			
121	원통리	422	전	1,415		4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211번길 9, 302호	문인철			
122	원통리	435-1	답	1,337	4	18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26	박승남			
123	원통리	436-2	전	933	2	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36	이순자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124	원통리	418-1	전	499	3	18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71, 603동 1407호	조환구			
125	원통리	418-3	전	500	2	13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31	김영소			
126	원통리	418	대지	660		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서호아파트 씨-406	김영소			
127	원통리	417-12	전	430	3	18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226번길 52, 104동 2004호	최명식			
128	원통리	417-11	도로	98	2	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갈골로1길 33-1	윤석영			
129	원통리	417-8	전	463		4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2길 22-3	주금례			
130	원통리	1192-4	도로	243	4	23	농수산부	국			
131	원통리	1191-3	도로	15	1	5	농수산부	국			
132	원통리	1190-2	도로	2,482	39	212	인제군	국			
133	원통리	1471-3	도로	887	8	48	인제군	국			
134	원통리	1471-6	도로	139	1	6	인제군	국			
135	원통리	1257-1	하천	81	1	6	인제군	국			
136	원통리	1257-2	도로	323	2	9	인제군	국			
137	원통리	1258	도로	459	1	13	국토교통부	국			
138	원통리	1419	구거	4,209	6	51	농수산부	국			
139	원통리	1259	도로	208	3	16	인제군	국			
140	원통리	1253	도로	86	1	3	국토교통부	국			
141	원통리	1254-2	도로	1,115	29	156	인제군	국			
142	원통리	1255-1	도로	103		3	인제군	국			
143	원통리	458-3	구거	740	3	17	농수산부	국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144	원통리	458-5	도로	1,604	2	5	재무부	국			
145	원통리	459-78	제방	4,555	27	136	재무부	국			
146	원통리	462-7	도로	2,301	7	41	인제군	국			
147	원통리	461-12	도로	264	5	25	국토교통부	국			
148	원통리	459-79	도로	58	1	8	인제군	국			
149	원통리	459-51	도로	910	6	37	국토교통부	국			
150	원통리	459-26	도로	1,283	2	9	강원도	국			
151	원통리	459-50	도로	4,155	5	33	국토교통부	국			
152	원통리	459-1	제방	3,095	14	36	국토교통부	국			
153	원통리	459	하천	62,738	33	187	재무부	국			
154	월학리	378-1	잡종지	3,560	5	24	인제군	국			
155	월학리	372	임야	26,129	20	112	인제군	국			
156	월학리	372-1	임야	14,377	95	539	인제군	국			
157	월학리	368-1	잡종지	4,919	31	165	인제군	국			
158	월학리	368	전	5,537	4	19	인제군	국			
159	월학리	370-1	잡종지	1,446	1	9	인제군	국			
160	월학리	370-8	임야	3,904	13	73	인제군	국			
161	월학리	370-20	임야	1,178	15	83	인제군	국			
162	월학리	351	전	231	4	23	재무부	국			
163	월학리	351-12	임야	519	8	44	인제군	국			
164	월학리	367-10	구거	392	2	15	농수산부	국			
165	월학리	352	전	211	4	21	강원도 인제군 북면 풍전동길 88-42	어병철			
166	월학리	352-10	도로	609	22	117	강원도	국			
167	월학리	352-7	도로	1,008		7	강원도	국			
168	월학리	355-4	도로	1,194		9	강원도	국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169	월학리	355-3	도로	127	6	28	강원도	국			
170	월학리	360-9	잡종지	210	3	15	기획재정부	국			
171	월학리	355-11	도로	1,188	16	88	강원도	국			
172	월학리	355-20	도로	125	1	8	국토교통부	국			
173	월학리	360-10	잡종지	201	5	26	기획재정부	국			
174	월학리	355-7	도로	149	5	26	기획재정부	국			
175	원통리	578-3	도로	7,988	44	243	강원도	국			
176	원통리	578-10	도로	4,524	38	203	강원도	국			
177	원통리	591-3	도로	1,910	6	28	국토교통부	국			
178	원통리	578-11	도로	241	6	33	강원도	국			
179	원통리	580-4	도로	250		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파트 108-301	이봉희			
180	원통리	580-3	도로	115	8	35	강원도	국			
181	원통리	578-12	도로	178	15	74	강원도	국			
182	원통리	578-5	도로	198		13	인제군	국			
183	원통리	579-2	도로	28		9	강원도	국			
184	원통리	579-1	도로	13	3	7	강원도	국			
185	원통리	578-1	도로	450	24	95	강원도	국			
186	원통리	578-6	도로	127	6	61	강원도	국			
187	원통리	577-4	도로	230		8	강원도	국			
188	원통리	577-9	도로	110	9	40	강원도	국			
189	원통리	577-11	도로	101	6	31	강원도	국			
190	원통리	577-10	도로	215	6	36	강원도	국			
191	원통리	574-12	도로	200	4	21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40 행당대림아파트 115-104	이기웅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192	원통리	574-3	도로	1,171	11	59	강원도	국			
193	원통리	574-11	도로	406	12	67	강원도	국			
194	원통리	573-11	도로	1,159	1	3	기획재정부	국			
195	원통리	573-5	도로	375	12	61	강원도	국			
196	원통리	573-8	도로	371	5	28	기획재정부	국			
197	원통리	572-9	도로	373	13	66	강원도	국			
198	원통리	572-10	도로	746	5	28	강원도	국			
199	원통리	549-6	도로	230	2	27	강원도	국			
200	원통리	549-4	도로	952	23	102	강원도	국			
201	원통리	601-2	도로	1,460	10	54	강원도	국			
202	원통리	601-6	도로	393	16	89	강원도	국			
203	원통리	601-7	도로	27	3	14	강원도	국			
204	원통리	602-5	도로	85	6	28	강원도	국			
205	원통리	602-8	도로	106		6	강원도	국			
206	원통리	603-3	도로	57		4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3-3	차삼식			
207	원통리	603-7	도로	193	8	37	강원도	국			
208	원통리	604-12	도로	320	9	49	서울 마포구 망원동 384-45	주식회사미진건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3호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1.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취지

○ 2030년 양양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 수립과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양양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변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30,570,552	증) 6,274	630,576,826	100.00
도시지역합계			12,067,802	증) 1,834	12,069,636	1.91
	주거지역	소계	2,589,948	감) 4,640	2,585,308	0.41
		제1종일반주거지역	333,951	-	333,951	0.05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098	감) 4,640	1,997,458	0.32
		제3종일반주거지역	51,601	-	51,601	0.01
		준주거지역	202,298	-	202,298	0.03
	상업지역	소계	622,679	증) 4,640	627,319	0.10
		일반상업지역	622,679	증) 4,640	627,319	0.10
	공업지역	소계	21,621	증) 8,201	29,822	0.00
		준공업지역	21,621	증) 8,201	29,822	0.00
	녹지지역	소계	8,557,013	증) 16,498	8,573,511	1.36
		보전녹지지역	1,289,481	증) 3,134	1,292,615	0.20
		생산녹지지역	266,293	감) 2	266,291	0.04
		자연녹지지역	7,001,239	증) 13,366	7,014,605	1.11
	도시지역(미지정)		276,541	감) 22,865	253,676	0.04
비도시지역합계			618,502,750	증) 4,440	618,507,190	98.09
	관리지역	소계	107,349,441	감) 448,926	106,900,515	16.95
		보전관리지역	37,033,837	감) 223,411	36,810,426	5.84
		생산관리지역	11,705,323	감) 10,480	11,694,843	1.85
		계획관리지역	58,610,281	감) 215,035	58,395,246	9.26
	농림지역		438,737,069	증) 449,822	439,186,891	69.66
	자연환경보전지역		72,416,012	증) 3,772	72,419,784	11.48
	비도시지역(미지정)		228	감) 228	-	-

※ 기정 용도지역면적은 2024년 2월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미지정지역은 해면에 한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도시지역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강현면-JG-001	강현면 물치리 7-18	미지정	준공업지역	689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강현면-JG-002	강현면 물치리 7-18	미지정 (신규)	준공업지역	190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강현면-JG-003	강현면 물치리 7-17	미지정	준공업지역	7,322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강현면-JN-001	강현면 물치리 67-25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116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양양읍-IS-002	양양읍 남문리 8-3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640	-주변 개발압력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현남면-BN-001	현남면 동산리 160-5	미지정 (신규)	보전녹지지역	242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BN-002	현남면 광진리 244-9	미지정 (신규)	보전녹지지역	378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BN-003	현남면 광진리 234-12	미지정 (신규)	보전녹지지역	1,024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BN-004	현남면 동산리 137-13	미지정	보전녹지지역	1,471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BN-005	현남면 인구리 379-11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7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N-006	현남면 인구리 334-8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JN-001	현남면 동산리 137-1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6,334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JN-002	현남면 동산리 137-1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787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JN-003	현남면 동산리 137-14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1,847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JN-004	현남면 동산리 90-36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4,299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비도시지역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강현면-B-007	강현면 사교리 90-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5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B-008	강현면 적은리 198-1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1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B-010	강현면 적은리 198-2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0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G-012	강현면 적은리 산 39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5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G-013	강현면 금풍리 산 49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8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10	강현면 적은리 195-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11	강현면 중복리 23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14	강현면 둔전리 산1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3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18	강현면 금풍리 190-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5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20	강현면 사교리 270-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30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21	강현면 금풍리 산 11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23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22	강현면 적은리 산79-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73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강현면-S-024	강현면 금풍리 190-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9,81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1	서면 송어리 107-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2	서면 오색리 475-17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3	서면 오색리 421-1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4	서면 영덕리 230-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5	서면 내현리 398-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7	서면 내현리 산 11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8	서면 가라피리 산 1-2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09	서면 송어리 95-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0	서면 송어리 74-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1	서면 논화리 산 80-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2	서면 논화리 산17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3	서면 내현리 산29-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6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6	서면 갈천리 산4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7	서면 북암리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5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18	서면 갈천리 산 62-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9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20	서면 영덕리 산 36-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9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서면-B-022	서면 갈천리 113-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5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23	서면 영덕리 13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5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24	서면 상평리 산 92-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9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25	서면 내현리 38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3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26	서면 갈천리 192-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0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29	서면 영덕리 산 1-2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8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0	서면 내현리 산 7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9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1	서면 갈천리 산 24-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28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2	서면 영덕리 산 81-2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2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3	서면 송천리 산 2-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4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7	서면 서림리 산 37-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63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8	서면 논화리 산 1-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87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39	서면 북평리 산 26-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3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40	서면 논화리 161-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98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42	서면 용천리 산 4-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11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45	서면 영덕리 산 35-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66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47	서면 북평리 산 24-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78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48	서면 북평리 산 2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05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49	서면 논화리 산 1-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04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B-051	서면 북평리 산 13-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96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G-007	서면 영덕리 산 74-4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G-012	서면 내현리 296-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G-016	서면 가라피리 산 1-9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9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G-018	서면 논화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6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산 155-1				용도지역 세분
서면-G-020	서면 논화리 산 151-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9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G-021	서면 오색리 199-4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3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G-022	서면 서선리 산 14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7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JB-001	서면 오색리 475-15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1	서면 장승리 552-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3	서면 장승리 552-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4	서면 논화리 47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6	서면 논화리 476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7	서면 논화리 47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8	서면 논화리 48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09	서면 논화리 401-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5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10	서면 논화리 476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12	서면 논화리 475-1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13	서면 장승리 552-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5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15	서면 논화리 401-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2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17	서면 수리 산13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8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서면-S-018	서면 용천리 산6-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84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1	손양면 삽존리 100-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2	손양면 밀양리 49-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3	손양면 밀양리 49-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4	손양면 와리 47-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5	손양면 도화리 163-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2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6	손양면 가평리 산 8-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2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손양면-B-007	손양면 도화리 194-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2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8	손양면 학포리 255-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7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09	손양면 삽존리 산 100-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0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10	손양면 학포리 산 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7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11	손양면 가평리 산 3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775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12	손양면 삽존리 132-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1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15	손양면 삽존리 132-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63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16	손양면 하왕도리 산 45-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71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18	손양면 간리 산 1-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76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B-020	손양면 도화리 75-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38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G-034	손양면 석계리 산 35-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1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G-037	손양면 하왕도리 산 50-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72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G-041	손양면 동호리 100-6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2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G-048	손양면 동호리 1-26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4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G-055	손양면 동호리 1-46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7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G-058	손양면 동호리 1-117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0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1	손양면 삽존리 95-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2	손양면 삽존리 9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3	손양면 주리 82-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4	손양면 주리 82-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5	손양면 상양혈리 산 68-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4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7	손양면 수여리 산 6-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8	손양면 송전리 산 2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9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09	손양면 수여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0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산 7-1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15	손양면 주리 279-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40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손양면-S-016	손양면 학포리 201-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B-001	양양읍 월리 50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8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B-002	양양읍 감곡리 산 3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9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B-003	양양읍 거마리 산 169-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8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B-004	양양읍 월리 산 24-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56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B-005	양양읍 거마리 462-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26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G-001	양양읍 월리 산 15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G-005	양양읍 월리 산 15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G-012	양양읍 감곡리 142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84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양양읍-G-013	양양읍 감곡리 산 65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8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02	현남면 하월천리 605-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03	현남면 전포매리 17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04	현남면 하월천리 559-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05	현남면 전포매리 17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06	현남면 전포매리 산 33-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08	현남면 전포매리 168-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10	현남면 전포매리 106-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11	현남면 전포매리 106-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12	현남면 입암리 산10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13	현남면 상월천리 152-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14	현남면 북분리 473-3	미지정 (신규)	자연환경 보전지역	242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B-016	현남면 입암리 산 144-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5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현남면-B-018	현남면 남애리 662-1	미지정 (신규)	자연환경 보전지역	401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B-022	현남면 입암리 산 3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9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28	현남면 하월천리 42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23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31	현남면 하월천리 산 97-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9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32	현남면 광진리 산 32-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8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33	현남면 하월천리 255-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7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35	현남면 입암리 산 2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0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37	현남면 남애리 244-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94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42	현남면 입암리 산 38-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93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B-043	현남면 복분리 473-4	미지정 (신규)	보전관리지역	2,264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G-006	현남면 전포매리 317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G-019	현남면 후포매리 산 1-8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7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G-021	현남면 남애리 70-14	미지정 (신규)	자연환경 보전지역	231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G-025	현남면 남애리 2-86	미지정 (신규)	자연환경 보전지역	531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G-030	현남면 임호정리 산 45-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3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G-032	현남면 정자리 산 47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7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JB-001	현남면 광진리 49-3	미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229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JB-002	현남면 광진리 29-1	미지정 (신규)	자연환경 보전지역	246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JB-003	현남면 광진리 49-4	미지정 (신규)	자연환경 보전지역	524	-해안주변의 신규지적 또는 섬지역으로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
현남면-S-001	현남면 후포매리 산 67-7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S-004	현남면 전포매리 122-10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1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남면-S-005	현남면 전포매리 12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9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02	현북면 법수치리 1-2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0	현북면 법수치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32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 경		
	130-3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2	현북면 장리 산 6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9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3	현북면 장리 산 6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19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4	현북면 도리 168-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8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5	현북면 어성전리 93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01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6	현북면 말곡리 산 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98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17	현북면 면옥치리 751-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6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24	현북면 말곡리 159-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917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B-026	현북면 잔교리 38-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83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G-002	현북면 중광정리 산 2-2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S-001	현북면 어성전리 87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S-002	현북면 어성전리 870-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8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S-004	현북면 하광정리 산 61-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13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S-005	현북면 어성전리 88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54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S-006	현북면 어성전리 88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현북면-S-009	현북면 어성전리 88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890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고도지구

가)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1	동산 고도지구	최고고도 지 구	현남면 동산리 192대 일원	소로1-7호선 계획고에서 20m이하	24,735	1998.1.21.	
폐지	2	인구 고도지구	최고고도 지 구	현남면 인구리 66-6잡 일원	소로1-3호선 계획고에서 20m이하	29,830	1998.1.21.	
폐지	3	인구2 고도지구	최고고도 지 구	현남면 인구리 65-5답 일원	소로1-3호선 계획고에서 20m이하	45,705	2002.12.14.	

나)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동산고도지구	•폐지	•지정사유인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노후주거환경개선, 사유 재산 보호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2	인구고도지구	•폐지	•지정사유인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노후주거환경개선, 사유 재산 보호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3	인구2고도지구	•폐지	•지정사유인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노후주거환경개선, 사유 재산 보호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폐지

❍ 개발진흥지구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폐지	20-21	거마리(공동) (하이츠아파트)	주거 개발진흥지구	양양읍 거마리 31-1일원	-	3,000	1995.11.21.	비도시지역
폐지	20-22	광진리(공동) (바다마을아파트)	주거 개발진흥지구	현남면 광진리 141일원	-	18,000	1996.3.26.	비도시지역
폐지	20-23	서문리(공동) (삼환임대아파트)	주거 개발진흥지구	양양읍 서문리 363-5일원	-	7,000	1996.6.8.	비도시지역
폐지	20-24	하왕도리(공동) (삼호임대아파트)	주거 개발진흥지구	손양면 하왕도리 303-3일원	-	8,000	1997.4.22.	비도시지역
폐지	20-27	태산임대아파트 (심미아파트)	주거 개발진흥지구	현북면 중광정리 176-1일원	-	23,000	1999.7.2.	비도시지역
폐지	20-28	삼호임대아파트 (명지푸르미)	주거 개발진흥지구	양양읍 월리 449-1일원	-	23,000	2000.1.6.	비도시지역
폐지	20-17	오색관광지 조성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서면 가라피리 165일원	-	196,280	1994.3.15.	비도시지역
폐지	20-11	포월농공단지	산업 개발진흥지구	양양읍 포월리 257-4 일원	-	115,000	1992.1.22.	비도시지역
폐지	20-29	㈜동해산업조성 사업지구	산업 개발진흥지구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201-2번지 일원	-	35,893	2001.6.28.	비도시지역
폐지	③	대한광물㈜ 조성사업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서면 장승리 산15일원		131,011	2013.3.22.	비도시지역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21	거마리(공동) (하이츠아파트)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22	광진리(공동) (바다마을아파트)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23	서문리(공동) (삼환임대아파트)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24	하왕도리(공동) (삼호임대아파트)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27	태산임대아파트 (심미아파트)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28	삼호임대아파트 (명지푸르미)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17	오색관광지 조성지구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11	포월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20-29	㈜동해산업 조성사업지구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③	대한광물㈜ 조성사업지구	•개발진흥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

가)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양양읍 성내리 98-8도 일원	-	증) 646	646	-	양양 도시지역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양양읍 청곡리 211전 일원	14,649	감) 2,230	12,419	1991.5.2.	양양 도시지역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강현면 전진리 7-27임 일원	1,771	감) 366	1,405	2020.7.3.	양양 도시지역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646㎡	• 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실효된 시설을 신규 시설로 재결정
5	완충녹지	•면적 변경 : 14,649㎡ → 12,419㎡ (감 : 2,230㎡)	• 취락지구 진입도로로 이용중이며 완충녹지 지정사유 (국도 44호선 완충녹지)와 불부합하여 일부 구간 폐지
9	경관녹지	•면적 변경 : 1,771㎡ → 1,405㎡ (감 : 366㎡)	• 양양도시지역(낙산)일대 도로 확폭을 위해 경관녹지를 축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4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에 대하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칭 (변경) : (당초)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 (변경)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2. 사업개요 (변경)
가. 목 적 :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클러스터 조성으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 부응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다. 면 적 : (당초) 815,964㎡ → (변경) 815,687㎡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
마. 사 업 비 : (당초) 360,697백만원 → (변경) 387,197백만원

3. 사업시행자 (변경)
가. 명 칭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나. 주 소 :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다. 성 명 : (당초) 춘천시장 육동한, 한국수자원공사장 직무대행 정경윤
→ (변경) 춘천시장 육동한, 한국수자원공사장 윤석대

4. 사업시행방식 (변경없음)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5.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당초)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금액(억원)	3,607	2	29	447	649	774	696	625	385

(변경)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금액(억원)	3,872	6	31	447	1,057	703	539	485	604

나. 재원조달계획

○ 클러스터 조성 :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자금 조달

○ 수열공급 설비 : 국고 및 지방비로 자금 조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 (변경) : 〈붙임1〉

7. 인·허가획 결정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변경)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동법 제50조 지구단위계(변경) :〈붙임2〉

8.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및 춘천시 디지털산업과(☎033-245-56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95,009	815,747	815,964	815,687	-277						
1	기정	지내리	2-5	도	12,884		11,297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2-50	도		11,259		11,259	-37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2-51	도		1		1		(국)국토교통부					
2	기정	지내리	2-6	임	421		96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2-52	임		81		81	-15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지내리	2-7	전	1,435		1,435			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 ***동 ***호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번길 **-*				
	변경	지내리	2-7	전		1,435		1,435		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 ***동 ***호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	기정	지내리	2-11	대	585	585	585	585		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길 **, ***동 ***호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	근저당권	
5	기정	지내리	2-12	전	1,587	1,587	1,587	1,587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번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지상권	
6	기정	지내리	2-16	도	53	53	53	53		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길 **, ***동 ***호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중곡동)	근저당권	
7	기정	지내리	2-17	잡	98	98	98	98		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길 **, ***동 ***호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중곡동)	근저당권	
8	기정	지내리	2-18	대	900		900			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18	대		900		9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9	기정	지내리	2-19	전	728	728	728	728		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턴타워대로 ***-**, ***동****호(송도동,송도아트윈푸르지오)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10	기정	지내리	2-20	대	834	834	834	834		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길 **, ***동 ***호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중곡동)	근저당권	
11	기정	지내리	2-21	대	659		659			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21	대		659		65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2	기정	지내리	2-22	대	380	380	380	380		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13	기정	지내리	2-23	전	330	330	330	330		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14	기정	지내리	2-24	도	44	44	44	44		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15	기정	지내리	2-25	대	502		502			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변경	지내리	2-25	대		502		50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	기정	지내리	2-27	전	333		333			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2-27	전		333		3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	기정	지내리	2-28	대	596	596	596	596		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18	기정	지내리	2-29	전	395	395	395	395		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19	기정	지내리	2-35	전	610	610	610	610		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길 **, ***동 ***호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중곡동)	근저당권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	기정	지내리	2-36	전	429		429			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 ***동 ***호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번길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2-36	전		429		429		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 ***동 ***호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	기정	지내리	2-37	전	198	198	198	198		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22	기정	지내리	2-38	전	8	8	8	8		춘천시					
23	기정	지내리	2-39	전	50	50	50	50		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비동 ****호				
24	기정	지내리	5	도	24	24	24	24		(국)기획재정부					
25	기정	지내리	5-1	도	178		177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5-2	도		177		177		(국)기획재정부					
26	기정	지내리	6-1	답	1,125	1,125	1,125	1,125		(국)기획재정부					
27	기정	지내리	6-2	전	1,146		1,146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점말길 **-*	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6-2	전		1,146		1,14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8	기정	지내리	6-4	답	222		218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6-5	답		215		215	-3	(국)기획재정부					
29	기정	지내리	9-3	제	1,954		63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9-4	제		63		63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기정	지내리	14-3	잡	815	815	815	815		(국)기획재정부					
31	기정	지내리	14-4	답	64		64			동******** ***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14-4	답		64		6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2	기정	지내리	15-1	답	155	155	155	155		(국)기획재정부					
33	기정	지내리	16	잡	245	245	245	245		(국)기획재정부					
34	기정	지내리	17-1	전	4,998		4,998			정**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	춘******** *	춘천시 마장길 **(사농동)	근저당권/지상권	
										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 **** 한강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강**	익산시 영등동 *** 동신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정**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대림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17-1	전		4,998		4,99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5	기정	지내리	17-2	답	2,159	2,159	2,159	2,159		(국)기획재정부					
36	기정	지내리	18-1	전	6,012		6,012			정**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	춘******** *	춘천시 마장길 **(사농동)	근저당권/지상권	
										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 **** 한강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강**	익산시 영등동 *** 동신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정**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대림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18-1	전		6,012		6,01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7	기정	지내리	18-2	전	3,306		3,306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금옥*길 **				
	변경	지내리	18-2	전		3,306		3,30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	기정	지내리	18-3	답	951	951	951	951		(국)기획재정부					
39	기정	지내리	18-5	전	133		133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점말길 **-*	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18-5	전		133		1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0	기정	지내리	19	전	3,955		3,955			정**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	춘********	춘천시 마장길 **(사농동)	근저당권/지상권	
										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 **** 한강아파트 ***-****				
										강**	익산시 영등동 *** 동신아파트 ***-***				
										정**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대림아파트 ***-****				
	변경	지내리	19	전		3,955		3,95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	기정	지내리	19-1	전	1,388		1,388			정**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	춘********	춘천시 마장길 **(사농동)	근저당권/지상권	
										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 **** 한강아파트 ***-****				
										강**	익산시 영등동 *** 동신아파트 ***-***				
										정**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대림아파트 ***-****				
	변경	지내리	19-1	전		1,388		1,38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2	기정	지내리	20-1	전	9,339		9,339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 ***동****호(퇴계동,이편한세상한숲시티)	국**********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0-1	전		9,339		9,33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	기정	지내리	20-2	전	920		920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 ***동****호(퇴계동,퇴계이안아파트)	국**********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0-2	전		920		9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4	기정	지내리	20-3	전	3,962		3,962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 ***동 ****호(퇴계동, 퇴계이안아파트)	국**********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0-3	전		3,962		3,96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5	기정	지내리	21-1	전	7,390		3,031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 ***동 ****호(퇴계동, 이편한세상한숲시티)	국**********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1-5	전		3,023		3,023	-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6	기정	지내리	22	전	6,069		6,069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 ***동 ****호(퇴계동, 이편한세상한숲시티)	국**********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22	전		6,069		6,06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7	기정	지내리	23	전	1,501		1,501			정**	서울 성북구 길음동 ***-* 가-**				
										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 **** 한강아파트 ***-****				
										강**	익산시 영등동 *** 동신아파트 ***-***				
										정**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대림아파트 ***-****				
	변경	지내리	23	전		1,501		1,50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8	기정	지내리	25	전	508		508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양지길 **-**				
	변경	지내리	25	전		508		50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9	기정	지내리	26-1	전	552		552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양지길 **-**				
	변경	지내리	26-1	전		552		55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0	기정	지내리	26-2	도	443		443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양지길 **-**				
	변경	지내리	26-2	도		443		44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1	기정	지내리	425-3	제	172	172	172	172		(국)국토교통부					
52	기정	지내리	426-1	제	66	66	66	66		(국)국토교통부					
53	기정	지내리	437-1	전	953		953			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437-1	전		953		95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4	기정	지내리	437-2	도	497		497			김**	춘천시 동면 지내리 불상번지				
	변경	지내리	437-2	도		497		49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5	기정	지내리	437-3	전	106		106			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437-3	전		106		10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6	기정	지내리	440-1	제	1,675		556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0-8	제		556		556		(국)국토교통부					
57	기정	지내리	440-2	답	355		331			춘천시					
	변경	지내리	440-9	답		331		331		춘천시					
58	기정	지내리	440-5	답	4		4			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석로**번길 **-*				
	변경	지내리	440-5	답		4		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9	기정	지내리	441-2	천	3,841		101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1-21	천		102		102	1	(국)국토교통부					
60	기정	지내리	441-7	답	103		7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1-25	답		7		7		(국)기획재정부					
61	기정	지내리	441-9	천	283		65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1-22	천		67		67	2	(국)기획재정부					
62	기정	지내리	441-14	천	655		2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1-26	천		2		2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3	기정	지내리	441-15	답	34		32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1-27	답		32		32		(국)기획재정부					
64	기정	지내리	441-16	천	1,527		346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1-23	천		195		195	1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1-24	천		152		152		(국)국토교통부					
65	기정	지내리	441-20	천	77		6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1-28	천		6		6		(국)기획재정부					
66	기정	지내리	446-4	답	512		427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6-28	답		427		427		(국)국토교통부					
67	기정	지내리	446-6	제	22	22	22	22		(국)기획재정부					
68	기정	지내리	446-26	제	170		32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6-29	제		32		32		(국)기획재정부					
69	기정	지내리	447-1	잡	264		233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7-13	잡		233		233		(국)국토교통부					
70	기정	지내리	447-5	잡	251		227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7-14	잡		227		227		(국)국토교통부					
71	기정	지내리	447-6	잡	120		107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7-15	잡		107		107		(국)국토교통부					
72	기정	지내리	449-7	답	5	5	5	5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3	기정	지내리	449-8	제	544		495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9-19	제		495		495		(국)기획재정부					
74	기정	지내리	449-9	제	427		224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9-21	제		224		224		(국)기획재정부					
75	기정	지내리	449-11	답	12		11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9-20	답		11		11		(국)기획재정부					
76	기정	지내리	449-14	답	7	7	7	7		(국)국토교통부					
77	기정	지내리	449-15	답	12	12	12	12		(국)국토교통부					
78	기정	지내리	449-16	답	79		79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449-16	답		79		79		(국)환경부					
79	기정	지내리	449-17	제	106		32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449-22	제		32		32		(국)기획재정부					
80	기정	지내리	450-1	제	1,385	1,385	1,385	1,385		(국)국토교통부					
81	기정	지내리	450-2	천	1,098	1,098	1,098	1,098		(국)국토교통부					
82	기정	지내리	451-4	천	1,785	1,785	1,785	1,785		(국)기획재정부					
83	기정	지내리	451-5	제	123	123	123	123		(국)기획재정부					
84	기정	지내리	451-6	천	60	60	60	60		(국)기획재정부					
85	기정	지내리	451-16	천	791	791	791	791		(국)기획재정부					
86	기정	지내리	451-17	제	257	257	257	257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7	기정	지내리	451-18	답	647	647	647	647		(국)기획재정부					
88	기정	지내리	451-19	제	1,225	1,225	1,225	1,225		(국)기획재정부					
89	기정	지내리	457-1	목	966		51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457-15	목		51		51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90	기정	지내리	457-14	전	77		17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457-16	전		17		17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91	기정	지내리	659-2	전	725		665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59-7	전		665		66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92	기정	지내리	659-5	도	621		429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659-6	도		433		433	4	(국)국토교통부					
93	기정	지내리	674-5	대	650		115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74-20	대		114		114	-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94	기정	지내리	674-12	전	539		4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74-22	전		4		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95	기정	지내리	674-15	대	575		575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74-15	대		575		57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96	기정	지내리	674-16	전	253		253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74-16	전		253		25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97	기정	지내리	674-19	임	68		50			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승지골길**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674-21	임		50		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98	기정	지내리	676-1	대	255		255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창신이수아파트 ***-****				
	변경	지내리	676-1	대		255		25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99	기정	지내리	676-8	전	620		620			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번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676-8	대		620		6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0	기정	지내리	676-9	도	21		15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창신이수아파트 ***-****				
	변경	지내리	676-18	도		14		14	-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1	기정	지내리	676-10	전	908		249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676-19	전		249		24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2	기정	지내리	676-12	대	91		91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창신이수아파트 ***-****				
	변경	지내리	676-12	대		91		9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3	기정	지내리	676-13	대	15		15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창신이수아파트 ***-****				
	변경	지내리	676-13	대		15		1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4	기정	지내리	676-14	대	125		125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창신이수아파트 ***-****				
	변경	지내리	676-14	대		125		12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5	기정	지내리	676-15	전	3		3			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창신이수아파트 ***-****				
	변경	지내리	676-15	전		3		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6	기정	지내리	676-16	전	306		306			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번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676-16	전		306		30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7	기정	지내리	676-17	전	99		99			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번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676-17	도		99		9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08	기정	지내리	680-1	답	443		273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680-5	답		269		269	-4	(국)기획재정부					
109	기정	지내리	680-2	대	524		140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680-6	대		140		1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10	기정	지내리	680-4	도	61		2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680-7	도		2		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11	기정	지내리	681-1	전	994		994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681-1	전		994		99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12	기정	지내리	681-2	답	1,740		913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681-43	답		906		906	-7	(국)기획재정부					
113	기정	지내리	681-12	답	1,479		1,462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681-49	답		1,462		1,462		(국)국토교통부					
114	기정	지내리	681-16	답	174	174	174	174		(국)기획재정부					
115	기정	지내리	681-27	도	118	118	118	118		(국)국토교통부					
116	기정	지내리	681-28	제	314		120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681-44	제		121		121	1	(국)기획재정부					
117	기정	지내리	681-30	답	1,545		335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681-50	답		335		335		(국)국토교통부					
118	기정	지내리	681-31	답	15	15	15	15		(국)국토교통부					
119	기정	지내리	681-32	답	9		9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681-32	답		9		9		(국)환경부					
120	기정	지내리	681-34	제	3,730		3,409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681-48	제		3,434		3,434	25	(국)기획재정부					
121	기정	지내리	681-35	제	1,247		168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681-51	제		168		168		(국)기획재정부					
122	기정	지내리	681-41	대	68		68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681-41	대		68		6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23	기정	지내리	681-42	전	1,646		1,646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681-42	전		1,646		1,64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24	기정	지내리	691-2	전	290		290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691-2	전		290		2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25	기정	지내리	691-5	대	603		603			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691-5	대		603		60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26	기정	지내리	691-7	임	13		13			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	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691-7	임		13		1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27	기정	지내리	691-8	전	441		441			윤**	춘성군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91-8	전		441		44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28	기정	지내리	691-9	도	18	18	18	18		(국)기획재정부					
129	기정	지내리	691-10	대	177		177			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691-10	대		177		17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30	기정	지내리	692-1	묘	1,432		423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692-3	묘		423		42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31	기정	지내리	696	전	358		358			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호(장학lh해온채)				
	변경	지내리	696	전		358		35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2	기정	지내리	698	도	233		76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698-11	도		30		30	1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698-12	도		47		47		(국)국토교통부					
133	기정	지내리	698-1	도	683	683	683	683		(국)기획재정부					
134	기정	지내리	698-6	대	282	282	282	282		(국)기획재정부					
135	기정	지내리	698-7	도	407	407	407	407		(국)국토교통부					
136	기정	지내리	698-8	도	189	189	189	189		(국)기획재정부					
137	기정	지내리	698-9	도	161	161	161	161		(국)국토교통부					
138	기정	지내리	708-1	천	57,880		7,404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708-67	천		7,320		7,320	-84	(국)국토교통부					
139	기정	지내리	708-21	제	1,830	1,830	1,830	1,830		(국)국토교통부					
140	기정	지내리	708-52	제	1,362		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708-68	제		89		89	-1	(국)국토교통부					
141	기정	지내리	708-53	제	1,258		165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708-69	제		186		186	21	(국)국토교통부					
142	기정	지내리	742	도	1,221		143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742-18	도		163		163	20	(국)국토교통부					
143	기정	지내리	742-1	도	168		68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742-19	도		67		67	-1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4	기정	지내리	742-4	도	24	24	24	24		(국)기획재정부					
145	기정	지내리	746-1	제	249	249	249	249		(국)국토교통부					
146	기정	지내리	746-2	도	486		424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746-3	도		426		426	2	(국)국토교통부					
147	기정	지내리	747-1	제	511		51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747-5	제		51		51		(국)국토교통부					
148	기정	지내리	747-2	구	43	43	43	43		(국)국토교통부					
149	기정	지내리	750	답	1,428		1,428			김**	춘천시 퇴계동 ***-* 그린타운아파트 ***-****				
										함**	춘천시 퇴계동 *** 한주아파트 ***-****				
	변경	지내리	750	답		1,428		1,42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0	기정	지내리	751	답	1,990		1,990			김**	춘천시 퇴계동 ***-* 그린타운아파트 ***-****				
										함**	춘천시 퇴계동 *** 한주아파트 ***-****				
	변경	지내리	751	답		1,990		1,9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1	기정	지내리	751-1	답	889		889			김**	춘천시 퇴계동 ***-* 그린타운아파트 ***-****				
										함**	춘천시 퇴계동 *** 한주아파트 ***-****				
	변경	지내리	751-1	답		889		88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2	기정	지내리	751-2	도	78	78	78	78		춘천시					
153	기정	지내리	751-3	도	11	11	11	11		춘천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4	기정	지내리	752	전	2,013		2,013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	춘*******	춘천시 소양로*가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52	전		2,013		2,01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5	기정	지내리	752-1	답	1,044		1,044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52-1	답		1,044		1,04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6	기정	지내리	753	전	1,008		1,008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				
	변경	지내리	753	전		1,008		1,00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7	기정	지내리	754	전	1,961		1,961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	춘*******	춘천시 소양로*가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54	전		1,961		1,96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58	기정	지내리	755	전	2,734	2,734	2,734	2,734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159	기정	지내리	755-1	전	660		660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삼보로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변경	지내리	755-1	전		660		6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0	기정	지내리	756	답	1,400		1,400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56	답		1,400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1	기정	지내리	756-1	답	844		844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756-1	답		844		84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2	기정	지내리	757	답	3,046		3,046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57	답		3,046		3,04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63	기정	지내리	758	과	2,886		2,886			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758	과		2,886		2,88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4	기정	지내리	759	과	1,065		1,065			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759	과		1,065		1,06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5	기정	지내리	760	답	1,674		1,674			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동*******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60	답		1,674		1,67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6	기정	지내리	761	답	2,496		2,496			유**	춘천시 봉의동 **-*	동*******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61	답		2,496		2,49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7	기정	지내리	762	과	2,780		2,780			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				
	변경	지내리	762	과		2,780		2,7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8	기정	지내리	763	답	5,100		5,100			박**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 *동 ***호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김**	인천 남구 용현동 ***-**				
	변경	지내리	763	답		5,100		5,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9	기정	지내리	764	전	1,132		1,132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64	전		1,132		1,13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0	기정	지내리	764-1	답	668	668	668	668		(국)기획재정부					
171	기정	지내리	764-2	답	1,332	1,332	1,332	1,332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72	기정	지내리	765	전	2,932		2,932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65	전		2,932		2,93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3	기정	지내리	766	답	3,033		3,033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	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	근저당권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동남아파트 비-***				
										박**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				
	변경	지내리	766	답		3,033		3,0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4	기정	지내리	767	답	2,927		2,927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	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	근저당권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동남아파트 비-***				
										박**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				
	변경	지내리	767	답		2,927		2,92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5	기정	지내리	768	답	2,539		2,539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68	답		2,539		2,53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6	기정	지내리	769	답	538	538	538	538		(국)농림축산식품부					
177	기정	지내리	770	답	2,659		2,659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70	답		2,659		2,65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8	기정	지내리	771	답	1,812		1,812			지**	춘천시 효자동 ***-**				
	변경	지내리	771	답		1,812		1,81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79	기정	지내리	772	도	74	74	74	74		(국)농림축산식품부					
180	기정	지내리	772-1	도	6	6	6	6		(국)농림축산식품부					
181	기정	지내리	773	구	13,625		13,150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773-3	구		13,143		13,143	-7	(국)농림축산식품부					
182	기정	지내리	774	도	2,880	2,880	2,880	2,880		(국)농림축산식품부					
183	기정	지내리	775	도	602		314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775-1	도		314		314		(국)농림축산식품부					
184	기정	지내리	776	답	1,534		1,534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76	답		1,534		1,5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85	기정	지내리	777	답	2,984		2,984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77	답		2,984		2,98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86	기정	지내리	778	답	3,027		3,027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78	답		3,027		3,02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87	기정	지내리	779	전	2,846		2,846			황**	춘천시 봉의동 **-*	동*******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779	전		2,846		2,84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88	기정	지내리	780	전	2,957		2,957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번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780	전		2,957		2,95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89	기정	지내리	781	답	660		660			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송**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781	답		660		6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0	기정	지내리	781-1	답	2,272		2,272			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송**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781-1	답		2,272		2,27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1	기정	지내리	782	답	3,067		3,067			박**	춘천시 후평동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부평길 *				
	변경	지내리	782	답		3,067		3,06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2	기정	지내리	783	답	3,132		3,132			박**	춘천시 후평동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부평길 *				
	변경	지내리	783	답		3,132		3,13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3	기정	지내리	784	답	1,016		1,016			박**	춘천시 후평동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부평길 *				
	변경	지내리	784	답		1,016		1,01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94	기정	지내리	784-1	답	1,852		1,852			박**	춘천시 후평동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부평길 *				
	변경	지내리	784-1	답		1,852		1,85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5	기정	지내리	784-2	답	1,918		1,918			박**	춘천시 후평동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근저당권/지상권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부평길 *				
	변경	지내리	784-2	답		1,918		1,91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6	기정	지내리	785	답	2,320		2,320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85	답		2,320		2,3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7	기정	지내리	786	답	2,896		2,896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786	답		2,896		2,89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8	기정	지내리	787	답	3,036		3,036			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토지길 **-**				
	변경	지내리	787	답		3,036		3,03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99	기정	지내리	788	답	2,922		2,922			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토지길 **-**				
	변경	지내리	788	답		2,922		2,92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0	기정	지내리	789	답	2,702		2,702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번길 **, ***동 ****호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789	답		2,702		2,70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1	기정	지내리	790	전	2,918		2,918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90	전		2,918		2,91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2	기정	지내리	791	전	3,006		3,006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91	전		3,006		3,00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3	기정	지내리	792	답	2,888		2,888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92	답		2,888		2,88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4	기정	지내리	793	답	2,852		2,852			박**	춘천시 소양로*가 ***-*				
	변경	지내리	793	답		2,852		2,85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5	기정	지내리	794	답	1,650		1,650			박**	춘천시 소양로*가 ***-*				
	변경	지내리	794	답		1,650		1,6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6	기정	지내리	795	답	1,626		1,626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95	답		1,626		1,62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7	기정	지내리	795-1	답	1,434		1,434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95-1	답		1,434		1,4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08	기정	지내리	796	답	2,675		2,675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동 ****호(온의동, 온의 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796	답		2,675		2,67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9	기정	지내리	797	답	2,013	2,013	2,013	2,013		(국)기획재정부					
210	기정	지내리	798	답	4,796		4,796			전**	춘천시 효자동 ***-**				
	변경	지내리	798	답		4,796		4,79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1	기정	지내리	799	답	2,966		2,966			윤**	춘성군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799	답		2,966		2,96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2	기정	지내리	800	답	3,047		3,047			윤**	춘성군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00	답		3,047		3,04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3	기정	지내리	801	답	2,948		2,948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01	답		2,948		2,94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4	기정	지내리	802	답	3,095		3,095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02	답		3,095		3,09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5	기정	지내리	803	답	2,772		2,772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03	답		2,772		2,77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6	기정	지내리	804	답	3,078		3,078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04	답		3,078		3,07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7	기정	지내리	805	답	3,072		3,072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05	답		3,072		3,07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18	기정	지내리	806	답	3,083		3,083			지**	춘천시 효자동 ***-**				
	변경	지내리	806	답		3,083		3,08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19	기정	지내리	807	도	8,453	8,453	8,453	8,453		(국)농림축산식품부					
220	기정	지내리	807-1	도	498		377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7-10	도		372		372	-5	(국)농림축산식품부					
221	기정	지내리	807-2	도	796	796	796	796		(국)농림축산식품부					
222	기정	지내리	807-4	도	7,639		3,797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7-12	도		111		111	51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7-13	도		1,373		1,373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7-14	도		1,646		1,646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7-15	도		718		718		(국)농림축산식품부					
223	기정	지내리	807-5	도	1,258	1,258	1,258	1,258		(국)농림축산식품부					
224	기정	지내리	807-6	도	29	29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225	기정	지내리	807-7	도	39	39	39	39		(국)농림축산식품부					
226	기정	지내리	807-8	도	267	267	267	267		(국)농림축산식품부					
227	기정	지내리	807-9	도	160	160	160	160		(국)농림축산식품부					
228	기정	지내리	808	구	1,239		1,238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8-16	구		1,218		1,218	-20	(국)농림축산식품부					
229	기정	지내리	808-1	구	1,298	1,298	1,298	1,298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30	기정	지내리	808-2	구	1,192	1,192	1,192	1,192		(국)농림축산식품부					
231	기정	지내리	808-3	구	6,441		6,425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8-17	구		6,425		6,425		(국)농림축산식품부					
232	기정	지내리	808-4	구	399	399	399	399		(국)농림축산식품부					
233	기정	지내리	808-5	구	389		259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8-18	구		265		265	6	(국)농림축산식품부					
234	기정	지내리	808-6	구	3,029	3,029	3,029	3,029		(국)농림축산식품부					
235	기정	지내리	808-7	구	39	39	39	39		(국)기획재정부					
236	기정	지내리	808-8	구	1,906		1,390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8-19	구		1,386		1,386	-4	(국)농림축산식품부					
237	기정	지내리	808-9	구	352	352	352	352		(국)농림축산식품부					
238	기정	지내리	808-10	구	170	170	170	170		(국)농림축산식품부					
239	기정	지내리	808-11	구	122	122	122	122		(국)농림축산식품부					
240	기정	지내리	808-12	구	161	161	161	161		(국)농림축산식품부					
241	기정	지내리	808-13	구	512	512	512	512		(국)농림축산식품부					
242	기정	지내리	808-14	구	4,071		816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8-21	구		274		274	-44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08-22	구		498		498		(국)농림축산식품부					
243	기정	지내리	808-15	구	635	635	635	635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44	기정	지내리	809	답	849		849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09	답		849		84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45	기정	지내리	809-1	도	95	95	95	95		(국)국토교통부					
246	기정	지내리	810	답	2,827		2,827			지**	춘천시 효자동 ***-**				
	변경	지내리	810	답		2,827		2,82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47	기정	지내리	810-1	도	229	229	229	229		(국)국토교통부					
248	기정	지내리	811	답	2,918		2,918			안**	경기도 시흥시 배곧*로 ***-**, ****동 ****호(정왕동, 호반베르디움센트로하임)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811	답		2,918		2,91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49	기정	지내리	812	답	2,892		2,892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12	답		2,892		2,89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50	기정	지내리	813	답	2,746		2,746			이**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13	답		2,746		2,74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51	기정	지내리	814	구	1,509	1,509	1,509	1,509		(국)농림축산식품부					
252	기정	지내리	814-1	구	240	240	240	240		(국)농림축산식품부					
253	기정	지내리	814-2	구	1,350		569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814-5	구		569		569		(국)농림축산식품부					
254	기정	지내리	814-3	구	271	271	271	271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55	기정	지내리	815	답	1,990		1,990			이**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15	답		1,990		1,9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56	기정	지내리	816	답	961		961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16	답		961		96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57	기정	지내리	817	답	2,986		2,986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17	답		2,986		2,98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58	기정	지내리	818	답	990		990			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		
	변경	지내리	818	답		990		9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59	기정	지내리	818-1	목	2,032		2,032			계**	춘성군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18-1	목		2,032		2,03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60	기정	지내리	819	답	3,003	3,003	3,003	3,003		(국)기획재정부					
261	기정	지내리	820	답	2,816	2,816	2,816	2,816		(국)기획재정부					
262	기정	지내리	821	답	2,925		2,925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 ***동 ****호(온의동, 온의 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21	답		2,925		2,92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63	기정	지내리	822	답	2,988	2,988	2,988	2,988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64	기정	지내리	823	답	2,902		2,902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823	답		2,902		2,90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65	기정	지내리	824	답	2,960	2,960	2,960	2,960		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번길 **, ***동 ***호				
266	기정	지내리	825	답	3,005		3,005			춘천시					
	변경	지내리	825	답		3,005		3,00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67	기정	지내리	826	답	2,947	2,947	2,947	2,947		(국)기획재정부					
268	기정	지내리	827	답	2,799	2,799	2,799	2,799		(국)기획재정부					
269	기정	지내리	828	답	3,075	3,075	3,075	3,075		(국)기획재정부					
270	기정	지내리	828-1	답	25	25	25	25		(국)국토교통부					
271	기정	지내리	829	답	1,714		1,714			윤**	춘천시 온의동 ***-*				
	변경	지내리	829	답		1,714		1,71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72	기정	지내리	829-1	도	258	258	258	258		(국)국토교통부					
273	기정	지내리	830	답	768		768			송**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지내리	830	답		768		76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74	기정	지내리	830-1	도	190	190	190	190		(국)국토교통부					
275	기정	지내리	831	답	2,091	2,091	2,091	2,091		송**	춘천시 우두동 ***				
276	기정	지내리	831-1	도	904	904	904	904		(국)국토교통부					
277	기정	지내리	832	답	1,193	1,193	1,193	1,193		정**	춘천시 우두동 ***				
278	기정	지내리	832-1	도	881	881	881	881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79	기정	지내리	833	답	497		497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833	답		497		49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80	기정	지내리	833-1	도	511	511	511	511		(국)국토교통부					
281	기정	지내리	834	답	873		873			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834	답		873		87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82	기정	지내리	834-1	도	1,584	1,584	1,584	1,584		(국)국토교통부					
283	기정	지내리	834-2	답	165		143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834-3	답		137		137	-6	(국)기획재정부					
284	기정	지내리	835	답	258	258	258	258		(국)기획재정부					
285	기정	지내리	835-1	도	770		672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835-2	도		637		637	-35	(국)국토교통부					
286	기정	지내리	836	답	3,090	3,090	3,090	3,090		(국)기획재정부					
287	기정	지내리	837	답	2,618		2,618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837	답		2,618		2,61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88	기정	지내리	838	답	3,024		3,024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838	답		3,024		3,02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89	기정	지내리	839	답	2,996	2,996	2,996	2,996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90	기정	지내리	840	답	2,962		2,962			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840	답		2,962		2,96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91	기정	지내리	841	답	1,622	1,622	1,622	1,622		(국)기획재정부					
292	기정	지내리	842	답	1,662	1,662	1,662	1,662		(국)기획재정부					
293	기정	지내리	843	답	2,527		2,527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43	답		2,527		2,52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94	기정	지내리	843-1	답	461	461	461	461		(국)기획재정부					
295	기정	지내리	844	답	3,014		3,014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844	답		3,014		3,01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296	기정	지내리	845	답	3,020	3,020	3,020	3,020		(국)기획재정부					
297	기정	지내리	846	답	1,386	1,386	1,386	1,386		(국)기획재정부					
298	기정	지내리	846-1	답	239	239	239	239		(국)국토교통부					
299	기정	지내리	847	답	2,271	2,271	2,271	2,271		(국)기획재정부					
300	기정	지내리	847-1	답	670	670	670	670		(국)국토교통부					
301	기정	지내리	848	답	2,089	2,089	2,089	2,089		(국)기획재정부					
302	기정	지내리	848-1	답	1,013	1,013	1,013	1,013		(국)국토교통부					
303	기정	지내리	849	답	1,632	1,632	1,632	1,632		(국)기획재정부					
304	기정	지내리	849-1	답	1,289	1,289	1,289	1,289		(국)국토교통부					
305	기정	지내리	850	답	2,250	2,250	2,250	2,250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6	기정	지내리	850-1	답	667	667	667	667		(국)국토교통부					
307	기정	지내리	851	답	1,957	1,957	1,957	1,957		(국)기획재정부					
308	기정	지내리	851-1	답	993	993	993	993		(국)국토교통부					
309	기정	지내리	852	답	1,608	1,608	1,608	1,608		(국)기획재정부					
310	기정	지내리	852-1	답	1,395	1,395	1,395	1,395		(국)국토교통부					
311	기정	지내리	853	답	1,047	1,047	1,047	1,047		(국)기획재정부					
312	기정	지내리	853-1	답	1,725	1,725	1,725	1,725		(국)국토교통부					
313	기정	지내리	853-2	답	226	226	226	226		(국)국토교통부					
314	기정	지내리	853-3	답	10	10	10	10		(국)국토교통부					
315	기정	지내리	854	답	72	72	72	72		(국)기획재정부					
316	기정	지내리	854-1	답	749	749	749	749		(국)국토교통부					
317	기정	지내리	854-2	답	491	491	491	491		(국)국토교통부					
318	기정	지내리	854-3	답	42	42	42	42		(국)국토교통부					
319	기정	지내리	854-4	답	256	256	256	256		(국)국토교통부					
320	기정	지내리	855	도	296	296	296	296		(국)농림축산식품부					
321	기정	지내리	855-1	도	164	164	164	164		(국)농림축산식품부					
322	기정	지내리	855-2	도	917	917	917	917		(국)농림축산식품부					
323	기정	지내리	855-3	도	14	14	14	14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24	기정	지내리	855-4	도	553		528			(국)기획재정부					
	변경	지내리	855-8	도		539		539	11	(국)기획재정부					
325	기정	지내리	855-5	도	68	68	68	68		(국)농림축산식품부					
326	기정	지내리	855-6	도	184	184	184	184		(국)농림축산식품부					
327	기정	지내리	855-7	도	158	158	158	158		(국)농림축산식품부					
328	기정	지내리	856	대	656		656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56	대		656		65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29	기정	지내리	856-1	도	151		151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56-1	도		151		15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30	기정	지내리	856-2	양	742		742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56-2	양		742		74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31	기정	지내리	856-3	도	9		9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56-3	도		9		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32	기정	지내리	856-4	대	4		4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56-4	대		4		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33	기정	지내리	857	답	2,222	2,222	2,222	2,222		(국)기획재정부					
334	기정	지내리	857-1	답	700	700	700	700		(국)기획재정부					
335	기정	지내리	858	답	513	513	513	513		(국)국토교통부					
336	기정	지내리	858-1	답	388		388			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858-1	답		388		38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37	기정	지내리	858-2	답	1,523	1,523	1,523	1,523		(국)국토교통부					
338	기정	지내리	858-3	답	586		586			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58-3	답		586		58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39	기정	지내리	859	답	2,373	2,373	2,373	2,373		(국)기획재정부					
340	기정	지내리	859-1	답	545	545	545	545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41	기정	지내리	860	답	2,958		2,958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860	답		2,958		2,95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42	기정	지내리	861	답	1,171		1,171			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 ***		
	변경	지내리	861	답		1,171		1,17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43	기정	지내리	861-1	답	519	519	519	519		(국)국토교통부					
344	기정	지내리	862	답	1,007	1,007	1,007	1,007		(국)기획재정부					
345	기정	지내리	862-1	도	14	14	14	14		(국)기획재정부					
346	기정	지내리	862-2	답	219	219	219	219		(국)국토교통부					
347	기정	지내리	863	답	326	326	326	326		(국)기획재정부					
348	기정	지내리	863-1	도	1,656		1,315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863-2	도		1,252		1,252	-63	(국)국토교통부					
349	기정	지내리	864	답	105	105	105	105		(국)기획재정부					
350	기정	지내리	864-1	도	2,647		2,011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864-3	도		1,928		1,928	-83	(국)국토교통부					
351	기정	지내리	865-1	답	630		609			강원특별자치도					
	변경	지내리	865-3	답		628		628	19	강원특별자치도					
352	기정	지내리	865-2	도	1,377		1,015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865-4	도		982		982	-33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53	기정	지내리	870	답	1,510		15			신**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70-1	답		15		1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54	기정	지내리	871	답	1,250		866			유**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71-1	답		866		86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55	기정	지내리	872	답	741		741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72	답		741		74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56	기정	지내리	872-1	도	267	267	267	267		(국)국토교통부					
357	기정	지내리	873	답	1,214		1,214			최**	춘천시 석사동 ***-* 그랜드아파트 ***-****				
	변경	지내리	873	답		1,214		1,21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58	기정	지내리	873-1	도	627	627	627	627		(국)국토교통부					
359	기정	지내리	874	답	1,717		1,717			최**	춘천시 석사동 ***-* 그랜드아파트 ***-****				
	변경	지내리	874	답		1,717		1,71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60	기정	지내리	874-1	도	1,279	1,279	1,279	1,279		(국)국토교통부					
361	기정	지내리	875	답	1,291		1,291			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875	답		1,291		1,29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62	기정	지내리	875-1	도	1,039	1,039	1,039	1,039		(국)국토교통부					
363	기정	지내리	876-1	답	578	578	578	578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64	기정	지내리	877	답	893		893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주로 ***, ***동 ****호	춘********	춘천시 안마산로 ***, *층 ***호(퇴계동, 퇴계타운상가)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877	답		893		89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65	기정	지내리	877-1	답	2,119	2,119	2,119	2,119		(국)국토교통부					
366	기정	지내리	878	답	363	363	363	363		(국)기획재정부					
367	기정	지내리	878-1	도	2,268	2,268	2,268	2,268		(국)국토교통부					
368	기정	지내리	878-2	답	444		444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주로 ***, ***동 ****호	춘********	춘천시 안마산로 ***, *층 ***호(퇴계동, 퇴계타운상가)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878-2	답		444		44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69	기정	지내리	879	답	652	652	652	652		(국)기획재정부					
370	기정	지내리	879-1	답	2,286	2,286	2,286	2,286		(국)국토교통부					
371	기정	지내리	879-2	답	36		36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주로 ***, ***동 ****호	춘********	춘천시 안마산로 ***, *층 ***호(퇴계동, 퇴계타운상가)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879-2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72	기정	지내리	880	답	978	978	978	978		(국)기획재정부					
373	기정	지내리	880-1	답	1,828	1,828	1,828	1,828		(국)국토교통부					
374	기정	지내리	881	답	1,314	1,314	1,314	1,314		(국)기획재정부					
375	기정	지내리	881-1	답	1,672	1,672	1,672	1,672		(국)국토교통부					
376	기정	지내리	882	답	2,581	2,581	2,581	2,581		(국)기획재정부					
377	기정	지내리	882-1	답	259	259	259	259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78	기정	지내리	883	답	2,977	2,977	2,977	2,977		(국)기획재정부					
379	기정	지내리	883-1	답	2	2	2	2		(국)국토교통부					
380	기정	지내리	884	답	2,962		2,962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84	답		2,962		2,96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1	기정	지내리	885	답	3,020		3,020			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벌말길 **-*	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분1/4)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분1/4)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벌말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분1/4)	
												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번길 **, ****동 ***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분1/4)	
	변경	지내리	885	답		3,020		3,0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2	기정	지내리	886	답	2,003		2,003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동*********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886	답		2,003		2,00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83	기정	지내리	886-1	답	1,008		1,008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86-1	답		1,008		1,00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4	기정	지내리	887	대	660		660			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887	대		660		6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5	기정	지내리	887-1	답	2,373		2,373			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887-1	답		2,373		2,37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6	기정	지내리	888	답	2,934		2,934			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번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888	답		2,934		2,9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7	기정	지내리	889-1	답	234		230			춘천시					
	변경	지내리	889-2	답		232		232	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88	기정	지내리	891	답	1,434		11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91-1	답		11		11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389	기정	지내리	892	답	1,004		695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92-2	답		685		685	-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0	기정	지내리	892-1	답	1,986		634			윤**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92-3	답		634		6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1	기정	지내리	893	답	1,939		1,857			신**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93-1	답		1,856		1,856	-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92	기정	지내리	894	답	1,068		1,068			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변경	지내리	894	답		1,068		1,06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3	기정	지내리	895	답	2,967		2,967			춘천시					
	변경	지내리	895	답		2,967		2,96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4	기정	지내리	896	답	2,962		2,962			춘천시					
	변경	지내리	896	답		2,962		2,96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5	기정	지내리	897	답	2,971		2,971			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897	답		2,971		2,97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6	기정	지내리	898	답	3,006		3,006			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898	답		3,006		3,00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7	기정	지내리	899	답	2,914	2,914	2,914	2,914		(국)기획재정부					
398	기정	지내리	900	전	2,205		2,205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00	전		2,205		2,20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99	기정	지내리	901	전	2,484		2,484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솔밭길 **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01	전		2,484		2,48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00	기정	지내리	902	답	2,726		2,078			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변경	지내리	902-1	답		2,066		2,066	-12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 ***동 ***호(후평동, 춘천더?아파트)				
401	기정	지내리	906	장	1,160	1,160	1,160	1,160		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질 **-**, *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02	기정	지내리	906-1	답	1,219	1,219	1,219	1,219		(국)국토교통부					
403	기정	지내리	907	답	3,396	3,396	3,396	3,396		(국)기획재정부					
404	기정	지내리	907-1	도	90	90	90	90		(국)기획재정부					
405	기정	지내리	907-2	답	271	271	271	271		(국)국토교통부					
406	기정	지내리	907-3	도	80	80	80	80		(국)국토교통부					
407	기정	지내리	907-4	답	57	57	57	57		(국)기획재정부					
408	기정	지내리	908	답	1,510	1,510	1,510	1,510		(국)기획재정부					
409	기정	지내리	908-1	답	2,915		2,915			춘천시					
	변경	지내리	908-1	답		2,915		2,91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10	기정	지내리	909	답	5,400		5,400			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근저당권	
												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 ***동 ***호(안양동, 진흥아파트)	가압류	
	변경	지내리	909	답		5,400		5,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1	기정	지내리	911	답	1,322		1,322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911	답		1,322		1,32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2	기정	지내리	912	대	1,730		1,730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912	대		1,730		1,7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3	기정	지내리	912-1	답	320		320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912-1	답		320		3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4	기정	지내리	913	답	2,926		2,926			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지내리	913	답		2,926		2,92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15	기정	지내리	914	답	2,916		2,916			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번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	근저당권	
												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길 **-**, ***호(길동)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14	답		2,916		2,91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6	기정	지내리	915	답	3,454		3,454			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번길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	근저당권	
												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길 **-**, ***호(길동)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15	답		3,454		3,45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7	기정	지내리	916	도	1,067	1,067	1,067	1,067		(국)농림축산식품부					
418	기정	지내리	917	답	1,070		1,070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917	답		1,070		1,0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19	기정	지내리	917-1	답	800		800			이**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917-1	답		800		8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0	기정	지내리	918	답	2,834	2,834	2,834	2,834		(국)기획재정부					
421	기정	지내리	919	답	955		955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충청로*가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919	답		955		95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2	기정	지내리	919-1	답	550	550	550	550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23	기정	지내리	920	답	1,174		1,174			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 ***동 ****호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920	답		1,174		1,17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4	기정	지내리	921	답	917		917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변경	지내리	921	답		917		91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5	기정	지내리	921-1	답	1,885		1,885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변경	지내리	921-1	답		1,885		1,88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6	기정	지내리	922	답	2,995		2,995			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922	답		2,995		2,99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7	기정	지내리	923	답	2,814		2,814			정**	춘천시 후평동 *** 대우아파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23	답		2,814		2,81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8	기정	지내리	924	답	1,334		1,334			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924	답		1,334		1,3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29	기정	지내리	925	답	2,125		2,125			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				
	변경	지내리	925	답		2,125		2,12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0	기정	지내리	926	답	868		868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양지길 **-*				
	변경	지내리	926	답		868		86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31	기정	지내리	927	답	2,048		2,048			이**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927	답		2,048		2,04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2	기정	지내리	928	답	1,940		1,940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상천*길 **, ***동 ***호(해강아파트)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	근저당권/지상권	
										송**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 ***동 ***호(낙양동,부용마을*단지)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잠원동)	근저당권	
										송**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남산강변로*길 *, *동 ***호 (삼호아파트)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잠원동)	임의경매개시	
										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로 **, ***호(개운동,길우엘린아파트)				
										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길 * (부곡동)				
										송**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 ***동 ****호 (우미린스테이)				
										송**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실로 ***, ***동 ****호(후평동,초록지붕*차아파트)				
	변경	지내리	928	답		1,940		1,9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3	기정	지내리	929-1	답	595		595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변경	지내리	929-1	답		595		59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34	기정	지내리	930	도	833	833	833	833		(국)농림축산식품부					
435	기정	지내리	931	답	3,122		3,122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 ***동 ****호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31	답		3,122		3,12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6	기정	지내리	932	답	2,892		2,892			안**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932	답		2,892		2,89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7	기정	지내리	933	답	1,934		1,934			윤**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산** 군인아파트 ***동 ***호				
	변경	지내리	933	답		1,934		1,9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8	기정	지내리	934	답	1,022		1,022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 온의마젤란**아파트 ***-***				
	변경	지내리	934	답		1,022		1,02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39	기정	지내리	934-1	답	530	530	530	530		(국)기획재정부					
440	기정	지내리	935	구	26,855		18,529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935-10	구		1,351		1,351	-79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935-11	구		1,175		1,175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935-12	구		15,924		15,924		(국)농림축산식품부					
441	기정	지내리	935-4	구	2,114	2,114	2,114	2,114		(국)농림축산식품부					
442	기정	지내리	936	답	1,390		1,390			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	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		
	변경	지내리	936	답		1,390		1,3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43	기정	지내리	936-1	답	719		719			김**	서울 마포구 연남동 ***-**, *층				
	변경	지내리	936-1	답		719		71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44	기정	지내리	936-2	도	91	91	91	91		춘천시					
445	기정	지내리	936-3	도	281	281	281	281		(국)기획재정부					
446	기정	지내리	936-4	답	29	29	29	29		춘천시					
447	기정	지내리	937	답	2,268	2,268	2,268	2,268		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근저당권/지상권	
448	기정	지내리	937-1	도	86	86	86	86		춘천시					
449	기정	지내리	937-2	답	29	29	29	29		춘천시					
450	기정	지내리	938	답	2,806		2,806			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번길 **, ***동 ***호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 ***	근저당권	
										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				
	변경	지내리	938	답		2,806		2,80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51	기정	지내리	938-1	도	84	84	84	84		춘천시					
452	기정	지내리	938-2	답	53	53	53	53		춘천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53	기정	지내리	939	답	1,398		1,398			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동 ****호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동 ****호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동 ****호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망대길 **				
										윤**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동 ****호				
	변경	지내리	939	답		1,398		1,39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54	기정	지내리	939-1	도	42	42	42	42		춘천시					
455	기정	지내리	939-2	답	15	15	15	15		춘천시					
456	기정	지내리	940	답	1,454		1,454			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940	답		1,454		1,45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57	기정	지내리	940-1	도	46	46	46	46		춘천시					
458	기정	지내리	940-2	답	9		9			진*****	춘성군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940-2	답		9		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59	기정	지내리	941	답	2,810		2,810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41	답		2,810		2,8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60	기정	지내리	941-1	도	93	93	93	93		춘천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61	기정	지내리	941-2	답	3	3	3	3		춘천시					
462	기정	지내리	942	답	2,861		2,861			홍**	춘천시 후평동 **-* 주공아파트 ***동 ***호				
	변경	지내리	942	답		2,861		2,86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63	기정	지내리	942-1	도	105	105	105	105		춘천시					
464	기정	지내리	942-2	답	34	34	34	34		춘천시					
465	기정	지내리	943	도	2,033		1,867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지내리	943-2	도		1,861		1,861	-6	(국)농림축산식품부					
466	기정	지내리	943-1	도	165	165	165	165		(국)농림축산식품부					
467	기정	지내리	944	장	3,091	3,091	3,091	3,091		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 *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68	기정	지내리	944-1	답	33	33	33	33		(국)국토교통부					
469	기정	지내리	944-2	답	42	42	42	42		춘천시					
470	기정	지내리	945	답	2,909		2,909			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 후곡마을 ****-***	주*******	서울 중구 회현동*가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945	답		2,909		2,90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71	기정	지내리	945-1	답	59	59	59	59		춘천시					
472	기정	지내리	946	답	2,698		2,698			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 ***동 ****호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946	답		2,698		2,69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73	기정	지내리	946-1	답	58	58	58	58		춘천시					
474	기정	지내리	946-2	답	144		144			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 ***동 ****호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지내리	946-2	답		144		14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75	기정	지내리	947	답	2,707		2,707			김**	춘천시 후평동 **-* 주공아파트 상가-*				
	변경	지내리	947	답		2,707		2,70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76	기정	지내리	947-1	답	60	60	60	60		춘천시					
477	기정	지내리	947-2	답	153	153	153	153		춘천시					
478	기정	지내리	948	답	2,803		2,795			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지내리	948-3	답		2,795		2,79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79	기정	지내리	948-1	답	63	63	63	63		춘천시					
480	기정	지내리	948-2	답	160	160	160	160		춘천시					
481	기정	지내리	949	답	2,700		144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949-5	답		144		144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근저당권	
	제척	지내리	949-5	답		-144		-144	-144	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	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근저당권	
482	기정	지내리	949-1	답	62		19			춘천시					
	변경	지내리	949-3	답		17		17	-2	춘천시					
483	기정	지내리	949-2	답	148		23			춘천시					
	변경	지내리	949-4	답		23		23		춘천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84	기정	지내리	950-1	도	8		7			춘천시					
	변경	지내리	950-5	도		2		2	-5	춘천시					
485	기정	지내리	950-2	답	55	55	1	1		춘천시					
486	기정	지내리	951-1	도	21		14			춘천시					
	변경	지내리	951-5	도		3		3	-11	춘천시					
487	기정	지내리	952-1	도	23		13			춘천시					
	변경	지내리	952-4	도		7		7	-6	춘천시					
488	기정	지내리	953-1	도	13		7			춘천시					
	변경	지내리	953-4	도		5		5	-2	춘천시					
489	기정	지내리	산1	임	29,259		233			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굴화주공강변그린빌*단지 ***-****				
	변경	지내리	산1-6	임		233		2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90	기정	지내리	산1-1	임	1,662		1,530			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굴화주공강변그린빌*단지 ***-****				
	변경	지내리	산1-7	임		1,511		1,511	-1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91	기정	지내리	산1-5	임	357		32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산1-8	도		32		32		(국)국토교통부					
492	기정	지내리	산2	임	7,604		385			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지내리	산2-3	임		385		38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93	기정	지내리	산2-1	임	996		996			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지내리	산2-1	임		996		99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94	기정	지내리	산3-1	임	27,201		1,958			정**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 ***동 ****호	춘**		압류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 ***동 ****호				
										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동 ****호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 ***동****호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번길 **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로 **, 센텀스퀘어 ****호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				
										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				
										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길 **, ***동 ****호				
										정**	미국 버지이나주 앨링턴시 올드 도미니언드라이브 ****번지 제***호				
	변경	지내리	산3-5	임		1,958		1,95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로 **, 센텀스퀘어 ****호				
										정**	미국 버지이나주 앨링턴시 올드 도미니언드라이브 ****번지 제***호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95	기정	지내리	산3-3	임	190		190			정**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 ***동 ****호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 ***동 ****호				
										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동 ****호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 ***동****호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번길 **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로 **, 센텀스퀘어 ****호				
										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				
										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				
										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길 **, ***동 ****호				
										정**	미국 버지이나주 앨링턴시 올드 도미니언드라이브 ****번지 제***호				
	변경	지내리	산3-3	임		190		1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로 **, 센텀스퀘어 ****호				
										정**	미국 버지이나주 앨링턴시 올드 도미니언드라이브 ****번지 제***호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96	기정	지내리	산4-4	임	8,331		3,734			이**	춘천시 동면 지내리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변경	지내리	산4-5	임		3,734		3,73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497	기정	지내리	산5-1	임	68,134		42,246			춘천시					
	변경	지내리	산5-5	임		41,379		41,379	-42	춘천시					
	변경	지내리	산5-6	임		825		825		춘천시					
498	기정	지내리	산5-2	도	793		714			춘천시					
	변경	지내리	산5-7	도		682		682	-32	춘천시					
499	기정	지내리	산6	임	32,470		31,314			춘천시					
	변경	지내리	산6-3	임		31,906		31,906	592	춘천시					
500	기정	지내리	산6-1	임	3	3	3	3		(국)국토교통부					
501	기정	지내리	산7	임	14,408		14,408			이**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				
	변경	지내리	산7	임		14,408		14,40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02	기정	지내리	산8	임	1,455		1,455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가 * 현대아파트 ***-***				
	변경	지내리	산8	임		1,455		1,45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03	기정	지내리	산9	임	21,141		16,251			성**********	춘천시 우두동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변경	지내리	산9-3	임		16,251		16,251		성**********	춘천시 우두동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504	기정	지내리	산9-1	임	3	3	3	3		(국)국토교통부					
505	기정	지내리	산10	임	16,066		3,973			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변경	지내리	산10-2	임		3,973		3,97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06	기정	지내리	산10-1	임	3	3	3	3		(국)국토교통부					
507	기정	지내리	산11	임	6,744		774			승**	춘천시 퇴계동 *** *층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승**	강릉시 교동 *** 교동이편한세상아파트 ***-****				
										승**	부천시 원미구 상동 *** 벚꽃마을 ****-***				
										승**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 유승앙브와즈*단지 ***-***				
										승**	춘천시 우두동 ****-**				
										승**	서울 마포구 신수동 **-**-***				
	변경	지내리	산11-1	임		774		774		승**	춘천시 퇴계동 *** *층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승**	강릉시 교동 *** 교동이편한세상아파트 ***-****				
										승**	부천시 원미구 상동 *** 벚꽃마을 ****-***				
										승**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 유승앙브와즈*단지 ***-***				
										승**	춘천시 우두동 ****-**				
										승**	서울 마포구 신수동 **-**-***				
508	기정	지내리	산12	임	12,198		5,517			춘천시					
	변경	지내리	산12-1	임		5,569		5,569	52	춘천시					
509	기정	지내리	산71-2	도	2,777		36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산71-4	도		43		43	7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10	기정	지내리	산72	임	51,758		5,015			지**	춘천시 효자동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변경	지내리	산72-10	임		4,984		4,98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변경	지내리	산72-11	임		31		3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11	기정	지내리	산72-8	임	3,329		170			(국)국토교통부					
	변경	지내리	산72-9	임		169		169	-1	(국)국토교통부					
512	기정	지내리	산73	임	13,330		3,126			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변경	지내리	산73-4	임		3,126		3,12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13	기정	장학리	396-3	도	759		593			(국)기획재정부					
	변경	장학리	396-10	도		589		589	-4	(국)기획재정부					
514	기정	장학리	397-3	도	435	435	435	435		(국)기획재정부					
515	기정	장학리	397-5	도	237	237	237	237		(국)기획재정부					
516	기정	장학리	398-2	도	197	197	197	197		(국)기획재정부					
517	기정	장학리	399-3	도	1,261	1,261	1,261	1,261		(국)기획재정부					
518	기정	장학리	399-5	도	455	455	455	455		(국)기획재정부					
519	기정	장학리	402-1	답	212		72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장학리	402-6	답		71		71	-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20	기정	장학리	402-2	도	844		198			(국)기획재정부					
	변경	장학리	402-7	도		202		202	4	(국)기획재정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21	기정	장학리	402-3	답	400		222			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				
	변경	장학리	402-8	답		1		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변경	장학리	402-9	답		221		22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22	기정	장학리	403-1	답	1,236		13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번지***동 ***호(장지동, 송파파인타운*단지)				
	변경	장학리	403-5	답		13		13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번지***동 ***호(장지동, 송파파인타운*단지)				
523	기정	장학리	403-3	대	740		40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변경	장학리	403-6	대		40		40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제척	장학리	403-6	대		-40		-40	-40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524	기정	장학리	403-4	도	121		23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변경	장학리	403-7	도		23		23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제척	장학리	403-7	도		-23		-23	-23	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525	기정	장학리	898	구	3,997		19			(국)국토교통부					
	변경	장학리	898-4	구		19		19		(국)국토교통부					
526	기정	장학리	899	도	965		47			(국)국토교통부					
	변경	장학리	899-2	도		47		47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27	기정	장학리	900	구	4,060		57			(국)국토교통부					
	변경	장학리	900-1	구		57		57		(국)국토교통부					
528	기정	장학리	898-1	도	105	105	105	105		(국)농림축산식품부					
529	기정	장학리	962	답	671		653			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원아파트 카동 ***호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장학리	962-2	답		653		65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530	기정	장학리	962-1	제	330		1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장학리	962-3	제		160		160		(국)국토교통부					
531	기정	장학리	963	답	1,383		1,383			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원아파트 카동 ***호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장학리	963	답		1,383		1,38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32	기정	장학리	964	답	2,486		2,312			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동 ***호				
	변경	장학리	964-2	답		2,312		2,312		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동 ***호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33	기정	장학리	964-1	제	366		13			(국)국토교통부					
	변경	장학리	964-3	제		13		13		(국)국토교통부					
534	기정	장학리	965	답	786		786			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 ***동 ***호				
	변경	장학리	965	답		786		78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35	기정	장학리	966	답	1,986		1,986			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원아파트 카동 ***호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장학리	966	답		1,986		1,98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36	기정	장학리	967	답	2,441		2,441			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원아파트 카동 ***호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지**	춘천시 효자동 ***-**				
										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				
	변경	장학리	967	답		2,441		2,44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37	기정	장학리	968	답	764		764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장학리	968	답		764		76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38	기정	장학리	969	답	2,636		2,636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번길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장학리	969	답		2,636		2,63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39	기정	장학리	970	답	1,654		1,640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				
	변경	장학리	970-1	답		1,640		1,6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0	기정	장학리	971	대	660		660			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 ***동****호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장학리	971	대		660		6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1	기정	장학리	971-1	답	1,058		1,058			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 ***동****호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장학리	971-1	답		1,058		1,05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2	기정	장학리	972	답	1,015		1,015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양정길 **				
	변경	장학리	972	답		1,015		1,01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3	기정	장학리	973	답	2,468		2,468			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양정길 **				
	변경	장학리	973	답		2,468		2,46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4	기정	장학리	974	대	513		437			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	근저당권	
	변경	장학리	974-4	대		437		43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5	기정	장학리	974-1	답	827		758			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장학리	974-5	답		758		75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6	기정	장학리	974-2	답	2,542		2,475			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장학리	974-6	답		2,475		2,47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47	기정	장학리	974-3	도	433		433			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	근저당권/지상권	
	변경	장학리	974-3	도		433		4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8	기정	장학리	976	전	2,593		2,253			백**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가 ** 현대아파트 ***-***				
	변경	장학리	976-2	전		2,253		2,25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549	기정	장학리	977	도	1,141	1,141	1,141	1,141		(국)농림축산식품부					
550	기정	장학리	977-1	제	23		18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장학리	977-2	제		18		18		(국)농림축산식품부					
551	기정	장학리	978	구	3,680		3,662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장학리	978-3	구		3,663		3,663	1	(국)농림축산식품부					
552	기정	장학리	978-2	제	8	8	2	2		(국)농림축산식품부					
553	기정	장학리	979	도	346		320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장학리	979-2	도		337		33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554	기정	장학리	980	도	1,301		1,156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장학리	980-1	도		1,158		1,158	2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춘천시 동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55	기정	장학리	산1-1	임	58,590		1,204			(국)국토교통부					
										이**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 ***동 ***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상리*길 *				
										이**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 ***동 ***호(신장동, 백조현대아파트)				
										이**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 지하층 ***호(신장동)				
	변경	장학리	산1-5	임		1,204		1,20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국)환경부					
556	기정	장학리	산3	임	15,433		217			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변경	장학리	산3-4	임		217		217		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제척	장학리	산3-4	임		-217		-217	-217	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	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	근저당권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동법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총괄조서(춘천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116,412,834.2		-	1,116,412,834.2	100.00	
도시지역	계		335,306,769.7		-	335,306,769.7	30.04	
	주거지역	소계	21,628,619.0	증)	17	21,628,636.0	1.93	
		제1종전용주거지역	137,995.0		-	137,995.0	0.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657,934.3	증)	17	5,657,951.3	0.51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97,332.8		-	13,297,332.8	1.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369,799.9		-	1,369,799.9	0.12	
		준주거지역	1,165,557.0		-	1,165,557.0	0.10	
	상업지역	소계	1,682,031.8		-	1,682,031.8	0.15	
		일반상업지역	1,682,031.8		-	1,682,031.8	0.15	
	공업지역	소계	3,720,117.8	증)	239	3,720,356.8	0.34	
		일반공업지역	2,654,563.8		-	2,654,563.8	0.24	
		준공업지역	1,065,554.0	증)	239	1,065,793.0	0.10	
	녹지지역	소계	307,090,409.1	감)	256	307,090,153.1	27.51	
		보전녹지지역	214,273,715.0	감)	594	214,273,121.0	19.19	
		생산녹지지역	17,584,758.4	증)	859	17,585,617.4	1.58	
		자연녹지지역	75,231,935.7	감)	521	75,231,414.7	6.74	
	용도지역 미지정		1,185,592.0		-	1,185,592.0	0.11	
비도시지역	계		781,106,064.5		-	781,106,064.5	69.96	
	관리지역	소계	140,811,126.3		-	140,811,126.3	12.61	
		계획관리지역	82,239,751.3		-	82,239,751.3	7.37	
		생산관리지역	14,569,196.0		-	14,569,196.0	1.30	
		보전관리지역	44,002,179.0		-	44,002,179.0	3.94	
	농림지역		462,429,653.2		-	462,429,653.2	41.42	
	자연환경보전지역		177,865,285.0		-	177,865,285.0	15.93	

주1)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주2) 기정 : 춘천시 고시 제2024-319호(2024.06.07.)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투자선도지구 내			815,964	감) 277	815,687	100	
도시지역	주거지역	소계	225,646	증) 17	225,663	27.7	•경계분할측량 증)147㎡ •민원 토지 제척 감)424㎡
		제1종일반주거지역	41,937	증) 17	41,954	5.2	
		제2종일반주거지역	89,604	-	89,604	11	
		준주거지역	94,105	-	94,105	11.5	
	공업지역	소계	460,979	증) 239	461,218	56.5	
		준공업지역	460,979	증) 239	461,218	56.5	
	녹지지역	소계	129,339	감) 533	128,806	15.8	
		보전녹지지역	0	-	0	0	
		생산녹지지역	1,810	-	1,810	0.2	
		자연녹지지역	127,529	감) 533	126,996	15.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투자선도지구 외			-	증) 277	-	-	•경계분할측량 감)147㎡ •민원 토지 제척 증)424㎡
도시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감) 594	-	-	
		생산녹지지역	-	증) 859	-	-	
		자연녹지지역	-	증) 12	-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춘천시 동면 지내리·장학리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17㎡)
	-	준공업지역	239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383㎡) •민원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144㎡)
	-	자연녹지지역	-533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253㎡) •민원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280㎡)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815,964	
변경	1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815,68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1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815,964	-
변경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815,687	• 강원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명 변경 • 경계 분할 측량 및 민원 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① 도로계획(총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43	9,424	183,381	6	2,022	41,847	19	2,654	36,038	18	4,748	105,496	
	변경	43	9,424	183,379	6	2,022	41,847	19	2,654	36,038	18	4,748	105,494	
대로	기정	2	3,171	97,800	1	556	19,276	-	-	-	1	2,615	78,524	
	변경	2	3,171	97,803	1	556	19,276	-	-	-	1	2,615	78,527	
중로	기정	21	3,975	63,250	2	484	10,465	8	1,600	27,445	11	1,891	25,321	
	정정	21	3,975	63,231	2	484	10,465	8	1,600	27,445	11	1,891	25,321	면적 합계 오류 정정
	변경	21	3,975	63,226	2	484	10,465	8	1,600	27,445	11	1,891	25,316	
소로	기정	20	2,278	22,350	3	982	12,106	11	1,054	8,593	6	242	1,651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	주간선	18,455 (556)	팔미리 5호광장	천전리 중1-61	일반도로	-	강고제99-166호 (1999.10.2.)	( ) 구역내 소로1-282(426㎡) 대로3-23(1,566㎡) 소로3-790(189㎡)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23	28	보조간선	2,615	장학리 402-7	중로2-140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하천6(2,516㎡) 대로1-4(1,566㎡) 중복결정
변경	대로	3	23	28	보조간선	2,615	장학리 402-7	중로2-140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1	119	22	집산도로	337	대로3-23	소로1-282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1	120	20	집산도로	147	대로3-23	경관녹지13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140	17.5	보조간선	86	지내리 2-52	대로3-23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141	17	집산도로	781	대로3-23	중로1-120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142	17	집산도로	190	대로3-23	중로2-141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선	2,144 (131)	감정리 대3-13	대로3-23	일반도로	-	춘고제2000-30호 (2000.5.24.)	( ) 구역내
기정	중로	2	143	17	집산도로	118	대로3-23	지내리 811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144	17	집산도로	86	대로3-23	지내리 786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145	17	집산도로	75	대로3-23	소로1-281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2	146	16	집산도로	39	대로3-23	소로2-767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02	14	집산도로	18	대로3-23	지내리 773-1	일반도로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변경	중로	3	102	14	집산도로	18	대로3-23	지내리 773-1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3	13	집산도로	150	대로3-23	변전소7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4	13	국지도로	269	중로1-119	소로1-282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5	13	국지도로	128	중로1-119	중로3-108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6	13	국지도로	107	중로3-107	중로3-105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7	13	국지도로	733	중로1-119	중로2-145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8	13	국지도로	189	중로3-107	소로1-282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09	13	국지도로	30	중로2-145	중로3-110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10	13	국지도로	195	중로3-112	중로2-146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11	13	국지도로	61	중로3-110	소로1-283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중로	3	112	13	특수도로	11	중로3-110	경관녹지2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1	270	11	보조간선	1,164	장학리 광장23호	대로3-23	일반도로	-	춘고제2000-30호 (2000.5.24.)	
기정	소로	1	280	11	보조간선	578	소로1-282	소로1-281	일반도로	-	춘고제2000-30호 (2000.5.24.)	구역 외
기정	소로	1	281	11.25	국지도로	40	중로2-145	소로1-280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82	11	국지도로	926	중로1-120	소로1-280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하천6(1,257㎡) 대로1-4(426㎡)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283	10	특수도로	16	중로3-111	경관녹지2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3	8	국지도로	121	중로3-107	중로3-107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4	8	국지도로	124	중로3-110	중로3-111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5	8	국지도로	45	중로3-110	소로2-764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6	8	국지도로	232	중로3-111	중로2-146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7	8	국지도로	36	중로2-146	소로2-766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8	8	국지도로	45	소로2-766	소로2-766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69	8	특수도로	119	중로3-104	연결녹지1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70	8	특수도로	72	중로1-119	연결녹지1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71	8	특수도로	123	중로1-119	중로3-108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72	8	특수도로	30	중로3-105	소로2-771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2	773	8	특수도로	107	중로3-105	중로3-107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3	789	4	국지도로	27	대로3-23	지내리 21-1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3	790	5	국지도로	98	중로2-143	지내리 865-4	일반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대로1-4(189㎡) 중복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91	6	특수도로	49	중로1-119	중로3-106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3	792	6	특수도로	35	중로3-108	소로2-773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3	793	6	특수도로	16	중로3-110	소로2-764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소로	3	794	5	특수도로	17	대로3-23	중로3-110	보행자도로	-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③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23	대로3-23	• 면적 변경 - 78,524㎡ → 78,527㎡ 증) 3㎡	• 경계 분할 측량 편차 면적 (증)147㎡) 및 민원 토지 제척 (감)144㎡)에 따른 면적 변경
중로3-102	중로3-102	• 면적 변경 - 383㎡ → 378㎡ 감) 5㎡	• 민원 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없음)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9,619	-	
소 계					5,071		
기정	116	공원	어린이공원	동면 지내리 763 일원	5,07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소 계					9,610		
기정	51	공원	소공원	동면 지내리 770 일원	4,839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52	공원	소공원	동면 지내리 826 일원	3,297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53	공원	소공원	동면 지내리 2-50 일원	1,47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소 계					1,260		
기정	6	공원	문화공원	동면 지내리 797 일원	1,260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소 계					3,678		
기정	7	공원	수변공원	동면 지내리 862 일원	3,678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2) 녹지 (변경)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94,517	-	
소 계					52,031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면 장학리 산1-5 일원	2,12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동면 장학리 974-5 일원	2,49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691-7 일원	2,223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674-20 일원	670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674-21 일원	2,07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680-5 일원	1,978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동면 장학리 402-9 일원	36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산73-4 일원	7,26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변경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산73-4 일원	6,989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산72-10 일원	2,328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807-15 일원	1,752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935-10 일원	1,513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2-50 일원	320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2-50 일원	1,695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2-50 일원	4,258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산11-1 일원	15,85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동면 지내리 산3-5 일원	5,398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소 계					40,888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동면 장학리 402-6 일원	35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750 일원	1,195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754 일원	1,495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781-1 일원	3,20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802 일원	2,232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878 일원	10,617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782 일원	1,693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803 일원	2,282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810-1 일원	3,19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864-3 일원	3,277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동면 지내리 882-1 일원	11,35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소 계					1,598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동면 지내리 843 일원	66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동면 지내리 824 일원	934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②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8	경관녹지	• 위치 :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73-4 일원 • 면적 : 7,264㎡ → 6,989㎡ (감)275㎡)	• 경계부 민원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①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1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동면 지내리 946 일원	5,950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2) 전기공급설비

①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5,782	-	
기정	6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동면 지내리 810 일원	2,89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신설) 지중 송전선로 (1.3㎞)
기정	7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동면 지내리 산9-3 일원	2,891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공공청사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6	공공청사	-	동면 지내리 822 일원	2,736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1) 하천

①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31	소양강	국가 하천	동면 월곡리 1-2번지 일원	우두동 766-3번지 일원	11,049	213~627	3,866,382 (1,655)	춘천시고시 제2015-189호 (2015.06.26)	
기정	6	지내천	지방 하천	동면 지내리 749번지 일원	동면 감정리 665번지 일원	4,226	35~114	245,942 (21,385)	춘천시고시 제2015-189호 (2015.06.26)	구역 내 면적 중 도로 중복결정 (3,773㎡)

※ ( )는 구역 내 면적

2) 유수지

①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6,153		
기정	13	유수지	저류시설	동면 장학리 965 일원	9,215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기정	14	유수지	저류시설	동면 지내리 944 일원	6,938	강고제2023-178호 (2023.05.26.)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①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12,178	-	12,178	
R	R1	1,318	1	266	
			2	266	
			3	264	
			4	261	
			5	261	
	R2	700	1	233	
			2	233	
			3	234	
	R3	1,797	1	232	
			2	233	
			3	233	
			4	233	
			5	233	
			6	233	
			7	200	
			8	200	
	R4	1,262	1	211	
			2	208	
			3	209	
			4	212	
			5	211	
			6	211	
	R5	1,194	1	238	
			2	240	
			3	241	
			4	240	
			5	235	
	R6	578	1	193	
			2	192	
			3	193	
	R7	748	1	249	
			2	249	
			3	250	
	R8	1,969	1	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2	246	
			3	246	
			4	246	
			5	246	
			6	246	
			7	246	
			8	246	
	R9	776	1	259	
			2	258	
			3	259	
	R10	1,060	1	265	
			2	265	
			3	265	
			4	265	
	R11	776	1	259	
			2	258	
			3	259	

② 공동주택용지 (60㎡~85㎡이하)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63,867	-	63,867	
A	A1	63,867	-	63,867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2,952	-	2,952	
B	B1	1,138	1	1,138	
	B2	1,814	1	907	
			2	907	

2) 상업용지

①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22,348	-	22,348	
C	C1	6,728	1	826	
			2	825	
			3	825	
			4	826	
			5	693	
			6	1,017	
			7	1,017	
			8	699	
	C2	5,602	1	735	
			2	735	
			3	1,013	
			4	1,029	
			5	1,132	
			6	958	
	C3	2,192	1	1,096	
			2	1,096	
	C4	4,207	1	1,044	
			2	1,043	
			3	1,060	
			4	1,060	
	C5	3,619	1	904	
			2	905	
			3	905	
			4	905	

②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3,286	-	3,286	
D	D1	3,286	1	1,058	
			2	1,058	
			3	1,170	

3) 산업시설용지

① 클라우드데이터센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263,634	-	263,634	
F	F1	43,298	-	43,298	
	F2	33,235	-	33,235	
	F3	33,245	-	33,245	
	F4	44,467	-	44,467	
	F5	15,381	-	15,381	
	F6	41,920	-	41,920	특별계획구역(신설)
	F7	52,088	-	52,088	

② 빅데이터특화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14,195	-	14,195	
I	I1	4,014	-	4,014	
	I2	10,181	-	10,181	

③ 클라우드특화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14,329	-	14,329	
H	H1	14,329	-	14,329	

④ 물기업특화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43,142	-	43,142	
J	J1	14,376	-	14,577	
	J2	16,010	-	15,809	
	J3	10,150	-	10,150	
	J4	2,606	-	2,606	

⑤ 스마트팜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25,602	-	25,602	
G	G1	25,602	-	25,602	

3) 도시기반시설용지

①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2,736	-	2,736	
K	K1	2,736	-	2,736	

② 변전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5,782	-	5,782	
O	O1	2,891	-	2,891	
	O2	2,891	-	2,891	

③ 수도공급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5,950	-	5,950	
L	L1	5,950	-	5,950	

④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총계	-	4,934	-	4,934	
P	P1	1,042	-	1,042	
	P2	1,232	-	1,232	
	P3	2,660	-	2,66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① 단독주택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전용		점포겸용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직업훈련소,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주1)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이하(1층 및 지하1층)에 한함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해당블록		R1~R6	R7~R8	R9~R11
건 폐 율		• 60%	• 60%	• 60%
용 적 률		• 180%	• 180%	• 180%
최고층수		• 4층 이하	• 3층 이하	• 4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 3가구 이하	• 3가구 이하	• 3가구 이하

②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5장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용적률		• 150%
		높이(층수)		• 15층 이하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	B1~B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 중 장의사, 거목 내지 러목 제외) – 11. 노유자시설 –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높이(층수)		• 4층 이하

2) 상업용지

①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	C1~C5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마목, 파목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더목, 러목 중 안마시술소 제외) –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제외) – 7. 판매시설 중 다목의 상점 –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14. 업무시설 –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주거시설과 차폐된 경우에 한함) –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 시설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400%
		높이(층수)		• 8층 이하

②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D1	용도	허용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14. 업무시설 ※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4.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마목, 파목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더목, 러목 중 안마시술소 제외) -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제외) -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 시설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400%	
		높이(층수)		• 8층 이하	

3) 산업시설용지

① 클라우드데이터센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1~F4, F6, F7		F5
F	F1~F7	용도	허용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24.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및 이와 비슷한 시설) 및 각 용도의 부대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10.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14. 업무시설 - 각 용도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 70%
		용적률		• 150%		• 250%
		높이(층수)		• 5층 이하		• 5층 이하

② 빅데이터특화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	I1~I2	용도	허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의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부수용도) -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10.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24. 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350%
		높이(층수)		• 8층 이하

③ 클라우드특화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H	H1	용도	허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의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부수용도) -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10.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24. 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350%
		높이(층수)		• 8층 이하

④ 물기업특화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J	J1~J4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의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10.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의 경우 폐수 무배출 업체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350%
		높이(층수)		• 8층 이하

⑤ 스마트팜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	G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2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와 비슷한 시설과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250%
		높이(층수)		• 4층 이하

4) 도시기반시설용지

①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K	K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14.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350%
		높이(층수)		• 6층 이하

② 수도공급설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L	L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아목(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및 부속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전시장, 홍보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200%
		높이(층수)		• 3층 이하

③ 변전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O	O1~O2	용도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68조, 제2호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200%
		높이(층수)		• 3층 이하

④ 주차장

구 분		계 획 내 용	
		P1, P2	P3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에 의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시설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 80%
용 적 률		–	• 400%
최고층수		–	• 6층 이하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단독주택	• 대지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	• 대지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린생활 시설용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전면공지”이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에게 상시 공개되는 공지를 말한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이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조경면적과 별도로 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이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은 용지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 전면공지 도면표시 지역에 한 한다. 1.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단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3.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대지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상업 · 업무 용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전면공지”이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에게 상시 공개되는 공지를 말한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이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조경면적과 별도로 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구분	계획내용
상업 · 업무용지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이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3. “공원연접형 전면공지 : 공원과 접한 전면공지로서 공원기능이 확장되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혹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은 용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 전면공지 도면표시 지역에 한 한다. 1.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2.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단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3.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대지 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데이터센터	• 대지 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스마트팜	• 대지 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클라우드 · 빅데이터특화용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전면공지” 이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에게 상시 공개되는 공지를 말한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이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조경면적과 별도로 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이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3. “공원연접형 전면공지 : 공원과 접한 전면공지로서 공원기능이 확장되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혹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은 용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 전면공지 도면표시 지역에 한 한다. 1.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구분	계획내용
클라우드 · 빅데이터특화용지	2.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단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3.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대지 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물기업 특화용지	• 대지 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기반 시설용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전면공지” 이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에게 상시 공개되는 공지를 말한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이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조경면적과 별도로 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이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3. “공원연접형 전면공지 : 공원과 접한 전면공지로서 공원기능이 확장되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혹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은 용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 전면공지 도면표시 지역에 한 한다. 1.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2.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단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3.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대지내 조경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단독주택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대지 내 차량동선 - 단지 내 도로는 차량 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 단지 계획 시 각각의 주거동으로 연결되는 비상 차량 동선계획을 분명히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춘천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 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1.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을 활성화한다. 2. 지하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주동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근린생활 시설용지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주차면 확보와 이용자 편의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을 통하여 연접 부지간 지하 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주차장 공동 설치시 출구와 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 건축시기 차이로 공동주차 출입구 및 통로의 공동조성이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대지는 개별주차 출입구 및 통로를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향후 연접대지 개발 시 통합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상업 · 업무 용지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상업 · 업무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상업 · 업무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 – 상업 · 업무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데이터센터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데이터센터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계획내용
데이터센터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데이터센터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스마트팜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스마트팜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스마트팜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 – 스마트팜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클라우드· 빅데이터특화용지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클라우드·빅데이터특화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클라우드·빅데이터특화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 – 클라우드·빅데이터특화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계획내용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물기업 특화용지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물기업특화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물기업특화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 – 물기업특화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기반시설용지	• 대지 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 도시기반시설용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시기반시설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색상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 – 도시기반시설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3)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생태면적률</td><td>
•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개발공간의 생태적 기능 지표로 활용됨

< 면적유형별 가중치 >
<table>
<tr><th colspan="3">공간유형</th><th>가중치</th><th>설 명</th><th>사 례</th></tr>
<tr><td>1</td><td>자연지반녹지</td><td>-</td><td>1.0</td><td>·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td><td>·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td></tr>
<tr><td>2</td><td rowspan="2">수공간</td><td>투수기능</td><td>1.0</td><td>·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td><td>·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td></tr>
<tr><td>3</td><td>차수
(투수불가)</td><td>0.7</td><td>·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td><td>·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 처리된 수공간</td></tr>
<tr><td>4</td><td rowspan="3">인공지반녹지</td><td>90㎝≦토심</td><td>0.7</td><td>·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 rowspan="3">·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녹지</td></tr>
<tr><td>5</td><td>40㎝≦토심
<90㎝</td><td>0.6</td><td>· 토심이 40㎝ 이상이고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목지</td></tr>
<tr><td>6</td><td>10㎝≦토심
<40㎝</td><td>0.5</td><td>· 토심이 10㎝ 이상이고 4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r>
<tr><td>7</td><td rowspan="3">옥상녹화</td><td>30㎝≦토심</td><td>0.7</td><td>· 토심이 3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 rowspan="2">·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td></tr>
<tr><td>8</td><td>20㎝≦토심
<30㎝</td><td>0.6</td><td>· 토심이 20㎝ 이상이고 3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r>
<tr><td>9</td><td>10㎝≦토심
<20㎝</td><td>0.5</td><td>· 토심이 10㎝ 이상이고 2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td></tr>
<tr><td>10</td><td>벽면녹화</td><td>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td><td>0.4</td><td>·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 높이까지만 산정</td><td>·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td></tr>
<tr><td>11</td><td colspan="2">투수포장</td><td>0.4 ~</td><td>·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td><td>· 투수성능 및 적용 공법에 따른 가중치 차등</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공간유형</th><th>가중치</th><th>설 명</th><th>사 례</th></tr>
<tr><td></td><td></td><td>0.2</td><td>투과되는 포장면</td><td>부여(「환경영향 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의 상세기준 준용)</td></tr>
<tr><td>12</td><td>저류·침투시설 연계면</td><td>0.2</td><td>·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td><td>·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td></tr>
<tr><td rowspan="2">13</td><td rowspan="2">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td><td>0.3</td><td>· 누수유출고 10㎜ 이상을 처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td><td rowspan="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의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중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모래여과시설과 연계된 도로면</td></tr>
<tr><td>0.2</td><td>· 누수유출고 5㎜ 이상을 처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td></tr>
<tr><td>14</td><td>포장면</td><td>0.0</td><td>·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td><td>·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생태면적률</td><td>•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도시, 산업 및 농공단지, 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3.01, 환경부 고시”에 준하여 본 사업지구의 계획생태면적률을 제시하였고, 본 사업지구의 계획생태면적률은 “특정지역의 개발”의 최소달성 목표인 20% 이상을 적용토록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table>
<tr><th>개발사업 유형</th><th>권장달성목표</th><th>세부내용</th></tr>
<tr><td rowspan="2">1. 도시의 개발</td><td>30 이상</td><td>구도심개발사업</td></tr>
<tr><td>40 이상</td><td>구도심 외의 개발사업</td></tr>
<tr><td>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td><td>20 이상</td><td>-</td></tr>
<tr><td>3. 관광단지의 개발</td><td>60 이상</td><td>-</td></tr>
<tr><td>4. 특정지역의 개발</td><td>20~80 이상</td><td>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td></tr>
<tr><td rowspan="2">5. 체육시설의 설치</td><td>80 이상</td><td>일반 체육시설(실외)</td></tr>
<tr><td>50 이상</td><td>경륜 · 경정시설(실내)</td></tr>
<tr><td rowspan="2">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td><td>50 이상</td><td>매립시설</td></tr>
<tr><td>40 이상</td><td>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td></tr>
</table>
주) 1.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내용, 지역적 특성, 권장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범위내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2023.01

• 생태면적률의 적용기준은 「생태면적률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한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지반녹지 면적} + \Sigma(\text{인공화 지역 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td></tr>
<tr><td>단지계획</td><td>•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간 형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지 내의 불필요한 도로 및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포장면적은 줄이고, 녹지면적을 최대화한다.
• 기존 식재계획 보다 식생밀도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녹지</td><td>• 녹지의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 녹화, 주차장 녹화, 투수포장, 유수공간 조성, 밀집 및 다층식재 등의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도로의 열섬화 예방 및 차량에서 발생되는 탄소 흡수를 위하여 도로에 탄소 흡수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도록 계획한다.
• 단지 내의 미기후 향상을 위하여 녹지와 수공간(인공, 자연형)을 조성하고 건물의 벽면 및 지붕녹화 계획을 수립한다.</td></tr>
<tr><td>바람길</td><td>•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지구 내 모든 건축물은 단지 내 녹지와 물, 오픈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바람길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바람길 주변의 건축물은 바람길에 평행하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간격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 도로의 가로수 수목식재를 통해 여름철 공기 흐름을 유도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계획한다.</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일조	• 건축물의 배치는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자연채광을 최대화하고 그림자, 일조 및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의 난방 및 조명부하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친환경 빗물관리 계획	• “불투수층” 에서 발생되는 표면유출 증가로 인한 도시침수, 수질오염, 지하수 감소 등 왜곡된 물의 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자연상태와 가깝게 물순환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 개발전의 수문상태와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빗물관리 계획(LID 기법)을 수립한다.

4) 저영향개발(LID)에 관한 사항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LID 기술요소
설계기준</td><td>
• “저영향개발 (LID 기법 : Low Impact Development)”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 빗물관리 용량은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에 따라 산정한다.
• 저영향개발(LID) 계획 및 시공을 할 때에는「저영향개발(LID)기법 설계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저영향개발(LID)기법 조경·경관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과「저영향개발(LID)기법 시공 가이드라인(환경부, 2020)」에 따라 기술요소를 적용한다.

< LID 기술요소의 분류 >
<table>
<tr><th>구 분</th><th>LID 기술요소</th><th>기술의 정의</th></tr>
<tr><td rowspan="6">식생형
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td><td>식생수로
(Bioswale,
Vegetated swale)</td><td>·식생으로 덮인 개수로를 통하여 강우유출수를 이송시키는 시설로 식생에 의한 여과, 토양으로 침투 등의 기작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td></tr>
<tr><td>나무여과상자
(Treebox filter)</td><td>·나무 또는 큰 관목이 식재된 박스를 매립하여 식재토양층의 여과 및 나무의 생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말한다.</td></tr>
<tr><td>식생체류지/빗물정원
(Bio retention, Rain garden)</td><td>·식물이 식재된 토양과 모래층 및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강우유출수가 식재토양층 및 지하침투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말한다.</td></tr>
<tr><td>식생여과대
(Vegetated filter strip)</td><td>·식물체를 통한 여과와 토양침투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며 균일하게 경사진 지면에 조밀한 식생을 갖춘 넓은 풀밭으로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td></tr>
<tr><td>식물재배화분
(Planter box)</td><td>·식물이 식재된 토양층과 그 하부를 자갈로 채워 강우유출수를 식재토양층 및 지하로 침투시켜 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td></tr>
<tr><td>옥상녹화
(Green roof)</td><td>·우수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빗물 유출량 및 유출속도를 줄이고 도심 생태환경 조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를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td></tr>
</table>
</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빗물 이용시설	빗물통 (Rain barrel)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LID 기술요소
설계기준</td><td>< LID 기술요소의 분류 >
<table>
<tr><th>구 분</th><th>LID 기술요소</th><th>기술의 정의</th></tr>
<tr><td rowspan="5">침투 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td><td>침투트렌치
(Infiltration trench)</td><td>· 일정 간격 침투집수정(전처리시설) 사이에
쇄석으로 둘러쌓인 유공관을 매설하고
침투집수정에서 유공관으로 유입된 빗물이 쇄석층을
통과하여 측면 및 저면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을
말한다.</td></tr>
<tr><td>침투도랑
(Infiltration ditch)</td><td>· 돌로 채워진 형태의 도랑으로 강우시 유출수를
담아두고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도랑을 말한다.</td></tr>
<tr><td>침투측구
(Infiltration
channel)</td><td>· 형상은 U형측구와 비슷하며 측면이나 저면부의
유공 또는 다공성으로 주변을 쇄석으로 충진하여
강우유출수를 지층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td></tr>
<tr><td>침투통
(Infiltration
chamber)</td><td>·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침투빗물받이나
침투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다.</td></tr>
<tr><td>투수성포장
(Porous pavement)</td><td>· 전면 투수포장과 부분 투수포장으로 구분되며,
전면 투수포장은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 다짐하여 조성한 자연골재 투수포장이나
투수소재를 이용해 포장면 전체를 투수가 가능하게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td></tr>
</table></td></tr>
<tr><td>빗물관리 목표량 및
대상용지</td><td>•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지구의 빗물관리 목표량은 다음과 같으며, 토지이용계획별로 충족되도록 한다.
• 단, 단독주택 및 부지면적 1천㎡미만 시설은 빗물관리 목표량이 충족되도록 권장한다.
• 빗물관리 목표량은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용지는 제외한다.
– 유수지(영구저류지) 등 시설 자체가 저류기능을 하거나, 오수중계펌프장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
– 주유소(액화 포함), 변전소(전기공급시설 등), 열공급시설, 배수지(가압장 등), 오수중계펌프장 등 공급처리시설

<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량 >
<table>
<tr><th colspan="2">용지구분</th><th>빗물관리 목표량(㎜)</th></tr>
<tr><td colspan="2">단독주택</td><td>9.5</td></tr>
<tr><td colspan="2">공동주택</td><td>15.4</td></tr>
<tr><td colspan="2">상업 · 업무</td><td>11.6</td></tr>
<tr><td colspan="2">산업지원시설</td><td>18.9</td></tr>
<tr><td colspan="2">공공청사</td><td>18.9</td></tr>
<tr><td colspan="2">공원 · 녹지</td><td>7.0</td></tr>
<tr><td rowspan="2">도로</td><td>대로, 중로</td><td>20.1</td></tr>
<tr><td>소로(단독택지)</td><td>11.6</td></tr>
</table></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LID 기술요소 적용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옥상 또는 지붕 빗물은 우수관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조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조경면적은 불투수면적(지붕, 주차장 등)의 최소 5%이상이 되도록 권장한다. • 단독주택 지상부 조경의 높이는 불투수면적보다 낮게 조성하여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다.
LID 기술요소 적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빗물정원, 침투도랑, 식생수로 등 다양한 LID기술요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계획에서 생태면적률을 고려한 LID기술요소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 지상공간 중 보도는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등 인공지반에 식생형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근린상가 등 저층의 건축물 상부는 빗물저류와 도시 열섬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상 빗물을 차집 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필요시 조경용수, 분수, 실개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LID 기술요소 적용 (상업 · 업무 · 도시지원 시설용지)	• 유동인구가 많고 불투수율이 높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침투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옥상녹화를 계획한다. • 상업 · 업무용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붕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옥상녹화를 통해 빗물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옥상녹화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빗물통을 설치해 저류시킬 수 있으며, 빗물통을 월류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한다. •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보행환경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수성 포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 건폐율이 높아 부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많지 않고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지표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ID 기술요소 적용 (공공시설 및 산업지원 시설용지)	• 도로, 보도의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하여 LID기술요소의 분산배치로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식생형 시설과 침투시설을 계획한다. • 건축물 옥상은 빗물 저류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옥상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을 이유로 옥상개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산업지원시설은 건물옥상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지표면으로 유도하여 저류 · 침투될 수 있도록 하여 빗물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 산업지원시설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을 위한 식생형시설을 적극도입하도록 한다.

구분	계획내용
LID 기술요소 적용 (공원 및 녹지)	• 공원부문의 LID기술요소 적용은 공원 계획 및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LID기술요소 적용시 공원 설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원 내 계획된 주차장, 건물, 각 조경 시설물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수목식재와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수목 생육여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 LID기술요소 등의 저영향개발 시설은 동선의 결절부와 같은 사람의 이용이 많은 곳에 조경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LID기술요소가 적용된 완충녹지의 경우 녹지변을 주변부보다 낮게 조성하여, 녹지공간으로 불투수면 및 인접공간에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공원과 외부공간의 경계부에는 빗물 및 토사유출이 저감되도록 조성한다.
LID 기술요소 적용 (도로, 주차장용지)	• 보도,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하중이 크지 않은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투수성 포장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할 수 있다. • 도로에서 유출된 빗물은 가급적 주변 녹지대로 유입시켜 빗물의 침투를 유도하되 구배 등으로 인해 곤란할 경우 침투시설로 유입시킨다. • 도로의 폭원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가급적 보도 식수대를 활용하되 곤란할 경우 침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 공공기반시설은 도로면의 불투수층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초기 우수는 가급적 발생 근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식수대 활용 가능 구간은 단면 개량을 통한 강우 침투 확대, 여과를 통한 지하수 함양, 수질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차도의 측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 우수처리 및 침투를 유도한다.

5) 수열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적용범위</td><td>• 본 규정은 수열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및「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중 “수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등에 따른다</td></tr>
<tr><td>수열공급시설의 설치</td><td>• 수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수열 주관로(소양강댐-소양정수정 원수관에서 분기)와 통합운영센터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필지 경계선에서 필지내로 5m 까지 수열관로를 설치하고, 필지 내 수열관로는 수분양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시행자는 수열공급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센터의 기계 및 전기, 자동제어시설을 설치하며, 수분양자는 필지별로 수열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운영센터와 호환되는 자동제어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분양자는 수열공급시설의 원수를 이용하여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 순환펌프, 자동스트레이너와 기타 수열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연계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열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로 연결점(Tie-In Point)을 기준으로 각 수열시설 설치자가 실시한다. (Tie-in Point는 분양자 필지 내 5m - 설치 주체가 구분되는 지점을 말한다.)

<필지별 연결점 위치(Tie-in Point)>
<table>
<tr><th colspan="3">필지명</th><th>연결점 좌표</th><th colspan="2">필지명</th><th>연결점 좌표</th></tr>
<tr><td rowspan="8">데이터센터</td><td>F4</td><td>DC1</td><td>X-269117.8432,
Y-592021.3881</td><td>G1</td><td>스마트팜</td><td>X-268395.6827,
Y-591764.5875</td></tr>
<tr><td>F3</td><td>DC2</td><td>X-269092.3423,
Y-592005.3716</td><td>I1</td><td>빅데이터 특화1</td><td>X-268039.4992,
Y-591935.5363</td></tr>
<tr><td>F2</td><td>DC3</td><td>X-268708.9783,
Y-591818.8880</td><td>I2</td><td>빅데이터 특화2</td><td>X-267959.4605,
Y-591887.9798</td></tr>
<tr><td>F6</td><td>DC4</td><td>X-268842.7736,
Y-591777.7752</td><td>H1</td><td>클라우드특화</td><td>X-267977.2834,
Y-591692.0598</td></tr>
<tr><td>F7</td><td>DC5</td><td>X-268858.8955,
Y-591655.0757</td><td>J4</td><td>물기업특화1</td><td>X-267981.9408,
Y-591613.2677</td></tr>
<tr><td>F5</td><td>DC6</td><td>X-268813.5388,
Y-591790.5236</td><td>J3</td><td>물기업특화2</td><td>X-267956.2115,
Y-591598.0742</td></tr>
<tr><td>F1</td><td>DC7</td><td>X-268256.0327,
Y-591710.7682</td><td>J2</td><td>물기업특화3</td><td>X-267734.2229,
Y-591598.2363</td></tr>
<tr><td colspan="4"></td><td>J1</td><td>물기업특화4</td><td>X-267707.7773,
Y-591590.7771</td></tr>
</table>
</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수열공급시설 설치 및 운영	• 수열 원수는 수열에너지 사용 후 소양정수장을 통해 춘천시의 상수로 공급되므로 사고에 의한 원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수와 열교환을 하는 1차 열교환기는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원수를 사용하여야 한다.(물대물 직접 열교환 및 물을 냉수로 이용하는 냉동기, H/P 적용시) • 브라인을 사용하는 냉동기 또는 H/P 적용시 열교환기 내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단부에 물대물 열교환을 위한 1차 열교환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열교환기 문제로 인한 원수와 섞임 가능성이 절대 없어야 한다. • 열교환기 또는 원수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비의 세정에 약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단체의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약품사용 전 통합관리센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순환펌프는 필지내로 연결되는 수열배관(공급, 환수)과 시설 내 설치되는 설비(자동스트레이너, 열교환기, 연결배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손실수두를 감안하여 인입압력과 동일하게 손실 보상 후 환수시켜야 한다. • 수분양자는 사업시행자가 수열공급시설 전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자동제어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원수의 유량, 온도, 압력, 탁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입 및 환수배관에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수 순환의 자동밸브 개도상태, 분양자 측 수열설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통합운영센터에 관련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통합운영센터는 분양자 측 순환펌프의 운전상태를 감시·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평시 순환펌프의 운전 및 제어권을 가지고 전체 수열클러스터에 수열을 공급한다.(일부 필지로 인해 전체 수열 클러스터에서의 물 순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권 필요) 다만, 비상 상황 발생시는 순환펌프의 운전 권한을 문제가 발생된 해당 필지의 분양자가 가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 세부기준	• 수분양자는 냉방에너지로 반드시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기계설비로 자동스트레이너(1㎜ 이하), 열교환기, 순환펌프, 연계배관(공급 및 환수관로), 냉방시설 연계 배관 등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열 원수 사용량은 20MW 기준 여름철(겨울철을 제외한) 약 777㎥/hr, 겨울철(12, 1, 2월) 약 1,092㎥/hr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 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량을 확정하여야 한다.(용지별 수열공급량 기준 참조) 또한, 매해 연초 통합운영센터와 블록별 사용량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스마트팜 및 특화용지 세부기준	• 스마트팜 용지, 특화용지(빅데이터 특화, 클라우드 특화, 물기업 특화)용지의 수분양자는 냉/난방에너지로 수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기계설비로 자동스트레이너(1mm 이하), 열교환기, H/P(히트펌프), 순환펌프, 연계배관(공급 및 환수관로), 냉방시설 연계 배관 등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열 원수 사용량은 입주 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량을 확정하여야 하며, 매해 연초 통합운영센터와 블록별 사용량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용지별 수열공급량 기준</td><td>
• 필지별 수열공급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블록별 수열공급량은 모든 필지에서 수열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유량이므로 일부 필지에서 수열에너지를 미사용 시 수열 클러스터 전체 필지별 이용량이 급변동되므로 입주 시 통합운영센터와 협의된 사용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입주시 수분양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열에너지 이용이 곤란한 경우 통합운영센터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수열에너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최소 값(여름철)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사용량 (㎥/hr)</th><th colspan="2">구 분</th><th>사용량 (㎥/hr)</th></tr>
<tr><td rowspan="8">데이터센터</td><td>F4</td><td>DC1(600A)</td><td>777</td><td>G1</td><td>스마트팜(500A)</td><td>154</td></tr>
<tr><td>F3</td><td>DC2(800A)</td><td>1,555</td><td>I1</td><td>빅데이터 특화1(400A)</td><td>351</td></tr>
<tr><td>F2</td><td>DC3(800A)</td><td>1,555</td><td>I2</td><td>빅데이터 특화2(250A)</td><td>138</td></tr>
<tr><td>F6</td><td>DC4(800A)</td><td>1,555</td><td>H1</td><td>클라우드 특화(500A)</td><td>494</td></tr>
<tr><td>F7</td><td>DC5(800A)</td><td>1,555</td><td>J4</td><td>물기업 특화1(100A)</td><td>21</td></tr>
<tr><td>F5</td><td>DC6(600A)</td><td>777</td><td>J3</td><td>물기업 특화2(200A)</td><td>83</td></tr>
<tr><td>F1</td><td>DC7(600A)</td><td>777</td><td>J2</td><td>물기업 특화3(250A)</td><td>130</td></tr>
<tr><td colspan="4"></td><td>J1</td><td>물기업 특화4(250A)</td><td>119</td></tr>
</table>
- 최대 값(겨울철)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사용량 (㎥/hr)</th><th colspan="2">구 분</th><th>사용량 (㎥/hr)</th></tr>
<tr><td rowspan="8">데이터센터</td><td>F4</td><td>DC1(600A)</td><td>1,092</td><td>G1</td><td>스마트팜(500A)</td><td>476</td></tr>
<tr><td>F3</td><td>DC2(800A)</td><td>2,185</td><td>I1</td><td>빅데이터 특화1(400A)</td><td>393</td></tr>
<tr><td>F2</td><td>DC3(800A)</td><td>2,185</td><td>I2</td><td>빅데이터 특화2(250A)</td><td>155</td></tr>
<tr><td>F6</td><td>DC4(800A)</td><td>2,185</td><td>H1</td><td>클라우드 특화(500A)</td><td>554</td></tr>
<tr><td>F7</td><td>DC5(800A)</td><td>2,185</td><td>J4</td><td>물기업 특화1(100A)</td><td>24</td></tr>
<tr><td>F5</td><td>DC6(600A)</td><td>1,092</td><td>J3</td><td>물기업 특화2(200A)</td><td>93</td></tr>
<tr><td>F1</td><td>DC7(600A)</td><td>1,092</td><td>J2</td><td>물기업 특화3(250A)</td><td>145</td></tr>
<tr><td colspan="4"></td><td>J1</td><td>물기업 특화4(250A)</td><td>134</td></tr>
</table>
</td></tr>
</table>

6)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

① 건축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단독주택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기정 단독주택과 맥락성 있는 단지경관을 형성하도록 디자인한다. – 따뜻한 색감이나 자연재질(자연유사재질) 소재 적용 – 지붕은 편경사를 포함함 경사지붕 도입 권장 • 점포 조성 시, 인접한 점포와 연속성을 갖도록 입면을 계획한다. • 1층 점포 입지 시 차양, 테라스, 조형성 있는 옥외광고물 등을 도입하여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스관, 실외기 등 설비시설은 외부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입면과 유사한 재질로 차폐한다. • 단독주택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조 단독주택을 따른다
공동주택	• 소양강변을 따라 거대한 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동의 타입을 계획한다. • 동일한 형태의 주동이 늘어서지 않도록 벽면 돌출이나 발코니 변화 등의 입체적인 형태 도입, 색채 변화(패턴 · 입면 구성) 등을 통하여 입면구성을 다양화한다. • 과도한 상층부 디자인이나 장식 요소는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로 상층부 디자인을 계획한다. • 상업용지 일대에서 단독주택단지 및 순환대로 방향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소양강으로의 통경축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을 형성한다. • 공동주택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조 공동주택을 따른다
상업·업무시설	• 소양강변, 기정 주거지변으로 낮은층을 배치한다. •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기단부를 갖춘 형태로 계획하고, 기단부는 3층 이하로 조성한다. • 기단부 조성 시, 기단상층부는 개방된 옥상정원이나 식재공간을 도입한 테라스 등 휴식 · 녹지 공간으로 활용 권장 • 저층부는 개방적 구조의 가로대응형태로 조성하거나 테라스 등과 같은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 보행자도로에 면한 상업용지, 주차건축물은 특화된 보행몰(mall)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을 계획하고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건축물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입면을 분할한다. • 상업·업무시설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6조 상업·업무시설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	•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인접 건축물과 건축, 건축물의 최고 높이 및 층높이, 마감재료 등을 고려하여 맥락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 건축물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입면을 형성한다. • 근린생활시설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7조 근린생활시설을 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건축물 형태와 배치를 계획한다. -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동을 분리하여 분산배치하거나 입체적인 분절을 통해 위압감 완화 - 개방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을 위하여 소양강 방향으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건축물 배치 • 첨단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간결하고 세련된 입면 디자인을 도입하고, 기능상 투명소재의 도입이 가능한 건축물은 유리 등의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 상층부 옥상녹화나 입면 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 도로에 면하여 연구시설이나 사무동과 같은 디자인이 양호한 건축물을 배치한다. • 구릉지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조형미 있게 계획한다. • 산지를 배경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다각적인 조망을 검토하여 주·야간 랜드마크적 기능을 강화한다.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8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따른다
클라우드·빅데이터 특화	• 상업·업무시설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입면을 계획한다. • 특화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형미 있는 건축물 형태를 계획한다. • 거대한 입면을 지양하고 입체적으로 분절을 권장한다. • 기단부를 갖춘 형태로 유도하고, 기단부 조성 시 기단상층부는 개방된 옥상정원이나 식재공간을 도입한 테라스 등 휴식·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권장한다. • 클라우드·빅데이터 특화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9조 클라우드·빅데이터 특화를 따른다
스마트팜 및 물기업특화	• 하천과 농지, 기정 마을에 인접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이질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건축물 외관을 계획한다. - 지내천, 남측의 농지와 면한 구간은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건축물 배치 - 주변 환경과 대비되는 위압적인 건축물이 조성되지 않도록 규모를 계획하거나 분산배치 - 자연환경과 이질적인 소재 및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저명도, 저채도의 자연질감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 • 산지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의 전망이 좋은 지점을 중심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 지내천 및 순환대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동서방향의 통경축 확보 • 수변에 면한 구간은 가시성이 높으므로 과도한 입면이나 미관저해시설이 가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물기업특화용지는 순환대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계획하고 옥상녹화를 도입한다. • 스마트팜 및 물기업특화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0조 스마트팜 및 물기업특화를 따른다

구분	계획내용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은 간결한 형태의 조형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과도한 규모 및 형태의 위압감을 이루는 형태는 지양한다. • 중심가로축에서 조망 시 초점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계획한다. • 도로에 면한 가각부는 개방감 있는 형태로 계획하며 전면공지 조성을 권장한다. • 외부공간은 공원과 연속되는 형태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무장애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구분	계획내용
	• 공공건축물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1조 공공건축물을 따른다
변전소	• 건축물과 설비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부를 따라 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하도록 한다. • 수목은 상록수종을 활용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이 노출되는 경우 인접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건축물의 높이, 저층부 높이, 마감재료 등의 요소가 유사성을 갖도록 조성한고 옥상부에는 녹화를 권장한다. • 변전소 건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2조 변전소를 따른다

② 색채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공통지침</td><td>• 자연석재 및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는 색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 건축물 입면에 설치되는 우수홈통, 배관 등은 배경과 동일한 색채로 도색한다.
• 지붕 색채는 동일 블록을 통합 적용하는 것을 원칙, 일관성 있는 부감경관을 연출한다.
• 무채색으로 보여지는 저반사 유리 사용 단. 컬러유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하다.
• 재료 자체색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 시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 변형이 일어나 노후화되기 쉬운 재료를 지양한다.</td></tr>
<tr><td>단독주택</td><td>• 산지 · 하천 등 자연경관과 친근하며, 인접한 기존 주택과 연계성 있는 저채도 난색계열로 차분하고 포근한 단독주택 이미지를 연출한다.
<table>
<tr><th>구 분</th><th>주조색</th><th>보조색</th><th>지붕색</th></tr>
<tr><td>색상</td><td>YR~Y</td><td>YR~Y</td><td>YR~Y</td></tr>
<tr><td>명도</td><td>5이상~8이하</td><td>5이상~7이하</td><td>4~6이하</td></tr>
<tr><td>채도</td><td>3이하</td><td>4이하</td><td>1.5이하</td></tr>
</table>
• 단독주택 색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34조 단독주택 색채계획을 따른다</td></tr>
<tr><td>공동주택</td><td>• 차분하며 자연과 친근한 색채이미지를 연출한다.
• 기단부 마감재와 중층부 입면 색채의 명도 차를 3이하로 권장, 부드러운 배색을 연출한다.
• 중 · 고층부는 고명도, 저층부는 중 · 저명도를 적용하여 안정감 있게 연출한다
<table>
<tr><th>구 분</th><th>주조색</th><th>보조색</th><th>강조색</th><th>지붕색</th></tr>
<tr><td>색상</td><td>YR~Y/N</td><td>YR~Y</td><td>YR~Y/N</td><td>YR~Y</td></tr>
<tr><td>명도</td><td>6~8.5이하</td><td>4~8이하</td><td>3~6이하</td><td>4~6이하</td></tr>
<tr><td>채도</td><td>2이하</td><td>3이하</td><td>6이하</td><td>1.5이하</td></tr>
</table>
• 공동주택 색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35조 공동주택 색채계획을 따른다</td></tr>
<tr><td>상업 · 업무시설</td><td>• 맑고 개성 있는 색채로 주변경관과 친근하며 활동적인 색채이미지를 연출한다.
• 하천주변에 형성된 상업 · 업무 시설로 친근한 색채 경관을 연출한다.</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td><td>
<table>
<tr><th>구 분</th><th>주조색</th><th>보조색</th><th>강조색</th><th>지붕색</th></tr>
<tr><td>색상</td><td>YR~Y/N</td><td>YR~Y/N</td><td>YR~GY</td><td>YR~Y</td></tr>
<tr><td>명도</td><td>5~8.5이하</td><td>4~9이하</td><td>2~6이하</td><td>4~6이하</td></tr>
<tr><td>채도</td><td>2이하</td><td>4이하</td><td>7.5이하</td><td>1.5이하</td></tr>
</table>
• 상업·업무시설 색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상업·업무 색채계획을 따른다
</td></tr>
<tr><td>근린생활시설</td><td>
• 산지 · 하천 등 자연경관과 친근하며, 인접한 단독주택과 연계성 있도록 중명도의 주조색 및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연속성 있는 근린생활시설 경관을 연출한다.
<table>
<tr><th>구 분</th><th>주조색</th><th>보조색</th><th>강조색</th><th>지붕색</th></tr>
<tr><td>색상</td><td>YR~Y</td><td>YR~Y/N</td><td>YR~Y</td><td>YR~Y</td></tr>
<tr><td>명도</td><td>5~8이하</td><td>5~8.5이하</td><td>3~6이하</td><td>4~6이하</td></tr>
<tr><td>채도</td><td>3이하</td><td>4이하</td><td>6이하</td><td>1.5이하</td></tr>
</table>
• 근린생활시설 색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36조 근린생활시설 색채계획을 따른다
</td></tr>
</table>

③ 옥외광고물

구분		계획내용
설치 기준	총 수량	• 1업소 1 간판 • 자세한 사항은 용지별 설치 가능 광고물 확인
	총 수량 제외	• 소형돌출간판 : 1면의 면적 0.36 ㎡이하, 두께 0.2m 이하 1개 • 연립간판 : 면적이 0.36㎡ 이하 • 건물명 간판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 • 창문 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1㎡ 이내
	설치불가	• 옥상간판,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
재질 및 색채	공통	• 양질의 자재로 마감, 구조적 ·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 • 광택 금속재질 및 파나플렉스, 합판, 비닐, 스레트, 5mm 미만의 아크릴, 함석 등 저급재료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 사용 금지
	바탕색 (판, 게시틀, 구조)	•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½ 이내로 사용 (1면의 면적이 3㎡ 이하, 심의 거친 광고물 제외) • 광고물 바탕색은 건축물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는 재질 및 계통 색 (명도차 2이하) 을 사용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 동일 건물 내 광고물 배경색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 형성 • 불필요한 구조가 노출된 경우 건축물 입면 색상과 유사 색상으로 도색하여 시각적 영향 최소화
	글자색	• 업소의 특성,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CI, BI, 그래픽, 픽토그램, 서체 등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포인트 색채를 적용 • 광고판, 게시틀, 건축물 등 배경 색채와 보색대비 금지 • 글자의 강조색은 색상에 구애받지 않으나 다양한 색상을 금하며 가급적 한 가지 색을 권장
형태 및 구조		• 가급적 판류형은 지양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권장 • 벽면이 모두 유리 재질로 된 건물에는 입체형으로 설치 단, 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 설계 또는 심의 시 간판 설치 구조를 반영 • 건축물의 같은 층의 경우 같은 유형의 간판 설치 • 게시틀의 경우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간결한 형태 및 규모로 설치 • 신규 설치되는 건축물의 경우 간판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게시틀 설치를 권장
표기내용		• 서체 및 심볼은 업종, 상호, 브랜드의 특성을 드러내는 픽토그램, 심벌, 주목성 또는 조형적인 서체를 개발하여 활용 • 표기 내용은 주 표기내용과 보조 표기내용으로 구분하되, 주 표기내용은 (상호명, 브랜드명, 상징물, CI, BI) 2개 이내, 보조 표기내용은(지점명,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 1개 이내로 표기 • 메뉴, 가격, 실물사진, 과도한 그래픽은 표기를 금지하며, 여백을 확보하여 시인성을 강화
조명		• 조명색은 2색 이내로 권장하며, 조명기구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구조사용 • 판류형 전체 내부조명을 금하며 문자나 도형 등 제한된 요소에 사용 • 네온 또는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 • 휘도(광원의 밝기)는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
요소별 지침		• 옥외광고물 계획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3조 요소별 지침을 따른다

7) 공공부문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 포장원칙 –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도포장 –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차량소음이 큰 구간의 차도 소름을 최소하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차도 자체 흡음 능력을 지닌 저소음 다공성 포장재(다공성 아스팔트 포장)로 포장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 보도포장 –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부여의 상징문화 및 로고를 포함하여 부여 친수지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보도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 도시의 진입부, 상업지역, 결절부 등의 일정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 자전거 도로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보행자 도로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위치, 규모, 배치형태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용 포장은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노선의 이용 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구간에 관한사항 –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경계부에는 턱이 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 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구분	계획내용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특화가로 등에서는 독자적 포장 재질 및 패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상가시설용지 내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재는 전체적으로 일관적 재료, 색책 등을 사용하여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 일반도로 및 단지내 도로와의 교차 접속부의 험프(hump)구간 포장은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닌 차도용 소형 고압블록 또는 판석 등의 거친 질감의 포장재를 도입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설물 - 각 시설 용지별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쉘터, 벤치, 보행등 휴지통, 공중전화 등을 설치한다.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 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 옥외시설물에 관한 사항 - 안내체계 1.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시설물 배치의 질서성을 높이고 대거점, 중거점, 소거점 등 해당 지점의 배치장소 위계를 분류 각 위계별 안내체계 배치계획을 실시하여 편리한 목적지 도달을 위한 정보제공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로시설물 1.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형태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가능한 한 안내체계와 통합적으로 설계되도록 하고 복합적인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옥외시설물의 디자인 지침은 춘천시 관련 지침 및 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 다양한 연령과 이용형태에 부응하는 장벽 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변을 도입하여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로의 조명 - 가로의 성격에 맞는 야경 연출법을 구상하여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로와 연접한 공간의 성격과 어울릴 수 있는 가로조명을 한다. - 가로변에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알맞게 유도 조정한다.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기준 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한다. - 구역 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면보강 부분을 보행등으로 보완한다.

구분	계획내용
공원에 관한 사항	• 소공원 조성 원칙 - 소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 맞는 시설을 차별화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주 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 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접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공원 내 도입시설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진·출입구 중 입지여건이나 이용 빈도가 타 입구보다 중요시되는 곳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공원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곳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에는 중심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녹지에 관한 사항	• 녹지 조성원칙 -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녹지의 식재는 보도 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 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주거지와 간선도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도록 한다. -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여야한다.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신설)

1) 특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신설	특계	동면 지내리 산5-1일원	• 94,008㎡ (F6 : 41,920, F7 : 52,088)	• 첨단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상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 반영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계	F6, 7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세부계획 및 기타내용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규모, 수용용도 등 나.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 도면 포함) -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다.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 도면(원경·근경 포함) 라.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2)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계	F6, 7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24.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및 이와 비슷한 시설) 및 부속용도
				부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10.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14. 업무시설 - 각 용도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150%
		높이(층수)			• 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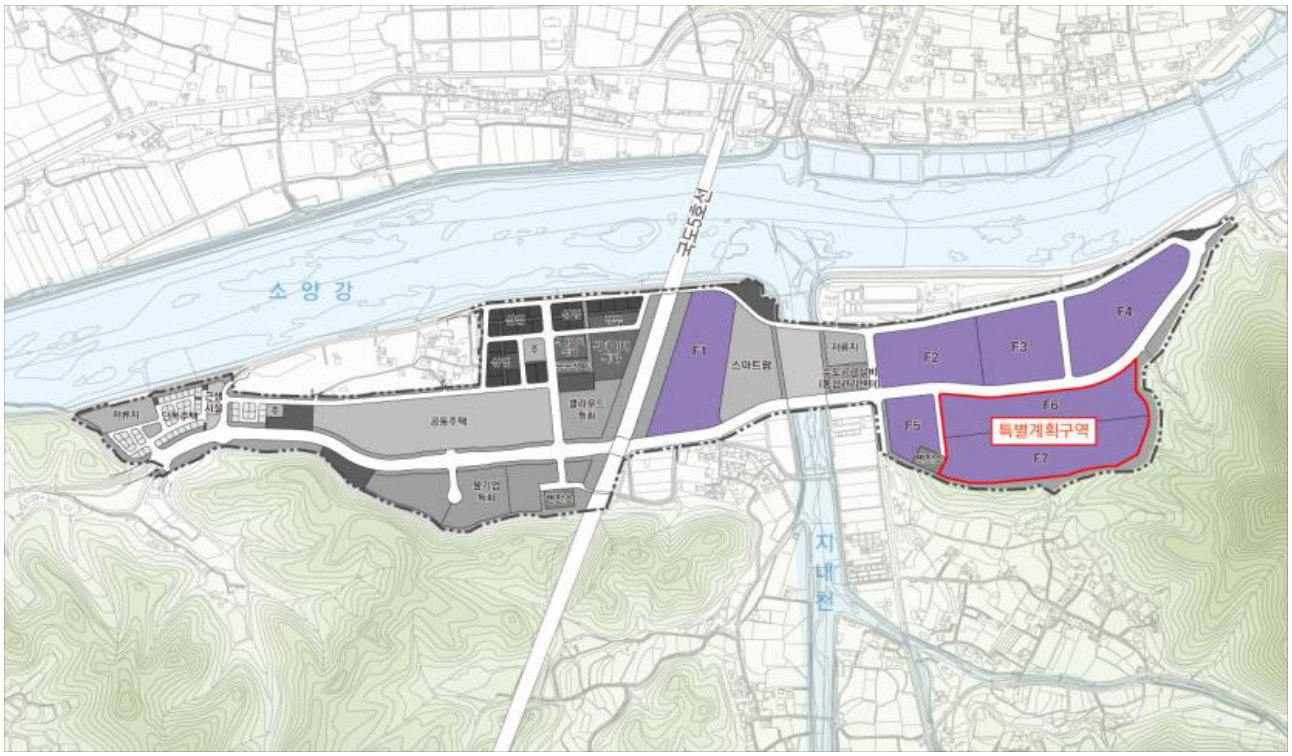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5호

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고시

강원도고시 제2020-461(2020.11.27.)호와 관련하여 추진한 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 죽왕면 향목리 해안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토 공 : L=3,035m (축제 L=1,136m, 보축 L=949m, 호안 L=950m)
      - 호 안 공 : 호안설치 A=18,857㎡(식생블럭 A= 9,468㎡, 전석붙임 A=9,304㎡, 게비온설치 A=85㎡), 밑다짐공(메트릭스게비온 A=13,890㎡)
      - 구조물공 : 14개소(배수시설물 11개소, 보 및 낙차공 재설치 1개소, 징검다리 2개소)
      - 포 장 공 :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9개소, 기타접속도로 1식
      - 교 량 공 : 1개소(금수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5. 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2020. 12. 21. ~ 2023. 12. 2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7. 하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축척 1천 5백분의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강원특별자치도 치수과(033-249-364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리청 : 고성군
   나. 하자보수책임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구분	소 유 자	
							성명	주소
1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61	천	82,512	133	국	국	국토교통부
2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59	도	2,646	587	국	국	국토교통부
3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02-1	임	2,087	86	국	국	국토교통부
4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44	천	201,225	3,652	국	국	국토교통부
5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44-3	임	3,885	3,173	공	공	고성군
6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44-2	임	5,078	343	공	공	고성군
7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49-2	도	30	4	국	국	기획재정부
8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48-1	도	999	751	국	국	기획재정부
9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47-1	천	535	535		국	국토교통부
10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46-2	임	42	42	공	강원도	강원도
11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46-3	대	130	130	공	강원도	강원도
12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47-1	제	410	63	국	국	국토교통부
13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	천	61,493	11,923	국	국	국토교통부
14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6-1	임	195	195	공	강원도	강원도
15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5-1	임	24	24	공	강원도	강원도
16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20-1	천	49,923	34	국	국	국토교통부
17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20	임	53,653	455	국	국	산림청
18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1-5	제	111	13	국	국	국토교통부
19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0-3	천	85	85	국	국	국토교통부
20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1-4	천	13	111	국	국	국토교통부
21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0-2	제	78	78	국	국	국토교통부
22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1-6	전	31	31	공	강원도	강원도
23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0-1	답	315	88	국	국	기획재정부
24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4	제	490	490	국	국	국토교통부
25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14	답	477	477	공	강원도	강원도
26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10	천	451	367	국	국	국토교통부
27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15	답	373	373	공	강원도	강원도
28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5	천	1,392	20	국	국	국토교통부
29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7	천	186	2	국	국	국토교통부
30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1	제	2,217	2,217	국	국	국토교통부
31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337-2	전	834	98	공	공	강원도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구분	소 유 자	
							성명	주소
32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2-1	임	511	511	공	강원도	강원도
3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11	천	1,524	492	국	국	국토교통부
3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16	답	90	90	공	강원도	강원도
3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4	천	15,272	2,592	국	국	국토교통부
3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14	과	16	16	공	강원도	강원도
3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15	과	8	8	공	강원도	강원도
3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7	천	189	23	국	국	국토교통부
39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13	답	136	136	공	강원도	강원도
40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76	임	33,620	337	공	공	고성군
41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29-8	전	46	46	공	강원도	강원도
42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29-8	전	82	82	공	강원도	강원도
4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29-3	제	701	59	국	국	국토교통부
4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69-3	제	2,920	939	국	국	국토교통부
4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0-8	천	103	103	국	국	국토교통부
4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0-6	천	21,299	286	공	공	강원도
4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0-7	천	3,941	1,618	국	국	국토교통부
4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산52-5	임	839	839	공	강원도	강원도
49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1-1	천	1,946	1,608	국	국	국토교통부
50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0-3	천	869	544	국	국	국토교통부
51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0-5	제	183	107	국	국	국토교통부
52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336-4	도	589	74	국	국	국토교통부
5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54-3	천	575	575	국	국	국토교통부
5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54-5	제	359	211	국	국	국토교통부
5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53-3	천	383	383	국	국	국토교통부
5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53-4	제	324	229	국	국	국토교통부
5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3-1	천	1,640	637	국	국	국토교통부
5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5-13	제	280	280	국	국	국토교통부
59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5-2	제	427	164	국	국	국토교통부
60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5-14	임	27	27	공	강원도	강원도
61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3-2	제	228	228	국	국	국토교통부
62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4-2	천	337	65	국	국	국토교통부
6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4-1	제	188	182	국	국	국토교통부
6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9-2	천	635	337	국	국	국토교통부
6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9-3	제	532	281	국	국	국토교통부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구분	소 유 자	
							성명	주소
6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39-4	제	26	26	공	강원도	강원도
6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328	천	112,352	3,879	국	국	국토교통부
6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41-17	제	524	150	공	공	고성군
69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41-16	천	1,436	442	공	공	고성군
70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41-9	천	6,627	772	국	국	국토교통부
71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41-15	제	1,166	489	국	국	국토교통부
72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94-4	천	605	383	국	국	국토교통부
7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94-3	제	400	159	국	국	국토교통부
7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94-1	철	185	74	국	국	국토교통부
7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97-3	제	625	111	국	국	국토교통부
7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298-2	제	374	58	국	국	국토교통부
7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311-3	제	4,304	1,034	국	국	국토교통부
7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316	임	962	1	국	국	재정경제원
79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317	임	456	33	국	국	재정경제원
80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9-1	천	3,071	193	국	국	국토교통부
81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9-3	제	79	72	국	국	국토교통부
82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50-4	제	2,050	400	국	국	국토교통부
8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50-3	천	208	190	국	국	국토교통부
8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9-2	제	26	26	국	국	국토교통부
8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6-2	제	744	301	국	국	국토교통부
8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6-1	천	2,661	788	국	국	국토교통부
8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4-2	도	152	19	국	국	국토교통부
8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3-1	천	2,936	348	국	국	국토교통부
89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3-2	제	479	17	국	국	국토교통부
90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2-1	천	529	165	국	국	국토교통부
91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2-2	제	278	56	국	국	국토교통부
92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1-2	제	30	19	국	국	국토교통부
93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1-1	천	3,871	99	국	국	국토교통부
94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40	천	1,160	318	국	국	국토교통부
95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39-2	제	10	10	국	국	국토교통부
96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39-1	천	1,504	189	국	국	국토교통부
97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39-3	제	2,212	144	국	국	국토교통부
98	고성군 죽왕읍 향목리	132-1	천	2,995	67	국	국	국토교통부
99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	천	23,766	2,912	국	국	국토교통부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구분	소 유 자	
							성명	주소
100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6	제	435	314	국	국	국토교통부
101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7	제	29	28	공	공	강원도
102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2	답	345	43	공	공	강원도
103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5	천	718	243	국	국	국토교통부
104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8	천	493	493	공	공	강원도
105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3	제	355	355	공	공	강원도
106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1	답	148	148	공	공	강원도
107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3-2	답	41	41	공	강원도	강원도
108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3-1	도	38	38	공	공	고성군
109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7	도	228	75	국	국	국토교통부
110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2-1	전	199	101	공	공	고성군
111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2-3	전	5	5	공	강원도	강원도
112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2-5	전	2	2	공	강원도	강원도
113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444-4	제	315	199	국	국	국토교통부
114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산19-1	천	13,987	1,771	국	국	국토교통부
115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23-2	천	42,412	4,625	국	국	국토교통부
116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456	천	10,271	189	국	국	국토교통부
117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산17-1	임	111,621	124	공	공	고성군
118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23-26	답	7	7	공	강원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6호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 ·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28차) 변경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 명 칭 :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8개 시·군)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정선군
- (접경지역 6개 시·군)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거점지역 4개 시·군)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 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변경 없음)

○ 목 적

- 지역의 고유자원을 토대로 하여 향후 10년간의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 인구과소지역 내 체류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매개로 광역관광루트 조성 등 시·군 간 연계 강화
- 국토계획, 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도 거버넌스 구축

○ 비 전 : 약동하는 행복강원

○ 목 표 : 최고의 관광휴양 목적지로 ‘늘 찾고 싶은 곳’, 제도·정책지원을 기반으로 ‘투자하고 싶은 곳’, 남녀노소 누구나 머물며 ‘살고 싶은 곳’

○ 전 략

- 미래 성장동력으로 첨단신산업 육성 및 내륙 발전벨트 조성
- 품격높은 관광·스포츠거점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조성
- 지역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에너지 융·복합산업거점 조성
-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

3. 전략별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없음)

전 략	주요 권역·축	추 진 방 향
(전략1) 미래 성장동력으로 첨단신산업 육성 및 내륙 발전벨트 조성	내륙중심권 + 문화·신산업발전축	○스마트 헬스케어, 수열에너지 등 핵심산업 거점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의 미래 지역성장동력 마련 ○우수한 자연경관 및 관광시설 들과 연계한 다양한 여가문화 자원발굴 및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인구를 타켓으로 하는 개발추진
(전략2) 품격높은 관광·스포츠거점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조성	환동해권 + 북방경제·해양관광축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관광휴양시설을 정비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확충
(전략3) 지역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에너지 융·복합산업거점 조성	고원남부권 + 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고원, 폐광지역, 동강·서강·강원랜드 등 지역특성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계발전방안 및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발전 추진
(전략4)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	접경지역권 + 평화·생태육성축	○접경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생태자원과 산재한 선사,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개발추진

4.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위한 개발권역·성장연계축의 발전방향(변경 없음)

○ 시·군 간 협력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권역별 거점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지역을 4개의 개발권역으로 구분하고, 4개의 성장연계축을 구축

① 내륙중심권 + 문화·신산업발전축 – 전략1 연계

– 자연경관을 이용해 수도권 문화·여가서비스 거점으로 육성,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문화콘켄츠를 관광산업과 융·복합

– 인적자원(혁신·기업도시) 및 산업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거점 육성 및 연관산업 집적 유도

– 첨단청정산업(철원) ~ 문화산업(춘천) ~ 의료산업(원주) 연계 발전

② 환동해안권 + 북방경제·해양관광축 – 전략2 연계

– 설악(산악) ~ 동해안(해안·해양)을 연계한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

– 동계올림픽 중심지역으로 스포츠를 접목한 레저산업육성,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부품소재 및 해양산업거점으로서 위상 구축

– 국제관광(속초), 해양산업(강릉, 동해), 에너지산업(삼척) 연계 개발

– 금강 연계, 에너지 개발 등 북방루트 개척으로 환동해 경제협력의 교두보

③ 고원남부권 + 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 전략3 연계

– 지형적·기후적 특성을 충분히 이용해 특화산업 육성 및 관광산업화

– 에너지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산업(삼척), 국제관광(속초), 해양산업(강릉, 동해) 연계 개발

–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중부권 대표 관광휴양지로 육성

④ 접경지역권 + 평화·생태육성축 – 전략4 연계

- DMZ 등 근현대 역사자원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거점으로 조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에 기반해 다양한 여가콘텐츠 발굴 및 체험관광 활성화
- 신소재(플라즈마) 등 첨단청정산업 육성,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닌 지역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 개발

5. 재원 조달 계획(변경)

○ 2027년까지 지역개발사업 총 (당초) 88개소에 7조 6,177억 원 투입
(변경) 88개소에 7조 6,221억 원 투입

구 분			사업수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국비 (국토부)	지방비	민간
합 계		당초	88	7,617,725	479,433 (240,328)	740,184	6,398,108
		변경	88	7,622,106	479,433 (240,328)	744,565	6,398,108
발전 촉진형	소 계	당초	70	6,588,513	275,924 (102,536)	498,214	5,814,375
		변경	70	6,592,894	275,924 (102,536)	502,595	5,814,375
	기존 사업	당초	35	5,400,254	134,823 –	237,394	5,028,037
		변경	35	5,400,254	134,823 –	237,394	5,028,037
	신규 사업	당초	36	1,188,259	141,101 (102,536)	260,820	786,338
		변경	37	1,192,640	141,101 (102,536)	265,201	786,338
거점 육성형	소 계	당초	18	1,029,212	203,509 137,792	241,970	583,733
		변경	18	1,029,212	203,509 (137,792)	241,970	583,733
	기존 사업	당초	12	767,298	125,277 (102,477)	151,592	490,429
		변경	12	767,298	125,277 (102,477)	151,592	490,429
	신규 사업	당초	6	261,914	78,232 (35,315)	90,378	93,304
		변경	6	261,914	78,232 (35,315)	90,378	93,304

※ 동 계획의 국비지원 규모 및 사업규모 등은 향후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각 소관부처 및 재정당국과 별도협의가 필요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변경 없음)

○ 국내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 및 기업유치 역량 강화

- 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 및 기업유치 역량 강화
-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현장설명회 개최
- 이전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정보네트워크 확대

- 신규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홍보, 외자유치 세일즈 활동

○ 지속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 강원특별자치도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유치
- 관광시설 유치 다변화 및 민자유치를 통한 올림픽 지원시설의 조성 유도

7.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변경)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13개 시·군 (기존 개촉지구 사업 포함)	합계	당초	70건		6,588,513	102,536	173,388.5	498,213.5	5,814,375
		변경	70건		6,592,893	102,535	173,388.5	502,594.5	5,814,375
	기존	당초	33건		5,400,254	-	134,823.5	237,393.5	5,028,037
		변경	33건		5,400,254	-	134,823.5	237,393.5	5,028,037
	신규	당초	37건		1,188,259	102,536	38,565	260,820	786,338
		변경	37건		1,192,639	102,535	38,565	265,201	786,338
성장촉진 지역	합계	당초	44건		2,391,559	102,536	32,999.5	349,669.5	1,906,354
		변경	44건		2,395,939	102,535	32,999.5	354,050.5	1,906,354
태백시	소계	12건			878,305	16,000	19,165	122,011	721,129
	기존 사업	8건			750,185	-	8,000	43,000	699,185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A=4,789,424㎡	596,380	-	8,000	43,000	545,380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A=250,432㎡	23,500	-	-	-	23,500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사업		A=247,132㎡	13,000	-	-	-	13,000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청소년 수련단지 조성사업	A=173,600㎡	19,165	-	-	-	19,165
		용연관광지 조성사업	A=71,012㎡	50,000	-	-	-	50,000
		금천휴양지 조성사업	A=180,880㎡	3,042	-	-	-	3,042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	A=290,000㎡	4,978	-	-	-	4,978
		태백근로자숙소 조성사업	A=33,440㎡	40,120	-	-	-	40,120
	신규 사업	4건	소 계	128,120	16,000	11,165	79,011	21,944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A=429,105㎡	86,944	-	-	65,000	21,944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A=61,652㎡	12,218	-	4,686	7,532	-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	A=72,417㎡	12,958	-	6,479	6,479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도로개설 1.7km(B=10m) 교량2개소 및 제방정비 1km	16,000	16,000	-	-	-
삼척시	소계	당초 7건		308,093	11,750	13,834.5	109,169.5	173,339
		변경 7건		309,273	11,749	13,834.5	110,350.5	173,339
	기존 사업	2건	소 계	275,823	-	13,834.5	88,649.5	173,339
		스위치백리조트 조성사업	A=707,186㎡	73,969	-	3,834.5	3,834.5	66,300
		삼척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A=1,720,426㎡	201,854	-	10,000	84,815	107,039
	신규 사업	당초 5건	소 계	32,270	11,750	-	20,520	-
		변경 5건		33,450	11,749	-	21,701	-
		가곡온천 개발사업	A=16,926㎡	4,400	-	-	4,400	-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	A=13,786㎡	1,100	-	-	1,100	-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갈천~증산간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0.88km(B=8.5~25m)	15,000	4,800	-	10,200	-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 조성사업		L=0.38km, B=6~10m 주차장 A=3,282㎡	1,070	750	-	320	-
		당초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조성사업	보도교 190m(B=5.2m)	10,700	6,200	-	4,500	-
		변경		보도교 190m(B=5.2m) 데크로드 74m	11,880	6,199	-	5,681	
홍천군	소계	6건			177,500	12,293	-	5,207	160,000
	신규 사업	6건		소 계	177,500	12,293	-	5,207	160,000
		농업관광 융·복합 귀농휴양단지 조성사업		A=465,600㎡	80,000	-	-	-	80,000
		대명비발디 체험마을 조성사업		A=85,595㎡	12,000	-	-	-	12,000
		홍천 승마 Complex 조성사업		A=392,171㎡	68,000	-	-	-	68,000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		도로개설 2.5km(B=8m) (교량 2개소 22.2m, 생태통로 1개소)	12,030	9,113	-	2,917	-
		농업관광 융·복합 귀농휴양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로개설 0.398km(B=15m)	3,370	2,360	-	1,010	-
		대명비발디 체험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로개설 0.65km(B=10m)	2,100	820	-	1,280	
횡성군	소계	3건		-	13,884	11,638	-	2,246	-
	신규 사업	3건		소 계	13,884	11,638	-	2,246	-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A=48,829㎡	8,037	6,674	-	1,363	-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 개선 기반조성사업		편측인도 개설 1.3km(B=1.5m)	1,094	688	-	406	-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0.6km, B=15.5m 보도설치 L=0.76km, B=2m	4,753	4,276	-	477	-
영월군	소계	당초	8건		732,066	12,158	-	59,172	660,736
		변경	8건		735,266	12,158	-	62,372	660,736
	기존 사업	3건		소 계	450,240	-	-	-	450,240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A=783,851㎡	167,740	-	-	-	167,740
		하이원 상동테마 (교육 · 힐링)파크 조성사업		A=202,812㎡	52,500	-	-	-	52,500
		영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A=574,000㎡	230,000	-	-	-	230,000
	신규 사업	당초	5건	소 계	281,826	12,158	-	59,172	210,496
		변경	5건		285,026	12,158	-	62,372	210,496
		한옥마을 조성사업		A=245,712㎡	138,496	-	-	-	138,496
		상동광산 개발사업		A=294,634㎡	72,000	-	-	-	72,000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		A=365,429㎡	43,172	-	-	43,172	-
		당초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로개설 1.32km(B=8.0m) 교량 360m	24,000	8,000	-	16,000	-
		변경			27,200	10,000	-	17,200	-
		당초	동강어라연 생태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L=23.2km, B=1.5m 등	4,158	4,158	-	-	-
		변경			4,158	2,158	-	2,000	-
평창군	소계	3건			66,933	10,019	-	3,414	53,500
	기존 사업	1건		소 계	53,500	-	-	-	53,500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		A=293,615㎡	53,500	-	-	-	53,500
	신규	2건		소 계	13,433	10,019	-	3,414	-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사업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도로개설 2.77km(B=7~8m)	7,686	7,636	-	50	-
		평창 아트밸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진입교량(L=0.45km, B=14m), 국도접속구간(L=0.866km, B=12m)	5,747	2,383	-	3,364	-
정선군	소계	4건		199,100	15,000	-	46,450	137,650
	신규 사업	4건	소 계	199,100	15,000	-	46,450	137,650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	A=89,077㎡	140,000	-	-	2,350	137,650
		아리랑 클러스터기반시설 조성사업	교량(L=475m,B=14.8m),접속도로(L=207.36m,B=14m), 상부광장(L=90m,B=33m,A=2,418㎡)	49,500	10,200	-	39,300	-
		군도7호선(사북소2-54호) 접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344m(B=8.5m)	4,800	2,400	-	2,400	-
		군도3호선(정선병원~용탄) 정비사업	도로 확폭 및 기하구조 개선 (L=1.6km,B=8m)	4,800	2,400	-	2,400	-
양양군	소계	1건	-	15,678	13,678	-	2,000	-
	신규 사업	1건	소 계	15,678	13,678	-	2,000	-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	도로개설 3.89km,(B=20m)	15,678	13,678	-	2,000	-
접경지역	합계	16건		411,252	-	56,062	47,390	307,800
춘천시	소계	4건		488,308	-	26,900	12,600	448,808
	기존 사업	1건	소 계	304,000	-	25,400	10,800	267,800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A=784,912㎡	304,000	-	25,400	10,800	267,800
	신규 사업	3건	소 계	184,308	-	1,500	1,800	181,008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A=55,592㎡, L=3.62km, B=10m	55,300	-	-	300	55,000
		삼천동 관광호텔 건립사업	A=50,000㎡	101,008	-	-	-	101,008
		의암호 관광유람선 사업	A=4,566㎡	28,000	-	1,500	1,500	25,000
철원군	소계	9건		459,413	-	97,089	116,944	245,380
	기존 사업	7건	소 계	378,013	-	85,189	87,444	205,380
		직탕리조트 조성사업	A=95,550㎡	130,317	-	10,200	24,220	95,897
		DMZ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A=2,009,548㎡	121,000	-	21,000	20,000	80,000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	A=319,394㎡	65,261	-	28,827	36,434	-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인도교 0.18km(B=3m) 진입도로 0.5km(,B=5m)	6,800	-	5,200	1,600	-
		포천(산정호수) 철원 연결도로 확·포장	L=5.9km, B=12m	13,452	-	10,762	2,690	-
		철원 스파리조트 조성 확장사업	A=285,889㎡	29,683	-	-	200	29,483
		DMZ 생태관광거점 순환로 확·포장	L=4.7km, B=8~12m	11,500	-	9,200	2,300	-
	신규 사업	2건	소 계	81,400	-	11,900	29,500	40,000
		고석정 힐링파크 개발사업	A=239,068㎡	59,600	-	11,000	28,600	20,000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 개발사업	A=40,000㎡	21,800	-	900	900	20,000
화천군	소계	1건		10,000	-	8,000	2,000	-
	신규 사업	1건	소 계	10,000	-	8,000	2,000	-
		화천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	건축물 A=1,400㎡, 휴게공원 A=1,000㎡	10,000	-	8,000	2,000	-
인제군	소계	1건		81,400	-	11,900	29,500	40,000
	신규	1건	소 계	59,600	-	11,000	28,600	20,000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국토부	국토부외		
	사업	지역활력타운 인제부 : 터	활력타운 조성 29,640㎡	50,740		6,000	9,500	35,240
고성군	소계	1건		193,888	-	-	5,000	188,888
	기존 사업	1건	소 계	193,888	-	-	5,000	188,888
		인흥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 · 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A=181,906㎡	193,888	-	-	5,000	188,888
기존 개촉지구	합계	10건		2,994,605	-	2,400	2,500	2,989,705
강릉시	소계	3건		318,721	-	2,400	2,500	313,821
	기존 사업	3건	소 계	318,721	-	2,400	2,500	313,821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	A=112,064㎡	152,541	-	-	-	152,541
		하슬라아트월드 개발사업	A=108,596㎡	47,117	-	-	-	47,117
		등명관광지 개발사업	A=193,660㎡	119,063	-	2,400	2,500	114,163
정선군	소계	7건		2,675,884	-	-	-	2,675,884
	기존 사업	7건	소 계	2,675,884	-	-	-	2,675,884
		도사곡 주거환경개선 사업	A=56,500㎡	10,865	-	-	-	10,865
		강원 카지노 · 리조트 조성사업	A=6,965,556.3㎡	2,292,006	-	-	-	2,292,006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A=1,872㎡	68,479	-	-	-	68,479
		백운밸리 조성사업	A=96,455㎡	58,000	-	-	-	58,000
		화절령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A=55,006㎡	43,679	-	-	-	43,679
		강원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A=83,179㎡	82,855	-	-	-	82,855
		새골 위락단지 조성사업	A=789,226㎡	120,000	-	-	-	120,000

○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변경없음)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외		
8개시·군 (기존 특정지역 사업 포함)	합계	18건		1,029,212	137,792	65,717	241,970	583,733
	기존	12건		711,250	102,477	22,800	145,947	440,026
	신규	6건		261,914	35,315	42,917	90,378	93,304
거점육성 지역	합계	13건		937,012	99,335	44,217	212,027	581,433
원주시	소계			284,400	-	-	28,400	256,000
	기존 사업	1건	소 계	284,400	-	-	28,400	256,000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A=468,787㎡	340,448	-	-	34,045	306,403
강릉시	소계	3건		71,400	37,100	-	34,300	-
	기존 사업	2건	소 계	52,300	38,700		13,600	
		석교온천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연결로 개설	도로개설 2.24km,(B=13m) 연결로 개설 0.44km(B=7.6m)	25,500	20,000	-	5,500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	L=1.8km, B=20m	21,400	-	-	21,400	-
	신규 사업	1건	소계	24,500	17,100	-	7,400	-
		올림픽파크 탐방로 조성사업	A=200,000㎡	24,500	17,100	-	7,400	-
동해시	소계	3건		221,231	14,800	42,917	81,514	82,000
	신규 사업	3건		221,231	14,800	42,917	81,514	82,000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개발사업	건강생명휴양지구 : A=285,093㎡ 복합체험관광지구 : A=934,890㎡	145,529	-	27,101	45,958	72,470
		묵호 등대마을 감성관광지 조성사업	A=484,415㎡	40,182	-	15,316	15,336	9,530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외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강생명 휴양지구 도로확장 L=2.8km, B=8~20m, 복합체험 관광지구도로신설 L=1.4km, B=10~13.5m	35,520	14,800	500	20,220	-
속초시	소계	4건		287,750	44,020	1,300	60,704	181,726
	기존 사업	4건	소계	287,750	44,020	1,300	60,704	181,726
		설악동 재개발사업(지자체)	A=114,688㎡	79,442	24,972	1,300	53,170	-
		설악동 재개발사업(민간)	A=276,007㎡	181,726	-	-	-	181,726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L=1.64km, B=9~15m	17,518	10,911	-	6,607	-
		설악산 연계 관광도로 개설사업	L=1.84km, B=20m	9,064	8,137	-	927	-
정선군	소계	2건		16,183	3,415	-	1,464	11,304
	신규 사업	2건	소계	16,183	3,415	-	1,464	11,304
		참숯힐링랜드 조성사업	A=53,000㎡	11,304	-	-	-	11,304
		삼탄아트밸리 기반시설사업	연결도로 1.5km(B=10m) 공원시설(A=3,300㎡)	4,879	3,415	-	1,464	-
기존 특정지역	합계	5건	-	92,200	38,457	21,500	29,943	2,300
인제군	소계	1건	-	9,000	7,900	-	1,100	-
	기존 사업	1건	소계	9,000	7,900	-	1,100	-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	L=2.22km, B=10~18.5m	9,000	7,900	-	1,100	-
고성군	소계	3건	-	62,000	19,980	21,500	18,220	2,300
	기존	3건	소계	62,000	19,980	21,500	18,220	2,300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국토부	국토부외		
	사업	건봉사 복원사업	242,368㎡	15,800	-	9,500	4,000	2,300
		문암진리 선사유적 공원화사업	67,634㎡	24,000	-	12,000	12,000	-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L=4.02km, B=8m (교량1개소)	22,200	19,980	-	2,220	-
양양군	소계	1건	-	21,200	10,577	-	10,623	-
	기존 사업	1건	소계	21,200	10,577	-	10,623	-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1구간 L=0.37km, B=20m, 2구간 L=3.72km, B=10m	21,200	10,577	-	10,623	-

8. 변경사유

○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 현지여건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 현지여건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동강어라연 생태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 현지여건에 따른 사업비(재원) 변경

9. 관계 서류 및 도면 등 : 실음생략

○ 공람기간 : 2024. 7. 5. ~ 2024. 7. 26.

○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032), 삼척시 관광개발과(☎ 033-570-3089), 영월군 경제과(☎ 033-370-2292), 영월군 기획감사실(☎ 033-370-2250)에서 열람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7호

인제군 용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인제군 용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강 원 득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인제군수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읍 인제로199번길 10

2. 사업 목적 :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을 통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수를 차집하고 적정처리 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위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격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나. 면적 : 5,571.5㎡(영구점용 605.5㎡, 일시점용 4,966㎡)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오수관로 3.86km
   ※ 맨홀펌프장 11개소, 배수설비 39가구 포함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1.20㎢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인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7. 사업시행기간 : 2023 ~ 2025년(공사 : 2024~2025)

8. 기타 설계도서 및 사업관련 관계서류는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033-460-21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일시 점용(㎡)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총계				605.5	4,966.0					
1	북면 용대리	1311-2	도	442	3.70	29.30	-	국(국토교통부)			
2	북면 용대리	1311-1	도	750	7.50	43.10	-	국(건설교통부)			
3	북면 용대리	1302-9	도	69	2.60	12.10	-	국(농수산부)			
4	북면 용대리	1413-1	도	744	3.30	16.40	-	국(건설교통부)			
5	북면 용대리	1415-1	도	268	1.10	7.40	-	국(국토교통부)			
6	북면 용대리	1415	도	208	2.00	9.90	-	국(건설교통부)			
7	북면 용대리	1302-10	구	334	2.00	10.10	-	국(농수산부)			
8	북면 용대리	1347-1	도	328	9.00	49.10	-	국(건설교통부)			
9	북면 용대리	1302-29	구	44	0.70	4.20	-	국(농수산부)			
10	북면 용대리	1346	도	85	2.10	14.00	-	국(건설교통부)			
11	북면 용대리	1346-1	도	1,029	9.00	39.20	-	국(건설교통부)			
12	북면 용대리	1313-4	도	2,271	14.80	125.10	-	국(건설교통부)			
13	북면 용대리	1315-2	도	1,708	5.50	82.20	-	국(건설교통부)			
14	북면 용대리	1781-4	도	391	3.00	44.70	-	국(건설교통부)			
15	북면 용대리	1780-1	도	159	3.30	47.20	-	국(국토해양부)			
16	북면 용대리	1780-2	도	153	2.00	24.60	-	인제군			
17	북면 용대리	1780	도	170	2.60	33.10	-	인제군			
18	북면 용대리	1779	도	2,401	2.10	20.50	-	인제군			
19	북면 용대리	1109-16	도	870	10.00	77.70	-	국(건설교통부)			
20	북면 용대리	1109-15	도	242	4.70	29.60	-	국(건설교통부)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21	북면 용대리	1109-14	도	343	5.50	32.90	-	국(건설교통부)			
22	북면 용대리	1109	도	329	6.10	36.80	-	국(건설교통부)			
23	북면 용대리	1109-18	도	177	1.50	9.20	-	국(건설교통부)			
24	북면 용대리	1108-26	도	237	7.00	43.00	-	국(건설교통부)			
25	북면 용대리	1108-19	도	174	2.10	12.50	-	국(건설교통부)			
26	북면 용대리	1108-18	도	294	11.00	54.60	-	국(건설교통부)			
27	북면 용대리	1108-17	도	428	13.90	116.90	-	국(건설교통부)			
28	북면 용대리	1108-3	도	754	17.10	124.2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30	최영규			
29	북면 용대리	1104-1	도	7,960	20.70	132.00	-	국(건설교통부)			
30	북면 용대리	1108-21	도	365	2.30	35.40	-	국(건설교통부)			
31	북면 용대리	1108-22	도	48	3.50	22.70	-	국(건설교통부)			
32	북면 용대리	1107-6	도	141	6.20	43.20	-	국(건설교통부)			
33	북면 용대리	1107-7	도	128	6.50	56.60	-	국(건설교통부)			
34	북면 용대리	1107-1	도	793	-	2.80	-	국(국토교통부)			
35	북면 용대리	1107-8	도	126	5.10	59.60	-	국(건설교통부)			
36	북면 용대리	1105-1	도	366	1.50	46.60	-	국(국토교통부)			
37	북면 용대리	1105-2	도	240	5.40	60.10	-	국(건설교통부)			
38	북면 용대리	1107-3	창	2,872	4.20	35.8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963	백담마을영농조합법인			
39	북면 용대리	1106-3	도	270	1.80	14.20	-	국(건설교통부)			
40	북면 용대리	1106-1	도	194	7.30	75.50	-	국(국토교통부)			
41	북면 용대리	1028-2	도	53	0.80	5.20	-	국(국토교통부)			
42	북면	1715-2	천	2,723	7.70	81.80	-	국(국토교통부)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용대리										
43	북면 용대리	1027-1	도	72	3.10	18.30	-	국(국토교통부)			
44	북면 용대리	1025-5	도	1,872	35.70	369.40	-	국(국토교통부)			
45	북면 용대리	1028-1	대	611	4.30	31.8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28-1	최성규			
46	북면 용대리	1104	도	3,128	2.20	10.20	-	국(건설교통부)			
47	북면 용대리	1715-13	천	16,514	0.20	-	-	국(국토교통부)			
48	북면 용대리	1105-3	대	992	1.80	13.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28-1	최성규			
49	북면 용대리	1105	대	660	2.40	25.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28-1	최성규			
50	북면 용대리	1105-6	대	110	0.10	2.8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28-1	최성규			
51	북면 용대리	1105-4	창	790	1.40	10.8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28-1	최성규			
52	북면 용대리	1028-20	임	354	9.80	80.30	강원도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999	최영수			
53	북면 용대리	1028-12	임	1,027	-	0.70	강원도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999	최영수			
54	북면 용대리	1028-22	임	26	1.40	10.00	-	인제군			
55	북면 용대리	1028-8	대	403	6.20	51.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247	이봉애			
56	북면 용대리	1028-21	임	33	1.20	13.80	-	인제군			
57	북면 용대리	1028-15	창	429	2.60	23.30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75-16 우석그랜드캐슬에이-102	김복수			
58	북면 용대리	1715-8	천	433,515	7.30	-	-	국(환경부)			
59	북면 용대리	1030-4	도	272	0.60	-	-	인제군			
60	북면	1099-24	구	765	2.90	19.00	-	국(농수산부)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용대리										
61	북면 용대리	1099-34	도	168	1.00	19.20	-	국(농수산부)			
62	북면 용대리	1102-18	도	114	1.30	24.40	-	인제군			
63	북면 용대리	1102-19	도	96	1.20	22.00	-	인제군			
64	북면 용대리	1099-33	도	106	0.50	9.90	-	국(농수산부)			
65	북면 용대리	1101-15	도	178	0.80	14.50	-	국			
66	북면 용대리	1101-18	도	303	2.50	44.70	-	인제군			
67	북면 용대리	1099-32	도	57	0.40	6.10	-	국(농수산부)			
68	북면 용대리	1099-39	구	4,019	0.40	0.30	-	국(농수산부)			
69	북면 용대리	1099-5	도	1,286	0.80	6.30	-	인제군			
70	북면 용대리	572-18	구	1,954	5.10	96.40	-	국(농림부)			
71	북면 용대리	589-2	도	1,991	4.70	85.80	-	국(국토교통부)			
72	북면 용대리	599-1	도	986	0.50	6.60	-	국(건설교통부)			
73	북면 용대리	411-17	도	1,009	5.30	25.00	-	국(건설교통부)			
74	북면 용대리	413-6	도	12,706	1.10	-	-	국(국토교통부)			
75	북면 용대리	414-7	도	915	0.30	-	-	국(건설교통부)			
76	북면 용대리	413-17	도	386	1.60	16.30	-	국(건설교통부)			
77	북면 용대리	420-10	도	70	0.60	11.80	-	국(건설교통부)			
78	북면 용대리	420-16	대	15	0.10	2.10	-	인제군			
79	북면 용대리	419-31	전	13	0.10	1.20	-	인제군			
80	북면 용대리	419-32	대	61	0.60	11.80	-	인제군			
81	북면 용대리	419-8	도	422	1.70	26.20	-	국(재무부)			
82	북면	419-10	전	86	0.20	4.50	-	국(재무부)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용대리										
83	북면 용대리	1717	천	381,712	5.50	-	-	국(건설교통부)			
84	북면 용대리	427-3	전	297	1.30	15.20	-	인제군			
85	북면 용대리	427-2	도	229	0.20	4.20	-	인제군			
86	북면 용대리	427-1	도	832	3.90	22.80	-	인제군			
87	북면 용대리	1784	도	2,583	0.80	11.10	-	인제군			
88	북면 용대리	1828-2	천	71,867	1.20	-	-	국(환경부)			
89	북면 용대리	1715	천	846,120	52.40	288.90	-	국(건설부)			
90	북면 용대리	1339-4	도	408	1.90	21.30	-	국(건설교통부)			
91	북면 용대리	1337-15	답	2,552	13.60	81.70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258-23	이상도 외 1인			
92	북면 용대리	1339-2	창	1,250	12.30	71.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98-5	손명수			
93	북면 용대리	1333-32	도	320	2.20	40.00	미상번지	이강수			
94	북면 용대리	1333-35	도	327	2.40	43.00	-	국(건설교통부)			
95	북면 용대리	1333-39	도	132	2.60	27.30	-	국(건설교통부)			
96	북면 용대리	1333-38	도	52	1.50	12.10	-	국(건설교통부)			
97	북면 용대리	1333-37	도	120	4.00	32.90	-	국(건설교통부)			
98	북면 용대리	1338-16	도	83	3.30	25.10	-	인제군			
99	북면 용대리	1338-17	도	51	-	1.50	-	인제군			
100	북면 용대리	1715-17	도	2,399	40.10	302.60	-	국(국토교통부)			
101	북면 용대리	1715-18	천	704	6.50	64.80	-	국(국토교통부)			
102	북면 용대리	1337-23	도	56	2.90	19.60	-	국(건설교통부)			
103	북면	1337-13	답	1,035	3.90	21.00	강원도 인제군	손종길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용대리						북면 갈골로2길 31-16, 102호(운암아파트)				
104	북면 용대리	1337-22	도	169	3.80	27.00	-	국(건설교통부)			
105	북면 용대리	1337-10	답	2,320	1.80	10.8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십이선녀탕길 69-5	이범			
106	북면 용대리	1337-24	도	225	1.70	15.20	-	국(건설교통부)			
107	북면 용대리	1333-20	도	362	2.00	37.80	-	인제군			
108	북면 용대리	1333-22	답	2,162	1.50	33.2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74	조정화			
109	북면 용대리	1333-23	도	477	2.00	31.00	-	국(건설교통부)			
110	북면 용대리	1333-40	도	316	2.40	35.70	-	국(건설교통부)			
111	북면 용대리	1333-8	답	1,901	-	7.5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십이선녀탕길 83	김재만 외 1인			
112	북면 용대리	1333-26	도	346	2.70	30.70	-	국(건설교통부)			
113	북면 용대리	1333-9	답	1,350	-	18.0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804-7	함용석			
114	북면 용대리	1333-25	구	9	-	0.60	-	국(건설교통부)			
115	북면 용대리	1333-28	구	194	-	4.50	-	국(건설교통부)			
116	북면 용대리	1333-29	도	394	2.90	48.20	-	국(건설교통부)			
117	북면 용대리	1528-21	도	1,222	5.70	74.00	-	인제군			
118	북면 용대리	1528-18	도	612	5.30	88.90	-	인제군			
119	북면 용대리	1528-17	임	329	0.40	3.90	-	인제군			
120	북면 용대리	1528-9	임	1,618	0.30	1.90	-	인제군			
121	북면 용대리	1528-23	도	576	0.80	4.50	-	인제군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사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소	성명	권리자주소	권리자	종류
122	북면 용대리	1528-26	도	243	2.00	7.50	-	인제군			
123	북면 용대리	1339-6	도	776	3.20	23.90	-	국(건설교통부)			
124	북면 용대리	1339-3	답	734	12.10	80.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98-5	손명수			
125	북면 용대리	1336-5	도	647	8.10	58.00		국(건설교통부)			
126	북면 용대리	1336-4	임	2,302	14.50	89.50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7 주공아파트 1215동 1301호	신금심			
127	북면 용대리	1335-1	창	1,000	0.90	16.9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211번길 28, 101동402호(신아아파트)	김미애 외 2인			
128	북면 용대리	1335-5	전	27	0.20	3.7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211번길 28, 101동402호(신아아파트)	김미애 외 2인			
129	북면 용대리	1335-3	전	1,379	2.20	40.0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904 춘천더샵아파트 102-1804	이수연			
130	북면 용대리	산12-22	임	3,834,929	0.90	10.70		국(산림청)			
131	북면 용대리	992-20	도	229	8.20	57.50	-	국(재무부)			
132	북면 용대리	992-23	도	91	-	0.70	-	국(재무부)			
133	북면 용대리	산82-11	도	2,922	7.90	32.10	-	인제군			
134	북면 용대리	0-2	가		-	2.20	-	-			
135	북면 용대리	1119-10	도	3,168	7.30	27.80	-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9호

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정정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521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열람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춘천 신영 관광단지
나. 위 치 :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438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1,695,922.7㎡ (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1,695,922.7㎡ (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기정)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8년 (증 5년)
바. 사 업 비 : 3,400억원 (변경없음)
사. 사업 시행자 : 신영종합개발 주식회사 (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 토지지번부여 오류에 따른 정정
-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자. 조성계획 도서 : 게재생략 (춘천시 관광개발과에 비치)
차. 조성계획(변경) 조서 : 별지참조
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정정사유 :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면적 오기입에 따른 정정 (1,695,992.7㎡ → 1,695,922.7㎡)

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1,695,922.7	20,165.31	74,415.28	
공공편익시설	18,476.2	-	-	
숙박시설	36,011	6,705.80	55,252.90	
운동오락시설	619,507.6	12,163.19	17,305.13	
휴양문화시설	5,030	1,296.32	1,857.25	
기타시설	1,016,897.9	-	-	

2. 시설배치계획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모(동)	구성비(%)	비 고
총 계			1,695,922.7	74,415.28	43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8,476.2			1.1	
	도시계획도로		1,446.8			0.1	
	진입도로		11,636.9			0.7	
	내부도로		5,231			0.3	
	오수처리장		161.5			0.0	
숙박시설지구			36,011	55,252.90	18	2.1	
	빌라형		13,494	22,311.53	4	0.8	
	타워형		7,531	27,826.61	1	0.4	
	단독형		14,986	5,114.76	13	0.9	
관광휴양 · 오락시설지구			624,537.6	19,162.38	25	36.8	
	운동 · 오락시설		619,507.6	17,305.13	24	36.5	
	골프장	소계	501,093.6	10,142.97	11	29.5	
		코스시설	357,372.4			21.1	
		저류지	78,692.9			4.6	
		클럽하우스	32,554.4	7,494.35	1	1.9	
		수위실	100	17.64	1	0.0	
		스타트하우스	439	161.34	1	0.0	
		티하우스A	100	30.00	1	0.0	
		티하우스B	100	30.00	1	0.0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모(동)	구성비(%)	비 고
		관리동	9,869.9	2,156.73	1	0.6	
		예지물창고		96.60	1		
		관리동-2	826	156.31	1	0.1	
		묘포장	21,039		3	1.2	
	스키장	소계	118,414	7,162.16	13	7.0	
		슬로프	102,259		5	6.0	
		스키하우스	15,246	6,036.00	1	0.9	
		리프트탑승장		300.00	6	0.0	
		전망대	909	826.16	1	0.1	
	휴양 · 문화시설		5,030	1,857.25	1	0.3	
	커뮤니티센터		5,030	1,857.25	1	0.3	
기타시설지구			1,016,897.9			60.0	
		조성녹지	354,126			20.9	
		관광휴양시설	5,894.5			0.4	
		골프장	288,003.5			17.0	
		스키장	60,228			3.5	
		원형보전녹지	662,771.9			39.1	
		관광휴양시설	36,154			2.1	
		골프장	518,768.9			30.6	
		스키장	107,849			6.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95,922.7	-	1,695,922.7	100.0	
계획관리지역	1,695,922.7	-	1,695,922.7	100.0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①	신영관광단지 조성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군자리 1405번지 일원	군자리 1438번지 일원	-	1,695,922.7	2008.10.31. (강원도고시 제2008-315호)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군자리 1405번지 일원	군자리 1438번지 일원	1,695,922.7	-	1,695,922.7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분		가 구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	1,695,922.7	1,695,922.7		100.00%
	체육시설		-	-	967,739.1	967,739.1		57.06%
	관광휴양시설용지		-	-	52,166.5	52,166.5		3.08%
	공공시설용지		-	-	13,245.2	13,245.2		0.78%
	녹지용지		-	-	662,771.9	662,771.9		39.08%
① 관광휴양지구	소 계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88,482.0	88,482.0		5.22%
	①-1	관광휴양시설용지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52,166.5	52,166.5		3.08%
	①-2	공공시설용지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161.5	161.5		0.01%
	①-3	녹지용지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36,154.0	36,154.0		2.13%
② 골프장지구	소 계		광판리 1224번지	광판리 1225번지	1,320,949.7	1,320,949.7		77.89%
	②-1	체육시설	광판리 1224번지	광판리 1225번지	789,097.1	789,097.1		46.53%
	②-2	공공시설용지	군자리 1401번지	군자리 1434번지	13,083.7	13,083.7		0.77%
	②-3	녹지용지	군자리 1387번지	군자리 1420번지	518,768.9	518,768.9		30.59%
③ 스키장지구	소 계		군자리 산209번지	군자리 산209번지	286,491.0	286,491.0		16.89%
	③-1	체육시설	군자리 산209번지	군자리 산209번지	178,642.0	178,642.0		10.53%
	③-2	녹지용지	군자리 산215번지	군자리 산215번지	107,849.0	107,849.0		6.36%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획 지					구성비 (%)	비고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	1,695,922.7	1,695,922.7		100.00	
① 관광휴양지구				88,482.0	88,482.0		5.22	
관광휴양시설용지				52,166.5	52,166.5		3.08	
①-1-1	빌라형콘도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13,494.0	13,494.0		0.80	
①-1-2	타워형콘도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7,531.0	7,531.0		0.44	
①-1-3	단독형콘도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14,986.0	14,986.0		0.88	
①-1-4	커뮤니티센터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5,030.0	5,030.0		0.30	
①-1-5	내부도로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5,231.0	5,231.0		0.31	
①-1-6	조성녹지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5,894.5	5,894.5		0.35	
공공시설용지				161.5	161.5		0.01	
①-2-2	오수처리장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161.5	161.5		0.01	
녹지용지				36,154.0	36,154.0		2.13	
①-3-1	원지형보전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36,154.0	36,154.0		2.13	
② 골프장지구				1,320,949.7	1,320,949.7		77.89	
체육시설				789,097.1	789,097.1		46.53	
②-1-1	골프장시설	군자리 1406번지	군자리 1439번지	745,107.8	745,107.8		43.94	
②-1-2	클럽하우스 /오수처리장	군자리 1405번지	군자리 1438번지	32,554.4	32,554.4		1.91	
②-1-3	관리동/예지물창고	군자리 1402번지	군자리 1435번지	9,869.9	9,869.9		0.58	
②-1-4	스타트하우스	광판리 1224번지	광판리 1225번지	439.0	439.0		0.02	
②-1-5	수위실	군자리 1404번지	군자리 1437번지	100.0	100.0		0.01	
②-1-6	티하우스A	군자리 1404번지	군자리 1437번지	100.0	100.0		0.01	
②-1-7	티하우스B	군자리 1406번지	군자리 1439번지	100.0	100.0		0.01	
②-1-9	관리동-2	광판리 1224번지	광판리 1225번지	826.0	826.0		0.05	
공공시설용지				13,083.7	13,083.7		0.77	

구 분		획 지					구성비 (%)	비고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②-2-1	도시계획도로	군자리 1400번지	군자리 1433번지	1,446.8	1,446.8		0.08	
②-2-2	진입도로	군자리 1401번지	군자리 1434번지	11,636.9	11,636.9		0.69	
녹지용지				518,768.9	518,768.9		30.59	
②-3-1	원지형보전	군자리 1387번지	군자리 1420번지	518,768.9	518,768.9		30.59	
③ 스키장지구				286,491.0	286,491.0		16.89	
체육시설				178,642.0	178,642.0		10.53	
③-1-1	스키장시설	군자리 산209번지	군자리 산209번지	162,487.0	162,487.0		9.58	
③-1-2	스키하우스	군자리 산237번지	군자리 산237번지	15,246.0	15,246.0		0.90	
③-1-3	전망대	군자리 산215번지	군자리 산215번지	909.0	909.0		0.05	
녹지용지				107,849.0	107,849.0		6.36	
③-2-1	원지형보전	군자리 산215번지	군자리 산215번지	107,849.0	107,849.0		6.36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① - 1 - 1	군자리 산2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휴양콘도미니엄(빌라형콘도) - 4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19%이하	
			용 적 률	• 140%이하	
			높 이	• 최고 : 9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	
			색 채	• 벽체 : 연갈색 • 지붕 : 연회색	
			건 축 선	-	
기정	① - 1 - 2	군자리 산2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휴양콘도미니엄(타워형콘도)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2%이하	
			용 적 률	• 180%이하	
			높 이	• 최고 : 14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	
			색 채	• 벽체 : 연갈색 • 지붕 : 연갈색	
			건 축 선	-	
기정	① - 1 - 3	군자리 산2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휴양콘도미니엄(단독형콘도) - 13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3%이하	
			용적률	• 31%이하	
			높 이	• 최고 : 2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	
			색 채	• 벽체 : 연갈색 • 지붕 : 연갈색	
			건축선	-	
기정	① - 1 - 4	군자리 산2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 1동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8%이하	
			용적률	• 40%이하	
			높 이	• 최고 : 2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	
			색 채	• 벽체 : 연회색 • 지붕 : 연회색	
			건축선	-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② - 1 - 2	군자리 1405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클럽하우스)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2%이하	
			용적률	• 14%이하	
			높 이	• 최고 : 2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평지붕 / 경사형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 회색+흐린 갈색 • 지붕 : 탁한 갈색+어두운 회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2	군자리 1438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클럽하우스)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12%이하	
			용 적 률	• 14%이하	
			높 이	• 최고 : 2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평지붕 / 경사형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 회색+흐린 갈색 • 지붕 : 탁한 갈색+어두운 회색	
			건 축 선	-	
기정	② - 1 - 3	군자리 1402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관리동) - 1동, (예지물창고)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6%이하	
			용적률	• 23%이하	
			높 이	• 최고 : 관리동창고(2층) 예지물창고(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지붕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색 채	• 벽체 : 밝은 회색 • 지붕 : 밝은 회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3	군자리 1435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관리동) – 1동, (예지물창고)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6%이하	
			용적률	• 23%이하	
			높 이	• 최고 : 관리동창고(2층) 예지물창고(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 회색 • 지붕 : 밝은 회색	
			건축선	–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② - 1 - 4	광판리 1224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스타트하우스)-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40%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평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 갈색 • 지붕 : 탁한 갈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4	광판리 1225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스타트하우스)-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률	• 40%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평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 갈색 • 지붕 : 탁한 갈색	
			건 축 선	-	
기정	② - 1 - 5	군자리 1404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수위실)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20%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 갈색 • 지붕 : 어두운 회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5	군자리 14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수위실)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20%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 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 갈색 • 지붕 : 어두운 회색	
			건축선	-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② - 1 - 6	군자리 1404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티하우스A)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2%이하	
			용적률	• 32%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갈색 • 지붕 : 흐린갈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6	군자리 14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티하우스A)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2%이하	
			용적률	• 32%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갈색 • 지붕 : 흐린갈색	
			건축선	-	
기정	② - 1 - 7	군자리 1406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티하우스B)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2%이하	
			용적률	• 32%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갈색 • 지붕 : 흐린갈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7	군자리 1439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티하우스B)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2%이하	
			용적률	• 32%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지붕	
			색 채	• 벽체 : 흐린갈색 • 지붕 : 흐린갈색	
			건축선	-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② - 1 - 9	광판리 1224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관리동-2)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1%이하	
			용적률	• 21%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 회색 • 지붕 : 밝은 회색	
			건축선	-	
변경	② - 1 - 9	광판리 1225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관리동-2)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1%이하	
			용적률	• 21%이하	
			높 이	• 최고 : 1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 회색 • 지붕 : 밝은 회색	
			건축선	-	
기정	③ - 1 - 2	군자리 산237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스키장 부대시설(스키하우스)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2%이하	
			용적률	• 42%이하	
			높 이	• 최고 : 2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평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회색 • 지붕 : 어두운회색	
			건축선	-	
기정	③ - 1 - 3	군자리 산215번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스키장 부대시설(전망대) - 1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2%이하	
			용적률	• 69%이하	
			높 이	• 최고 : 2층	• 최저 : -
			배 치	• 도면 참조	
			형 태	• 지붕 : 경사형지붕	
			색 채	• 벽체 : 밝은회색 • 지붕 : 연회색	
			건축선	-	

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가) 총괄표

구분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75	1,446.8	-	-	-	-	-	-	1	75	1,446.8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1	12	국지 도로	75	군자리 1002-2	군자리 1401	일반 도로	-	2008. 10.31	국지도 86호선
변경	중로	3	51	12	국지 도로	75	군자리 1002-2	군자리 1434	일반 도로	-	2008. 10.31	국지도 86호선

토지조서

NO	주소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구별편입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계	골프장	스키장	관광휴양	
합 계					1,735,005.7	1,695,922.7	1,695,922.7	1,320,949.7	286,491	88,482	
1	동산면 군자리	1373	1406	임야	6,867.2	6,867.2	6,867.2	6,867.2			신영종합개발㈜
2		1374	1407	임야	1,394.2	1,394.2	1,394.2	1,394.2			신영종합개발㈜
3		1375	1408	임야	4,714.3	4,714.3	4,714.3	4,714.3			신영종합개발㈜
4		1376	1409	임야	22,353.0	22,353.0	22,353	22,353.0			신영종합개발㈜
5		1377	1410	임야	868.3	868.3	868.3	868.3			신영종합개발㈜
6		1378	1411	임야	2,125.8	2,125.8	2,125.8	2,125.8			신영종합개발㈜
7		1379	1412	임야	522.5	522.5	522.5	522.5			신영종합개발㈜
8		1380	1413	임야	1,108.9	1,108.9	1,108.9	1,108.9			신영종합개발㈜
9		1381	1414	임야	19,203.5	19,203.5	19,203.5	19,203.5			신영종합개발㈜
10		1382	1415	임야	1,807.3	1,807.3	1,807.3	1,807.3			신영종합개발㈜
11		1383	1416	임야	1,518.3	1,518.3	1,518.3	1,518.3			신영종합개발㈜
12		1384	1417	임야	7,237.2	7,237.2	7,237.2	7,237.2			신영종합개발㈜
13		1385	1418	임야	366.5	366.5	366.5	366.5			신영종합개발㈜
14		1386	1419	임야	649.5	649.5	649.5	649.5			신영종합개발㈜
15		1387	1420	임야	190,017.4	190,017.4	190,017.4	190,017.4			신영종합개발㈜
16		1388	1421	임야	8,507.1	8,507.1	8,507.1	8,507.1			신영종합개발㈜
17		1389	1422	임야	2,368.3	2,368.3	2,368.3	2,368.3			신영종합개발㈜
18		1390	1423	임야	432.5	432.5	432.5	432.5			신영종합개발㈜
19		1391	1424	임야	1,907.2	1,907.2	1,907.2	1,907.2			신영종합개발㈜
20		1392	1425	임야	2,874.3	2,874.3	2,874.3	2,874.3			신영종합개발㈜
21		1393	1426	임야	203.0	203.0	203	203.0			신영종합개발

NO	주소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구별편입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계	골프장	스키장	관광휴양	
합 계					1,735,005.7	1,695,922.7	1,695,922.7	1,320,949.7	286,491	88,482	
											㈜
22		1394	1427	임야	6,738.8	6,738.8	6,738.8	6,738.8			신영종합개발㈜
23		1395	1428	임야	650.4	650.4	650.4	650.4			신영종합개발㈜
24		1396	1429	임야	10,654.3	10,654.3	10,654.3	10,654.3			신영종합개발㈜
25		1397	1430	임야	1,018.7	1,018.7	1,018.7	1,018.7			신영종합개발㈜
26		1398	1431	임야	79.7	79.7	79.7	79.7			신영종합개발㈜
27		1399	1432	임야	40,899.9	40,899.9	40,899.9	40,899.9			신영종합개발㈜
28		1400	1433	도로	1,446.8	1,446.8	1,446.8	1,446.8			신영종합개발㈜
29		1401	1434	도로	11,636.9	11,636.9	11,636.9	11,636.9			신영종합개발㈜
30		1402	1435	체육용지	9,869.9	9,869.9	9,869.9	9,869.9			신영종합개발㈜
31	동산면 군자리	1403	1436	체육용지	19,495.3	19,495.3	19,495.3	19,495.3			신영종합개발㈜
32		1404	1437	체육용지	191,673.5	191,673.5	191,673.5	191,673.5			신영종합개발㈜
33		1405	1438	체육용지	32,554.4	32,554.4	32,554.4	32,554.4			신영종합개발㈜
34		1406	1439	체육용지	202,973.9	202,973.9	202,973.9	202,973.9			신영종합개발㈜
35	남산면 광판리	1198	1199	임야	6,129.9	6,129.9	6,129.9	6,129.9			신영종합개발㈜
36		1199	1200	임야	4,526.7	4,526.7	4,526.7	4,526.7			신영종합개발㈜
37		1200	1201	임야	123.5	123.5	123.5	123.5			신영종합개발㈜
38		1201	1202	임야	3,199.8	3,199.8	3,199.8	3,199.8			신영종합개발㈜
39		1202	1203	임야	7,994.6	7,994.6	7,994.6	7,994.6			신영종합개발㈜
40		1203	1204	임야	32,891.4	32,891.4	32,891.4	32,891.4			신영종합개발㈜
41		1204	1205	임야	974.5	974.5	974.5	974.5			신영종합개발㈜

NO	주소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구별편입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계	골프장	스키장	관광휴양	
합 계					1,735,005.7	1,695,922.7	1,695,922.7	1,320,949.7	286,491	88,482	
42		1205	1206	임야	705.3	705.3	705.3	705.3			신영종합개발㈜
43		1206	1207	임야	34,312.6	34,312.6	34,312.6	34,312.6			신영종합개발㈜
44		1207	1208	임야	8,582.0	8,582.0	8,582	8,582.0			신영종합개발㈜
45		1208	1209	임야	2,287.9	2,287.9	2,287.9	2,287.9			신영종합개발㈜
46		1209	1210	임야	509.9	509.9	509.9	509.9			신영종합개발㈜
47		1210	1211	임야	213.7	213.7	213.7	213.7			신영종합개발㈜
48		1211	1212	임야	18,056.8	18,056.8	18,056.8	18,056.8			신영종합개발㈜
49		1212	1213	임야	434.2	434.2	434.2	434.2			신영종합개발㈜
50		1213	1214	임야	1,453.3	1,453.3	1,453.3	1,453.3			신영종합개발㈜
51		1214	1215	임야	4,980.4	4,980.4	4,980.4	4,980.4			신영종합개발㈜
52		1215	1216	임야	1,149.0	1,149.0	1,149	1,149.0			신영종합개발㈜
53		1216	1217	임야	1,495.9	1,495.9	1,495.9	1,495.9			신영종합개발㈜
54		1217	1218	임야	864.5	864.5	864.5	864.5			신영종합개발㈜
55		1218	1219	임야	723.7	723.7	723.7	723.7			신영종합개발㈜
56		1219	1220	임야	14,298.9	14,298.9	14,298.9	14,298.9			신영종합개발㈜
57		1220	1221	임야	509.0	509.0	509	509.0			신영종합개발㈜
58		1221	1222	임야	799.2	799.2	799.2	799.2			신영종합개발㈜
59		1222	1223	임야	8,202.6	8,202.6	8,202.6	8,202.6			신영종합개발㈜
60		1223	1224	임야	26,261.5	26,261.5	26,261.5	26,261.5			신영종합개발㈜
61		1224	1225	체육용지	332,530.1	332,530.1	332,530.1	332,530.1			신영종합개발㈜
62	동산면 군자리	산207-1	산207-1	임야	4,843	4,843	4,843		4,843		신영종합개발㈜
63		산207-2	산207-2	임야	8,568	8,568	8,568		8,568		춘천시

NO	주소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구별편입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계	골프장	스키장	관광휴양	
합 계					1,735,005.7	1,695,922.7	1,695,922.7	1,320,949.7	286,491	88,482	
64		산209	산209	임야	19,835	19,835	19,835		19,835		신영종합개발㈜
65		산215	산215	임야	246,418	246,418	246,418		244,805	1,613	신영종합개발㈜
66		산237	산237	임야	87,471	87,471	87,471		5,827	81,644	신영종합개발㈜
67		1036	1036	답	327	327	327		310	17	신영종합개발㈜
68		1132	1132	답	645	645	645		645		신영종합개발㈜
69		1133	1133	전	1,468	1,468	1,468		1,468		신영종합개발㈜
70		1300-2	1300-2	구거	190	190	190		190		신영종합개발㈜
71		산236	산236	임야	37,350	1,133	1,133			1,133	신영종합개발㈜
72		1041	1041	답	1	1	1			1	신영종합개발㈜
73		1043	1043	답	489	489	489			489	신영종합개발㈜
74		1130	1130	전	188	188	188			188	신영종합개발㈜
75		1131	1131	전	4,906	2,094	2,094			2,094	신영종합개발㈜
76		1300-3	1300-3	구거	833	833	833			833	신영종합개발㈜
77		1300-7	1300-7	구거	382	382	382			382	신영종합개발㈜
78		1303	1303	도로	142	88	88			88	신영종합개발㈜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26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공모

강원특별자치도는「공인중개사법」제34조,「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등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무·직무·연수) 위탁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7월 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선정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위탁기간 : 2024. 8. 1 ~ 2026. 7. 31(2년)
3. 위탁교육과정 :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구 분	법정교육 시간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현장실습	주요 교육내용
실무교육	28~32시간	16~17시간	7~9시간	5~6시간	법률지식,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등
직무교육	3~4시간	3~4시간(택1)		-	직업윤리 등
연수교육	12~16시간	6~8시간	6~8시간	-	법률지식,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등

4. 신청자격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5. 선정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소재지 : 위탁기관 주 소재지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도내 소재
   ○ 시설기준 :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강사 자격기준
   가.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주택관리사 · 건축사 · 공인회계사 · 법무사 ·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주요업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운영 및 수료 관리

7. 선정절차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공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10.(수)
- 접수장소 및 방법 : 방문 또는 우편(강원특별자치도청 토지과)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등 붙임서류 원본 각 1부.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 2024. 7. 23.(화)까지
- 심사결과 통지 및 관보 고시 : 2024. 7. 24.(수)까지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토지과 부동산주소팀(033-249-2363)

9. 붙임서류
○ [서식1] 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서식2] 참가기관 현황 1부.
○ [서식3] 최근 3년간 교육운영 실적 1부.
○ [서식4] (실무 · 직무 · 연수)교육 운영 계획서 1부.
○ [서식5] 인력 보유현황 1부.

[서식1]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실 무 자	직위: 성명:
소 재 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	
		이메일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운영		
전담인력	직위 : 성 명 : 외 명		

사 업 비 (단위 : 원)	계	자체부담액	운영수익	기 타
사업기간	2024. 8. 1 ~ 2026. 7. 31(2년)			
세부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참가기관(법인)의 현황(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첨부) 1부
2. 최근 3년간 교육운영 실적 1부
3. (실무·직무·연수)교육 운영계획서 1부
4. 인력(강사) 보유현황 1부
5. 현장실습을 할 경우 중개사무소 지정현황 1부.
(모의현장 실습의 경우 실습장소 설치현황)

[서식2]

참 가 기 관 (법인) 현 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대 표 자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 (팩스)		(이메일) (홈 페이지)		
등록(설립) 년 월 일				등록(설립) 관 청	
설립형태				회 원 수	
상근직원수		사무실규모	㎡	사용형태	
등록(설립)목적					
주요사업					
정기간행물	간행물명			발간 주기	
가입(회원) 기관(단체)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	
지부(지회)현황	지부(지회)수			회원수	

※ 작성요령

1. 지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 2024.6월 현재 회원
3. 상근직원은 상근하고 있는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4. 사무실 규모는 ㎡, 사용형태(자가, 임대/전세, 월세, 기타) 기입
5. 주요 사업은 현재를 중심,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6. 가입(회원)단체(기관)현황은 상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7. 도회(지회)현황은 하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회칙) 각 1부

[서식3]

최근 3년간 교육운영 실적

연도별	사 업 명	추진 기간	예산액 (천원)			공모사업명 (보조금지원기관)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9							
		~					
		~					
		~					
'20							
'21							

[서식4
]

(실무·직무·연수)교육 운영계획서

1. 신청사업명 :

○ 사업개요(※필요한 경우 서식 변경가능)

2. 사업 목적

○

3. 추진방향

○

4. 강의실 확보현황(주소)

○ 임대, 전세, 소유

5. 세부 추진계획

○

※ 교육별 사업시기, 추진일정, 프로그램 운영방법(인터넷, 집합, 과목명, 시간, 강사명 등), 소요예산(수강료 및 산출근거 등) 구성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실무, 직무, 연수교육 구분하여 별도 작성

6. 기대효과

○

7. 예산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100%)

- 자 부 담 : 천원(%)
- 운영수익 : 천원(%)

사업비 구분		예산	소요예산 산출기초	비 고
인건비				
	소 계			
일반운영비				
	소 계			
임차비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비 편성 기준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 포함 원칙

[서식5]

인 력 보 유 현 황

○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본 교육관련 참여경력	최종학교 (학 위)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교육책임자						
분야별 강사진						

※ 경력사항의 경우 공고일 현재기준 10년 이내 본 교육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요망

붙임서류 : 1) 교육책임자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강 사 : 주요 이력사항 각 1부.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2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 공인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인등록 사용일 및 폐기일 : 2024. 7. 12.
2. 등록 및 폐기사유 :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함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 일상경비출납원	문체부제목돋움체 1.8cm 정방형		

□폐기 공인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강원특별자치도치수과 일상경비출납원	문체부제목돋움체 1.8cm 정방형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3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조직개편(‘24. 7. 15.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인등록 사용일 및 폐기일 : 2023. 7. 15.
2. 등록 및 폐기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조직개편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함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인영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강원특별자치도국제협력관일 상경비출납원	문체부제목돋움체 1.8cm 정방형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강원특별자치도국제통상과일 상경비출납원	문체부제목돋움체 1.8cm 정방형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32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신규 등록(1개 단체)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비고
1	신규 등록	제2024-강원특별자치도-3호	속고양인 나라사랑모임	이예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307-7, B1	애국·애족 정신 함양, 국가안보 고취 및 홍보	2024.6.24.	신규등록

▣ 변경 등록(2개 단체)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 일자	비고
1	변경전	제2000-1-강원특별자치도-11호	사단법인 강원도새마을회	박형배	춘천시 영서로 2970	새마을운동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 사업,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2000.5.24.	대표자 변경 (24.6.4.)
	변경후			홍순선				
2	변경전	제2000-1-강원특별자치도-7호	강릉자원봉사센터	최길영	강릉시 동부시장길 5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등	2000.5.24.	소재지 변경 (24.613.)
	변경후				강릉시 수문길 13번길 17-2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4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의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사유 :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해양수산국 신설)에 따른 해양수산정책관에게 위임된 6급 이하 해양수산직 임용 등 권한 삭제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및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5일
3. 등록공인 및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인사위원회인	문체부 제목 돋움체 3.3cm (정방형)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인사위원회인	폐기공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4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도체산업추진단 명칭 폐지, 반도체산업과의 명칭 사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의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사유 : 반도체산업추진단 명칭변경
   (반도체산업추진단 ⇨ 반도체산업과)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및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5일
3. 등록공인 및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문체부 제목 돋움체 1.8cm (정방형)		등록공인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문체부 제목 돋움체 1.8cm (정방형)		폐기공인

입 법 예 고

춘천시 고시 제2024-367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강원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증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19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 나래관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3.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면적 : 889,343.70㎡
   나. 인가면적 : 3,215㎡
   다. 세부용도 : 교육기본시설
   라. 규 모
      - 부지면적 3,215㎡
      - 건축면적 1,026.49㎡(금회증축 16.49㎡), 연면적 2,427.18㎡(금회증축 23.1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강원대학교 총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	금회 사업면적	성 명	주 소	
합 계		1필지		644,850	3,215			
1	효자동	192-1	학	644,850	3,215	국(교육부)		

- 세부조성계획 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높이(층수)		비고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교육기본시설	나래관	3,215	3,215	1,060.00	1,026.49 (증 16.49)	2,504.00	2,427.18 (증 23.18)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2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고시 제2024-368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송곡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증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춘 천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송곡대학길 34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송곡대학교)사업
  나. 명칭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송곡대학교)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면적 : 113,805㎡
  나. 인가면적 : 113,805㎡
  다. 건축규모
    가) 교육기본시설
      - 강의동(나) : 지상5층, 건축연면적 5,291.67㎡, 증)710.27㎡
      - 강의동(다) : 지상1층, 건축연면적 432.00㎡, 증)432.00㎡
      - 학생회관 : 지상2층, 건축연면적 939.28㎡, 증)939.28㎡
      - 다목적실2 : 지상2층, 건축연면적 660.36㎡, 증)660.36㎡
      - 실습장 : 지상1층, 건축연면적 920.00㎡, 증)920.00㎡
    나) 편익 및 관리시설
      - 학생편의공간1 : 지상2층, 건축연면적 496.13㎡ 증)1.5㎡
      - 학생편의공간2 : 지상2층, 건축연면적 494.00㎡ 증)494.00㎡
      - 카페테리아 : 지상1층, 건축연면적 99.69㎡, 증)99.6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송곡대학교 총장 왕덕양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송곡대학길 34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송곡대학길 34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송곡대학교)사업
  나. 명칭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_송곡대학교)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면적 : 113,805㎡
  나. 인가면적 : 113,805㎡
  다. 건축규모
    가) 교육기본시설
      - 강의동(나) : 지상5층, 건축연면적 5,291.67㎡, 증)710.27㎡
      - 강의동(다) : 지상1층, 건축연면적 432.00㎡, 증)432.00㎡
      - 학생회관 : 지상2층, 건축연면적 939.28㎡, 증)939.28㎡
      - 다목적실2 : 지상2층, 건축연면적 660.36㎡, 증)660.36㎡
      - 실습장 : 지상1층, 건축연면적 920.00㎡, 증)920.00㎡
    나) 편익 및 관리시설
      - 학생편의공간1 : 지상2층, 건축연면적 496.13㎡ 증)1.5㎡
      - 학생편의공간2 : 지상2층, 건축연면적 494.00㎡ 증)494.00㎡
      - 카페테리아 : 지상1층, 건축연면적 99.69㎡, 증)99.6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송곡대학교 총장 왕덕양
  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송곡대학길 3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21필지		130,275	113,805						
1	남산면 창촌리	1	학	16,210	16,210	학교법인송곡학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52-1				
2	〃	5	전	1,981	1,981	〃	〃				
3	〃	2	학	16,542	16,542	〃	〃				
4	〃	2-1	임	11,421	11,421	〃	〃				
5	〃	8-2	답	496	496	〃	〃				
6	〃	10	답	6,206	6,206	〃	〃				
7	〃	10-1	답	4,680	4,680	학교법인송곡학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52-1				
8	〃	11	학	13,393	13,393	〃	〃				
9	〃	11-1	임	5,600	5,600	〃	〃				
10	〃	11-2	임	7	7	〃	〃				
11	〃	11-3	임	4,187	4,187	〃	〃				
12	〃	11-4	도	1,562	1,562	〃	〃				
13	〃	21-1	구	23,185	8,711	국(국토부)					
14	〃	24	전	218	218	학교법인송곡학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52-1				
15	〃	25	전	2,129	2,129	〃	〃				
16	〃	26	전	1,111	1,111	〃	〃				
17	〃	27	묘	393	393	〃	〃				
18	방곡리	10-6	임	6,647	6,647	〃	〃				
19	〃	10-7	도	3,012	2,813	〃	〃				
20	〃	10-9	도	2,167	370	〃	〃				
21	〃	산23-1	임	9,128	9,128	〃	〃				

- 세부조성계획 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높이(층수)		비고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교육기본시설	강의동(나)	3,580	3,580	1,119.16	1,119.16	5,291.67	5,291.67 (증축 710.27)	지상5층	지상5층	
	강의동(다)	2,000	2,000	432.00	432.00 (증축 432.0)	432.00	432.00 (증축 432.0)	지상1층	지상1층	
	학생회관	992	992	524.43	469.64 (증축 469.64)	1,091.56	939.28 (증축 939.28)	지상2층	지상2층	
	다목적실2	866	866	660.00	330.18 (증축 330.18)	1,320.00	660.36 (증축 660.36)	지상2층	지상2층	
	실습장	2,181	2,181	1,001.00	920.00 (증축 920.0)	1,001.00	920.00 (증축 920.0)	지상1층	지상1층	
편익 및 관리시설	학생 편의공간1	676	676	307.80	306.30 (증축 1.50)	497.63	496.13 (증축 1.50)	지상2층	지상2층	
	학생 편의공간2	589	589	330.00	247.00 (증축 247.0)	660.00	494.00 (증축 494.0)	지상2층	지상2층	
	카페테리아	282	282	100.00	99.69 (증축 99.69)	200.00	99.69 (증축 99.69)	지상2층	지상1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4-1366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8호선, 대로1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2011-475호(2011.12.30.), 강원도 고시 제2016-498호(2016.1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춘천시 동면 장학리 606-2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8호선, 대로1류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동면 장학리 60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8호선, 대로1류10호선)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소양교차로 일원 연결숲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6,892㎡
   나. 규 모 : 중앙분리대(녹지조성) 6,89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춘천시장(녹지공원과장)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7. 5. ~ 2024. 7. 22.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동면 장학리	606-2	도	12,286.0	380.0	춘천시					
2	〃	614-2	도	14,937.0	3,251.0	춘천시					
3	〃	670-4	도	22,934.0	3,261.0	춘천시					
합 계					6,892.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4-1367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2016-498호(2016.1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77-21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77-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10호선)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거두순환교차로 일원 연결숲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3,037㎡
   나. 규 모 : 중앙분리대(녹지조성) 3,037㎡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춘천시장(녹지공원과장)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7. 5. ~ 2024. 7. 22.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동면 만천리	산77-21	도	4,352.0	514.0	춘천시					
2	〃	525-21	도	1,640.0	490.0	춘천시					
3	석사동	산1-27	도	5,371.0	1,166.0	춘천시					
4	동내면 거두리	산110-1	도	23,606.0	189.0	춘천시					
5	〃	산129-2	도	4,683.0	108.0	춘천시					
6	〃	539-5	도	3,431.0	570.0	춘천시					
합 계					3,037.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4-1368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6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2018-493호(2018.11.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춘천시 사농동 217-231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사농동 217-2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1류6호선)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육림랜드 일원 연결숲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2,033㎡
   나. 규 모 : 중앙분리대(녹지조성) 2,03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춘천시장(녹지공원과장)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7. 5. ~ 2024. 7. 22.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사농동	217-231	도	370.0	190.0	춘천시					
2	〃	217-9	도	516.0	241.0	국(건설부)					
3	〃	219-158	도	3,199.0	395.0	국(건설부)					
4	〃	685-3	도	2,892.0	569.0	춘천시					
5	〃	687-1	도	120.0	42.0	국(농림축산부)					
6	〃	707-1	도	958.0	113.0	춘천시					
7	〃	291-8	도	727.0	20.0	춘천시					
8	〃	298-2	도	93.0	7.0	춘천시					
9	〃	300-2	도	562.0	106.0	국(건설부)					
10	〃	219-162	도	7,503.0	239.0	국(건설부)					
11	〃	369-2	도	641.0	107.0	국(건설부)					
12	〃	372-1	도	33.0	4.0	국(건설부)					
합 계					2,033.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원주시 고시 제2024-22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3-1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3-10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금회)	대로	3	10	25	보조간선도로	314.3	대로3-10 관설동 1344-3답	대로3-10 관설동 산169-14임	일반도로	강고제51호 (2003.2.27..)	
변경(금회)	대로	3	10	25	보조간선도로	314.3	대로3-10 관설동 1344-3답	대로3-10 관설동 산169-14임	일반도로		도로 경사면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류 10호선	대로3류 10호선	○ 도로 사면부 변경	○ 도로의 비탈면으로 인하여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23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 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89호(2024. 06. 28.)로 결정(변경) 고시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78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1)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호저면 만종리 378	-	증) 3,034	3,034	금회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23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2024-219(2024.06.21.)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부문만 기재)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	328	대로2-11 무실동 1986도	남쪽구역계 무실동 1555-67답	일반도로		강고 제2017-517호 (`17.12.08)	도로 선형 변경
변경	대로	3	5	25	보조간선	328	대로2-11 무실동 1986도	남쪽구역계 무실동 1555-67답	일반도로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주택건설용지: 변경

■ 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면적(㎡)	변경	변경후	
총계	-	60,540.4	-130.9	60,409.5	-	60,540.4	-130.9	60,409.5	
AC-4	-	29,625.6	-	29,625.6	-	29,625.6	-	29,625.6	
AC-5	-	30,914.8	-130.9	30,783.9	-	30,914.8	-130.9	30,783.9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게재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237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2-1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1	30~50	보조 간선 도로	1,366	서쪽구역계 무실동 850-25도	대로1-5 (판부면 서곡리 599-2도)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2017-504호 (2017.12.1.)	
변경	대로	2	11	30~50	보조 간선 도로	1,366	서쪽구역계 무실동 850-25도	대로1-5 (판부면 서곡리 599-2도)	일반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1	대로 2-11	○ 면적변경 당초 20,479㎡ → 변경 20,540㎡	• 지적분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선형 일부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239호

원주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30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305호) 조성사업
   ○ 명칭: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관광과장)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면적(㎡)	금회시행(㎡)	비고
경관광장305호	16,214	16,2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4.7.5. ~ 2025.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4-1	전	433	433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2	〃	1491	대	674	646	남윤신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544				
3	〃	1493-1	전	2,522	2,508	원정식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산40				
4	〃	1494	전	2,493	2,493	유옥균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6 2007동602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5	〃	1495	대	3,019	3,019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6	〃	1495-1	사	1,015	1,015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7	〃	1495-2	전	66	66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8	〃	1495-3	도	10	10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9	〃	1495-4	도	5	5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10	〃	1496-5	전	40	40	서명숙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91 101-402				
11	〃	1496-7	전	4	4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12	〃	1497	전	840	840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13	〃	1497-2	전	389	389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14	〃	1498-2	전	394	394	문지인	원주시 문막읍 원양1로 91-13				
15	〃	1499-1	사	30	30	유익노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64				미등기
16	〃	1500	전	4,202	4,202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17	〃	1672-1	도	108	10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8	〃	1672-3	도	12	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원주시 고시 제2024-24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70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70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05	근린공원	근린 공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3번지 일원	83,055	증)326	83,381	강원도고시 제2021-399호 (2021. 11. 5.)	비도시 지역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05	근린공원	• 구역계 변경 - 83,055㎡ → 83,381㎡ 증)326㎡	• 지적경계 및 토지분할 결과를 반영한 구역계 일부변경

다. 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83,055	83,381	증326	2,237	2,237	-	100.0	100.0	-	
시설면적 소계		32,065	31,994	감71	2,237	2,237	-	38.6	38.4	감0.2	
도로 및 광장	소계	6,472	6,459	감13	-	-	-	7.8	7.7	감0.1	
	도로	5,214	5,201	감13	-	-	-	6.3	6.2	감0.1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광장	1,258	1,258	-	-	-	-	1.5	1.5	-	
조경시설		9,498	9,498	-	-	-	-	11.4	11.4	-	
휴양시설		2,254	2,254	-	-	-	-	2.7	2.7	-	
유희시설		1,583	1,583	-	-	-	-	1.9	1.9	-	
교양시설		1,567	1,567	-	139	139	-	1.9	1.9	-	
편익시설		5,955	5,897	감58	126	126	-	7.2	7.1	감0.1	
관리시설		1,568	1,568	-	572	572	-	1.9	1.9	-	
도시농업시설		3,168	3,168	-	1,400	1,400	-	3.8	3.8	-	
녹지및기타		50,990	51,387	증397	-	-	-	61.4	61.6	증0.2	
공원시설율(법정40%이하)		31,994/83,381x100%=38.4%									
건폐율(공원면적의5%이내)		2,237/83,381x100%=2.7%									

2) 세부시설(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83,055.0	83,381.0	증326	2,237.0	2,843.0	
시설면적 소계			32,065.0	31,994.0	감71	2,237.0	2,843.0	시설율38.4%
도로 및 광장	소 계		6,472.0	6,459.0	감13	-	-	
	도로		5,214.0	5,201.0	감13	-	-	
	진입광장	가-1	571.0	571.0	-	-	-	
	커뮤니티광장	가-2	687.0	687.0	-	-	-	
조경 시설	소 계		9,498.0	9,498.0	-	-	-	
	잔디광장	나-1	4,600.0	4,600.0	-	-	-	
	계절초화원	나-2	1,881.0	1,881.0	-	-	-	
	자연생태연못	나-3	290.0	290.0	-	-	-	
	철쭉원	나-4	924.0	924.0	-	-	-	
	유실수원	나-5	1,803.0	1,803.0	-	-	-	
휴양 시설	소 계		2,254.0	2,254.0	-	-	-	
	휴게쉼터1	다-1	476.0	476.0	-	-	-	
	휴게쉼터2	다-2	407.0	407.0	-	-	-	
	휴게쉼터3	다-3	51.0	51.0	-	-	-	
	휴게쉼터4	다-4	317.0	317.0	-	-	-	
	휴게쉼터5	다-5	124.0	124.0	-	-	-	
	휴게쉼터6	다-6	75.0	75.0	-	-	-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정원	다-7	516.0	516.0	-	-	-	
		팔각쉼터	다-8	110.0	110.0	-	-	-	
		산마루쉼터	다-9	178.0	178.0	-	-	-	
	유희시설	소 계		1,583.0	1,583.0	-	-	-	
		지형놀이터	라-1	1,583.0	1,583.0	-	-	-	
	교양시설	소 계		1,567.0	1,567.0	-	139.0	278.0	
		작은동물원	마-1	1,567.0	1,567.0	-	139.0	278.0	
	편익시설	소 계		5,955.0	5,897.0	감58	126.0	126.0	
		주차장1	바-1	3,566.0	3,508.0	감58	-	-	
		주차장2	바-2	2,263.0	2,263.0	-	-	-	
		숲전망대	바-3	126.0	126.0	-	126.0	126.0	
	관리시설	소 계		1,568.0	1,568.0	-	572.0	1,039.0	
		관리동	사-1	804.0	804.0	-	467.0	934.0	
		창고	사-2	154.0	154.0	-	105.0	105.0	
		농수로	사-3	610.0	610.0	-	-	-	
	도시농업시설	소 계		3,168.0	3,168.0	-	1,400.0	1,400.0	
		재배원	아-1	1,118.0	1,118.0	-	-	-	
		스마트팜	아-2	1,400.0	1,400.0	-	1,400.0	1,400.0	
		논체험장	아-3	650.0	650.0	-	-	-	
녹지				50,990.0	51,387.0	증397	-	-	
	녹지	녹지	자	50,990.0	51,060.0	증70.0	-	-	녹지율61.6%

3)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2,220.8	2,216.1	감4.7	5,214.0	5,201.0	감13.0	
소로	8.0미만	2,220.8	2,216.1	감4.7	5,214.0	5,201.0	감13.0	

나) 도로 세부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로	합계			2,220.8	2,216.1	감4.7	5,214.0	5,201.0	감13.0				
	3	1	5.0	78.3	78.3	-	391.0	391.0	-	진입로	부지경계	진입광장	
	3	2	3.3	70.3	66.8	감3.5	226.0	224.0	감2.0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3	6.0	4.6	3.4	감1.2	28.0	17.0	감11.0	진입로	진입로2	부지경계	
	3	4	3.3	286.4	286.4	-	946.0	946.0	-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5	3.0	93.7	93.7	-	282.0	282.0	-	진입로	부지경계	진입로4	
	3	6	2.0	81.1	81.1	-	162.0	162.0	-	연결로	진입로5	진입로5	
	3	7	4.0	50.4	50.4	-	201.0	201.0	-	연결로	부지경계	휴게쉼터2	
	3	8	3.0	44.5	44.5	-	134.0	134.0	-	연결로	관수로	부지경계	
	3	9	3.0	60.9	60.9	-	183.0	183.0	-	연결로	연결로8	휴게쉼터3	
	3	10	3.0	31.4	31.4	-	95.0	95.0	-	산책로	휴게쉼터3	작은동물원	
	3	11	3.0	58.3	58.3	-	175.0	175.0	-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12	3.5	42.8	42.8	-	150.0	150.0	-	연결로	작은동물원	관수로	
	3	13	3.0	57.5	57.5	-	173.0	173.0	-	산책로	커뮤니티광장	휴게쉼터4	
	3	14	3.0	155.7	155.7	-	467.0	467.0	-	산책로	커뮤니티광장	진입로5	
	3	15	2.0	58.9	58.9	-	118.0	118.0	-	연결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16	3.0	26.6	26.6	-	81.0	81.0	-	연결로	연결로17	부지경계	
	3	17	1.5	13.2	13.2	-	20.0	20.0	-	연결로	부지경계	숲전망대	
	3	18	1.5	57.8	57.8	-	88.0	88.0	-	연결로	휴게쉼터2	숲전망대	
	3	19	1.5	398.2	398.2	-	597.0	597.0	-	산책로	휴게정원	산마루쉼터	
	3	20	1.2	202.1	202.1	-	243.0	243.0	-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2	
	3	21	1.2	225.1	225.1	-	270.0	270.0	-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19	
	3	22	1.5	123.0	123.0	-	184.0	184.0	-	산책로	산마루쉼터	부지경계	

다.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70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24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단구공원	근린 공원	원주시 단구동 산73 일원	418,250.0	-	418,250.0	건고 제283호 (67.04.19)	세부조성 계획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구분	시설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반시설	산책로	• 면적: 24,298㎡ → 22,395㎡ 감) 1,903㎡	• 산책로 폐지
운동시설	맨발지압로	• 면적: 5,513㎡ → 5,973㎡ 증) 460㎡	• 맨발지압로 조성
편익시설	주차장6 화장실3	• 면적: 7,146㎡ → 7,466㎡ 증) 320㎡	• 주차장, 화장실 신규 조성
녹지 및 기타시설	녹지	• 면적: 352,570㎡ → 335,693㎡ 증) 1,123㎡	• 시설변경에 따른 녹지면적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 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물(㎡)						건물 동수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18,250		418,250	100.0	5,163		5,213	11,853		11,876	11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건물동수(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시설 소계		65,680	감)1,123	64,557	15.4	5,134	증)50	5,184	11,824	증)23	11,847	11	
기반시설	소계	24,298	감)1,903	22,395	5.4								
	도로	15,308	감)1,903	13,405	3.2								
	열린광장	8,658		8,658	2.1								
	진입광장	332		332	0.1								
조경시설	소계	1,535		1,535	0.4								
	힐링숲	1,123		1,123	0.3								
	잔디광장	412		412	0.1								
	잔디마당												
휴양시설	소계	17,553		17,553	4.2	313		313	313		313	2	
	휴게광장	5,777		5,777	1.4								
	휴게쉼터1	1,539		1,539	0.4								
	휴게쉼터2	888		888	0.2								
	휴게쉼터3	1,685		1,685	0.4								
	휴게쉼터4	1,023		1,023	0.2								
	휴게쉼터5	105		105									
	휴게쉼터6	527		527	0.1								
	휴게쉼터7	143		143									
	조각숲	3,907		3,907	0.9								
	노인복지회관	690		690	0.2	183		183	183		183	1	
	경로당1	300		300	0.1	130		130	130		130	1	
	경로당2	87		87									
	전망대1	760		760	0.2								
	전망대2	122		122									
유희시설	소계	2,218		2,218	0.5								
	어린이 놀이터1	617		617	0.1								
	어린이 놀이터2	1,601		1,601	0.4								
운동시설	소계	5,513	증)460	5,973	1.4	482		482	478		478	1	
	시니어파크	1,381		1,381	0.3								
	농구장	1,424		1,424	0.3								
	족구장	1,722		1,722	0.4								
	잔디마당	504		504	0.1								
	게이트볼장	482		482	0.1	482		482	478		478	1	
	맨발지압로		증)460	460	0.2								
교양시설	소계	7,362	-	7,362	1.8	3,890		3,890	10,554		10,554	2	
	생태학습장	1,749		1,749	0.4								
	도서관	3,224		3,224	0.8	3,224		3,224	9,891		9,891	1	
	보육시설	900		900	0.2	193		193	193		193		
	임윤지당	574		574	0.1	188		188	185		185	1	
	임윤지당	100		100		85		85	85		85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건물동수(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소												
	여성문화회관	815		815	0.2	200		200	200		200		
편익시설	소계	7,146	증)320	7,446	1.7	394		444	424		447	3	
	주차장1	1,300		1,300	0.3								
	주차장2	1,303		1,303	0.3								
	주차장3	906		906	0.2								
	주차장4	1,490		1,490	0.4								
	주차장5	1,120		1,120	0.3								
	주차장6	-	증)270	270									
	화장실1	31		31		31		31	61		61	1	
	화장실2	36		36		36		36	36		36	1	
	화장실3	-	증)50	50		-	증)50	50	-	증)23	23	1	
	조각미술관 및 휴게음식점	960		960	0.2	327		327	327		327		
관리시설	소계	55	-	55		55		55	55		55	2	
	관리사무소 1	37		37		37		37	37		37	1	
	관리사무소 2	18		18		18		18	18		18	1	
기타시설	소계	-	-	-	-							1	
	구곡배수지											1	
	도시가스 정압기1												
	도시가스 정압기2												
	도시가스 정압기3												
녹지 및 기타시설	소계	352,570	증)1,123	353,693	84.6	29		29	29		29		
	녹지 및 기타	352,570	증)1,123	353,693	84.6	29		29	29		29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7,263	15,308				
				변경	6,237	13,405				
소로	소계				593	3,818				
	3류	1	기존	7.0	268	1,934	일반도로	시청로	구곡배수지	
		2	기존	6.0	88	529	진입로	주차장	구곡초등학교	
		3	기존	7.0	81	513	진입로	토지1길	주차장	
		4	기존	4.0	59	264	일반도로	소로3-6	열린광장	
		5	기존	4.0	32	127	일반도로	늘품로	소로3-4	
		6	기존	6.0	65	451	일반도로	주차장	소로3-4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계				5,644	9,587				
산책로		1	기존	1.5	164	246	산책로	산책로3	동측공원경계지	
		3	기존	1.2~1.5	995	1,531	산책로	휴게쉼터	산책로21	
		4	기존	1.5	99	149	산책로	동측공원경계지	산책로36	
		5	기존	1.5	83	125	산책로	족구장	산책로3	
		6	기존	1.5	224	336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	
		7	기존	1.5	104	156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	
		8	기존	1.5	144	216	산책로	서측공원경계지	산책로3	
		9	기존	1.5	72	108	산책로	휴게쉼터	산책로3	
		10	기존	1.0~1.5	151	200	산책로	북측공원경계지	산책로3	
		11	기존	1.5	110	165	산책로	동보렉스아파트	산책로21	
		12	기존	1.5	248	372	산책로	다목적구장	육교	
		14	기존	1.5	344	512	산책로	다목적구장	산책로30	
		15	기존	1.5	247	363	산책로	산책로27	휴게쉼터	
		16	기존	2.0	81	162	산책로	남측공원경계지	휴게쉼터	
		17	기존	1.5	62	93	산책로	조각숲	산책로26	
		18	기존	1.2	41	49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6	
		20	기존	1.5	73	110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7	
		21	기존	1.2~1.5	200	283	산책로	잔디마당	산책로3	
		22	기존	1.5	56	84	산책로	남측공원경계지	산책로12	
		23	기존	1.5	64	96	산책로	남측공원경계지	산책로36	
		24	기존	1.5	109	16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15	
		25	기존	2.0	39	79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24	
		26	기존	1.5	256	38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7	
		27	기존	1.5	271	411	산책로	진입광장	휴게쉼터	
		28	기존	2.0	30	60	산책로	조각숲	산책로27	
		29	기존	1.5	29	51	산책로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30	기존	1.5	81	119	산책로	생태학습장	힐링숲	
		31	기존	1.0	68	103	산책로	생태학습장	산책로14	
		32	기존	1.5	14	21	산책로	산책로30	생태학습장	
		33	기존	1.5	54	70	산책로	산책로15	진입광장	
		35	기존	1.5	106	159	산책로	서측공원경계지	산책로36	
		36	기존	2.2~4.1	1,025	2,61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1	
		37	폐지	1.5~1.8	102	166	산책로	서측공원경계지	산책로39	
		39	폐지	1.5	783	1,175	산책로	소로3-1	산책로41	
		41	폐지	3.0~8.0	35	208	산책로	산책로39	생태육교	
		42	폐지	1.5~8.0	72	293	산책로	산책로3	생태육교	
		43	폐지	1.8	34	61	산책로	휴게쉼터	산책로39	

다.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책로37	-	• 면적: 166㎡ → 0㎡ 감) 166㎡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변경
산책로39	-	• 면적: 1,150㎡ → 0㎡ 감) 1,175㎡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변경
산책로41	-	• 면적: 208㎡ → 0㎡ 감) 208㎡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변경
산책로42	-	• 면적: 293㎡ → 0㎡ 감) 293㎡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변경
산책로43	-	• 면적: 61㎡ → 0㎡ 감) 61㎡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변경

■ 도시관리계획(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원주시 공고 제2024-1810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 시행자지정(변경없음)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가. 원주시 단구동 890번지 ~ 8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나. 명칭: 단구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보경종합건설(주)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서관, 2층 209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금회시행
	폭(m)	연장(m)	
중로3-116호선	12.0~18.0	851	B=12.0m, L=51.5m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4.6.24.(접수일)

□ 실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가. 원주시 단구동 890번지 ~ 8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나. 명칭: 단구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보경종합건설(주)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서관, 2층 209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금회시행
	폭(m)	연장(m)	
중로3-116호선	12.0~18.0	851	B=12.0m, L=51.5m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6.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2024.7.5.~ 2024.7.19. / 원주시 도시계획과(7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중로3-116호 실시계획인가 토지 및 지하시설물 일체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기정	단구동	890	대	660	199	박영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큰숯둔길 4(관설동)	문막농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19	근저당권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기정	단구동	939-6	답	2,420	78	김현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00, 1005동 504호(구미동, 무지개마을)			
변경	단구동	939-6	답	2,420	79	김현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00, 1005동 504호(구미동, 무지개마을)			
기정	단구동	1444	도	365	145	국 (건설부)				
기정	단구동	939-12	답	1,144	74	송진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2길 50-2(개운동)	원주 세무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	근저당권
기정	단구동	889	답	279	131	대한예수교장로회 원남교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39-38			
계				4,868	622					

□ 지장물조서(삭제_작성대상아님)

원주시 공고 제2024-183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3-10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원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관설동 134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3-10호)사업
   ○ 명칭: 관설동 도시계획시설 (대로3-10)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건설과)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구분	결정폭원(m)	연장(m)	금회시행(m)	비고
대로3-10호	25~35	1,200	B=25m, L=314.3m	당초: A=21,268㎡ 변경: A=22,29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02.24. ~ 2025.12.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7.5. ~ 2024.7.23.
   ○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있음)

■ 토지조서(당초)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344-3	답	2,582	1,09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우리자산신탁㈜				
2	원주시 관설동	산169-2	임	71,854	12,923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93	정대교				
3	원주시 관설동	1342-1	전	3,207	29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9	박광용				
4	원주시 관설동	1343	전	536	372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27	정상린				
5	원주시 관설동	1342-2	전	1,458	1,059	원주시 단구동 1478-4 유승아파트 105-1602	정화영				
6	원주시 관설동	산169-15	임	662	63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아파트 306-2001	조복희				
7	원주시 관설동	산169-4	임	992	992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5 신림동부아파트 103-103	임경자				
8	원주시 관설동	산169-1	임	205	7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14-2	노춘광				
9	원주시 관설동	산169-14	임	2,429	1,800	경북 영주시 구성로 142번길 20, 205동 1102호 (남산현대아파트)	강명구				
10	원주시 관설동	산169-16	임	336	72	광명시 하안동 702 고층주공아파트 503-110	오인숙				
11	원주시 관설동	산169-5	임	3,306	2,187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92-14	남궁은숙 외 1인				
12	원주시 관설동	산169-6	임	1,652	29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578-4	재단법인 선교유지재단				
계				89,219	21,268						

■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344-3	답	2,582	1,09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우리자산신탁㈜				
2	원주시 관설동	산169-2	임	71,854	12,923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93	정대교				
3	원주시 관설동	1342-1	전	3,207	29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9	박광용				
4	원주시 관설동	1343	전	536	372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27	정상린				
5	원주시 관설동	1342-2	전	1,458	1,059	원주시 단구동 1478-4 유승아파트 105-1602	정화영				
6	원주시 관설동	산169-15	임	662	63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아파트 306-2001	조복희				
7	원주시 관설동	산169-4	임	992	992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5 신림동부아파트 103-103	임경자				
8	원주시 관설동	산169-1	임	205	7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14-2	노춘광				
9	원주시 관설동	산169-14	임	2,429	1,925	경북 영주시 구성로 142번길 20, 205동 1102호 (남산현대아파트)	강명구				변경
10	원주시 관설동	산169-16	임	336	72	광명시 하안동 702 고층주공아파트 503-110	오인숙				
11	원주시 관설동	산169-5	임	3,306	2,251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92-14	남궁은숙 외 1인				변경
12	원주시 관설동	산169-6	임	1,652	680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578-4	재단법인선교유지재단				변경
13	원주시 관설동	산169-28	임	992	177	마산시 월영동 602-12 월영라이프타운 1404	신승희				변경
14	원주시 관설동	1286	전	420	10	원주시 치악로 1367-18(관설동)	배양순				변경
계				90,631	22,295						

강릉시 고시 제2024-2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강 릉 시 장

1. 사업의 명칭: 강릉자이르네 디오션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 이국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강릉시 송정동 산 77-3번지 외 5필지
   나. 규 모
      1) 대지 면적: 11,862.8593㎡
      2) 건축연면적: 42,793.2934㎡
      3) 주택 형별: 아파트 228세대
      (84Am²형 49세대, 84A1㎡형 1세대, 84A2㎡형 3세대, 84Bm²형 26세대, 84Cm²형 40세대, 84Dm²형 21세대, 101Am²형 1세대, 101A1㎡형 1세대, 109㎡형 42세대, 110㎡형 39세대, 115Dm²형 2세대, 124Dm²형 2세대, 134Pm²형 1세대)
      4) 사업 규모: 지하2층, 지상21층, 주3동,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5) 사 업 비: 125,610,866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23. 9. 15. ~ 2026. 11. 30.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 및 일괄 처리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개발행위허가(변경)
   나.「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변경)
6. 금회 변경사항
   - 사업시행기간 변경(~2026. 7. 31. → ~2026. 11. 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주택과(☎033-640-5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고시 제2024-242호

강릉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1-98호(1981. 3. 20.)로 최초 결정되고 강릉시 고시 제2024-42호(2024. 1. 29.)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릉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강 릉 시 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지변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사업

2) 명 칭: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사업의 면적(변경)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전체	금회분	
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659,355	659,252	659,252	421	-

2) 토지이용계획(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비□고
구□□□□□□분	부 지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9,355	감)103	659,252	100.00	-	100.00	
교사(건축)부지	206,219	-	206,219	31.28	-	31.28	
운동장부지	42,471	-	42,471	6.44	-	6.44	
도로부지	61,579	증)138	61,717	9.34	증)0.03	9.37	
광장부지	33,849	-	33,849	5.13	-	5.13	
주차장부지	49,103	-	49,103	7.45	-	7.45	
녹지부지	266,134	감)241	265,893	40.36	감)0.03	40.33	

3) 건축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가) 건폐율 및 용적률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7,685.41	-	57,685.41	212,112.06	-	212,112.06	
건 폐 율 (%)			용 적 률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75	-	8.75	32.17	-	32.17	

나) 건축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
		건 축 면 적 (㎡)			건 축 연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7,685.41	-	57,685.41	212,112.06	-	212,112.06	
세부 시설	건축	56,651.78	-	56,651.78	211,078.43	-	211,078.43	
	공작물	897.63	-	897.63	897.63	-	897.63	
	체육장	136.00	-	136.00	136.00	-	136.00	

다) 건축세부시설 총괄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시 설 규 모						비고
			건 축 면 적 (㎡)			건 축 연 면 적 (㎡)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인문 과학관 외48동	인문 과학관 외48동	56,651.78	-	56,651.78	211,078.43	-	211,078.43	
교육 기본 시설	인문 과학관 외21동	인문 과학관 외21동	30,811.17	-	30,811.17	122,647.10	-	122,647.10	
지원 시설	학군단 외19동	학군단 외19동	18,987.74	-	18,987.74	65,512.40	-	65,512.40	
부속 시설	치과병원 외6동	치과병원 외6동	6,852.87	-	6,852.87	22,918.93	-	22,918.93	

라) 공작물세부시설 총괄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시 설 규 모 (㎡)						비고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창고 외5동	창고 외5동	897.63	-	897.63	897.63	-	897.63	
지원 시설	창고	창고	186.09	-	186.09	186.09	-	186.09	
부속 시설	식물원 외4동	식물원 외4동	711.54	-	711.54	711.54	-	711.54	

마) 운동장(체육장) 건축물 총괄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시 설 규 모 (㎡)						비고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대운동장 (화장실)외3동	대운동장 (화장실)외3동	136.00	-	136.00	136.00	-	136.00	
체육장	대운동장 (화장실)	대운동장 (화장실)	26.00	-	26.00	26.00	-	26.00	(화장실)
	소운동장 (라커룸)	소운동장 (라커룸)	70.00	-	70.00	70.00	-	70.00	(라커룸)
	소운동장 (화장실)	소운동장 (화장실)	17.00	-	17.00	17.00	-	17.00	(화장실)
	소운동장 (샤워실)	소운동장 (샤워실)	23.00	-	23.00	23.00	-	23.00	(샤워실)
	테니스장	테니스장	-	-	-	-	-	-	-

바) 건축 세부시설표

－교육기본시설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층수(지하/지상)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0,739	－	200,739	56,651.78	－	56,651.78	211,078.43	－	211,078.43	
교육기본시설	소계						107,615	－	107,615	30,811.17	－	30,811.17	122,647.10	－	122,647.10	
	교-1	교-1	인문과학관	인문과학관	1/4	1/4	8,834	－	8,834	3,025.61	－	3,025.61	11,387.44	－	11,387.44	
	교-2	교-2	사회과학관	사회과학관	1/5	1/5	11,756	－	11,756	1,445.83	－	1,445.83	7,095.13	－	7,095.13	
	교-3	교-3	자연과학1호관	자연과학1호관	1/3	1/3	4,726	－	4,726	1,660.09	－	1,660.09	7,635.67	－	7,635.67	
	교-4	교-4	자연과학2호관	자연과학2호관	1/3	1/3	2,268	－	2,268	905.40	－	905.40	3,015.36	－	3,015.36	
	교-5	교-5	생명과학1호관	생명과학1호관	1/4	1/4	2,717	－	2,717	1,264.68	－	1,264.68	5,834.16	－	5,834.16	
	교-6	교-6	생명과학2호관	생명과학2호관	1/6	1/6	5,066	－	5,066	2,309.33	－	2,309.33	11,158.10	－	11,158.10	
	교-7	교-7	생명대강의실	생명대강의실	－/	－/	1,341	－	1,341	184.80	－	184.80	184.80	－	184.80	
	교-8	교-8	공학1호관	공학1호관	1/4	1/4	3,560	－	3,560	1,855.53	－	1,855.53	6,162.79	－	6,162.79	
	교-9	교-9	공학2호관	공학2호관	1/5	1/5	4,722	－	4,722	1,947.62	－	1,947.62	11,357.16	－	11,357.16	
	교-10	교-10	공대수리실험동	공대수리실험동	－/	－/	654	－	654	264.00	－	264.00	264.00	－	264.00	
	교-11	교-11	공동실험관	공동실험관	1/5	1/5	4,052	－	4,052	1,320.99	－	1,320.99	5,911.79	－	5,911.79	
	교-12	교-12	예술1호관	예술1호관	1/4	1/4	4,440	－	4,440	666.12	－	666.12	4,598.32	－	4,598.32	
	교-13	교-13	예술2호관	예술2호관	1/3	1/3	3,946	－	3,946	1,436.30	－	1,436.30	4,511.46	－	4,511.46	
	교-14	교-14	예체대실습실A	예체대실습실A	－/	－/	1,609	－	1,609	130.00	－	130.00	130.00	－	130.00	
	교-15	교-15	예체대실습실B	예체대실습실B	－/	－/	526	－	526	181.44	－	181.44	181.44	－	181.44	
	교-16	교-16	치학1호관	치학1호관	1/4	1/4	2,660	－	2,660	1,167.81	－	1,167.81	4,548.08	－	4,548.08	
	교-17	교-17	치학2호관	치학2호관	1/5	1/5	4,425	－	4,425	1,330.72	－	1,330.72	5,600.11	－	5,600.11	
	교-18	교-18	학생회관	학생회관	－/4	－/4	5,246	－	5,246	984.51	－	984.51	3,415.34	－	3,415.34	
	교-	교-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5	－/5	2,961	－	2,961	2,380.	－	2,380.	5,660.4	－	5,660.4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층수(지하/지상)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9	19								80		80	4		4	
	교-20	교-20	취업지원관	취업지원관	1/3	1/3	884	-	884	295.43	-	295.43	854.07	-	854.07	
	교-21	교-21	학술정보지원센터	학술정보지원센터	2/3	2/3	11,115	-	11,115	4,564.19	-	4,564.19	18,245.75	-	18,245.75	
	교-22	교-22	대학본부	대학본부	1/4	1/4	6,897	-	6,897	1,489.97	-	1,489.97	4,895.73	-	4,895.73	
	교-23	교-23	체육과학관	체육과학관	1/4	1/4	2,390	-	2,390	-	-	-	-	-	-	향후계획
	교-24	교-24	후생복지관	후생복지관	1/3	1/3	4,281	-	4,281	-	-	-	-	-	-	향후계획
	교-25	교-25	융합교육관	융합교육관	1/3	1/3	6,539	-	6,539	-	-	-	-	-	-	향후계획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층수(지하/지상)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지원시설	소 계						70,537	-	70,537	18,987.74	-	18,987.74	65,512.40	-	65,512.40	
	지-1	지-1	학군단	학군단	1/2	1/2	1,169	-	1,169	459.27	-	459.27	1,104.47	-	1,104.47	
	지-2	지-2	체육관	체육관	1/2	1/2	4,319	-	4,319	1,740.47	-	1,740.47	2,847.44	-	2,847.44	
	지-3	지-3	보조체육관	보조체육관	-/1	-/1	815	-	815	343.06	-	343.06	343.06	-	343.06	
	지-4	지-4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3	-/3	3,211	-	3,211	139.67	-	139.67	377.40	-	377.40	
	지-5	지-5	야외음악당	야외음악당	1/1	1/1	2,676	-	2,676	157.80	-	157.80	234.97	-	234.97	
	지-9	지-9	이문관	이문관	1/3	1/3	2,330	-	2,330	411.79	-	411.79	1,176.67	-	1,176.67	
	지-10	지-10	명진관	명진관	/12	/12	2,334	-	2,334	475.73	-	475.73	4,313.24	-	4,313.24	
	지-11	지-11	학생생활원	학생생활원	1/12	1/12	10,038	-	10,038	2,975.37	-	2,975.37	14,011.14	-	14,011.14	
	지-12	지-12	제2식당	제2식당	-/1	-/1	1,353	-	1,353	631.23	-	631.23	631.23	-	631.23	
	지-14	지-14	치과병원복지관	치과병원복지관	-/2	-/2	1,054	-	1,054	192.55	-	192.55	177.00	-	177.00	
	지-15	지-15	문화관	문화관	1/2	1/2	6,133	-	6,133	2,830.94	-	2,830.94	5,496.20	-	5,496.20	
	지-16	지-16	기숙사	기숙사	1/9	1/9	3,302	-	3,302	984.16	-	984.16	7,573.74	-	7,573.74	
	지-17	지-17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1/5	1/5	5,641	-	5,641	1,807.32	-	1,807.32	8,947.30	-	8,947.30	
	지-18	지-18	국제교류관	국제교류관	1/5	1/5	5,318	-	5,318	1,043.32	-	1,043.32	3,626.30	-	3,626.30	
	지-20	지-20	스포츠컴플렉스	스포츠컴플렉스	-/2	-/2	6,155	-	6,155	2,165.38	-	2,165.38	2,567.16	-	2,567.16	
	지-21	지-21	쉼뜨락	쉼뜨락	-/1	-/1	368	-	368	196.66	-	196.66	188.20	-	188.20	

	지-22	지-22	학민관	학민관	-/3	-/3	1,395	-	1,395	515.82	-	515.82	992.11	-	992.11	
	지-24	지-24	저수조펌프실	저수조펌프실	1/1	1/1	110	-	110	32.00	-	32.00	32.00	-	32.00	
	지-25	지-25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1	-/1	687	-	687	149.94	-	149.94	149.94	-	149.94	
	지-26	지-26	BTL생활관	BTL생활관	1/10	1/10	12,129	-	12,129	1,735.26	-	1,735.26	10,722.83	-	10,722.83	
부속시설	소 계						22,587	-	22,587	6,852.87	-	6,852.87	22,918.93	-	22,918.93	
	부-1	부-1	치과병원	치과병원	1/6	1/6	5,240	-	5,240	2,631.12	-	2,631.12	10,294.84	-	10,294.84	
	부-2	부-2	파워플랜트	파워플랜트	-/2	-/2	2,351	-	2,351	746.92	-	746.92	784.03	-	784.03	
	부-3	부-3	박물관수장고	박물관수장고	-/1	-/1	541	-	541	181.44	-	181.44	181.44	-	181.44	
	부-4	부-4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1/2	1/2	1,419	-	1,419	706.09	-	706.09	1,460.84	-	1,460.84	
	부-5	부-5	산학협력관	산학협력관	-/10	-/10	6,155	-	6,155	1,708.80	-	1,708.80	8,686.36	-	8,686.36	
	부-10	부-10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2	-/2	6,666	-	6,666	682.92	-	682.92	1,315.84	-	1,315.84	
	부-11	부-11	불용창고	불용창고	-/1	-/1	215	-	215	195.58	-	195.58	195.58	-	195.58	

사) 공작물 세부시설표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층수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480	-	5,480	897.63	-	897.63	897.63	-	897.63	
지원시설	기정	변경	소 계				2,763	-	2,763	186.09	-	186.09	186.09	-	186.09	
	지-13	지-13	사격장	창고	/1	/1	746	-	746	186.09	-	186.09	186.09	-	186.09	향후계획
	지-19	지-19	실습공장동	실습공장동	/1	/1	2,017	-	2,017	-	-	-	-	-	-	향후계획
부속시설	기정	변경	소 계				2,717	-	2,717	711.54	-	711.54	711.54	-	711.54	
	부-6	부-6	식물원	식물원	/1	/1	531	-	531	113.00	-	113.00	113.00	-	113.00	
	부-7	부-7	제1온실	제1온실	/1	/1	421	-	421	198.00	-	198.00	198.00	-	198.00	
	부-8	부-8	제2온실	제2온실	/1	/1	935	-	935	198.00	-	198.00	198.00	-	198.00	
	부-9	부-9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1	/1	190	-	190	114.54	-	114.54	114.54	-	114.54	
	부-12	부-12	전광판/버스정류장	전광판/버스정류장	/1	/1	640	-	640	88.00	-	88.00	88.00	-	88.00	

4) 기반시설계획

-운동장시설계획(변경없음)

시설명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체육장	소 계	3개소	42,471	-	42,471	136	-	136	136	-	136	
	체-1	대 운 동 장	32,660	-	32,660	26	-	26	26	-	26	1층(화장실)
	체-2	소 운 동 장	8,131	-	8,131	70	-	70	70	-	70	1층(라커룸)
						17	-	17	17	-	17	1층(화장실)
						23	-	23	23	-	23	1층(샤워실)
	체-3	테 니 스 장	1,680	-	1,680	-	-	-	-	-	-	

-도로시설계획(변경)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연 장(m)			면 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18	증)46	5,764	61,579	증)138	61,717	
기정	대로	1	1	25	단지내도로	광장1호	광장2호	198	-	198	4,889	-	4,889	개설
기정	대로	1	2	25	공공도로	도시계획도로 대2-7	소1-3	34	-	34	992	-	992	개설
기정	대로	1	3	25	공공도로	대1-5	광장1호	54	-	54	1,433	-	1,433	개설
기정	중로	1	1	20	단지내도로	대1-1	광장3호	81	-	81	1,923	-	1,923	개설
기정	중로	1	2	20	공공도로	도시계획도로 대2-3	광장1호	129	-	129	3,944	-	3,944	개설
기정	중로	2	1	16	단지내도로	광장2호	광장5호	299	-	299	4,513	-	4,513	개설
기정	중로	2	2	16	단지내도로	광장3호	광장7호	132	-	132	2,180	-	2,180	개설
기정	중로	2	3	16	단지내도로	야외음악당	소1-3	491	-	491	7,550	-	7,550	개설
기정	중로	3	1	12	단지내도로	광장2호	대학본부	140	-	140	1,730	-	1,730	개설
기정	중로	3	2	12	단지내도로	광장3호	중2-3	173	-	173	2,191	-	2,191	개설
기정	소로	1	1	10	단지내도로	대1-1	주차장1	134	-	134	1,259	-	1,259	개설
기정	소로	1	2	10	단지내도로	소2-2	녹지-12	182	-	182	1,928	-	1,928	개설
기정	소로	1	3	10	단지내도로	중2-3	소2-9	445	-	445	4,749	-	4,749	개설
기정	소로	1	4	10	단지내도로	주차장34	소1-3	65	-	65	660	-	660	개설
기정	소로	1	5	11.5	단지내도로	중3-2	소3-11	100	-	100	1,231	-	1,231	개설
기정	소로	2	1	8	단지내도로	중2-1	공동실험관	137	-	137	1,190	-	1,190	개설
기정	소	2	2	8	단지내도	소1-5	소1-2	91	-	91	838	-	838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연 장(m)			면 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로				로									
기정	소로	2	4	8	단지내도로	대1-1	주차장24	122	-	122	916	-	916	개설
기정	소로	2	5	8	단지내도로	중2-1	소2-7	344	-	344	1,229	-	1,229	개설
기정	소로	2	6	8	단지내도로	주차장36	이문관	40	-	40	375	-	375	개설
기정	소로	2	7	8	단지내도로	소2-5	광장5호	406	-	406	3,580	-	3,580	개설
기정	소로	2	8	8	단지내도로	소2-7	주차장16	89	-	89	884	-	884	개설
기정	소로	2	9	8	단지내도로	치과병원	소1-3	36	-	36	309	-	309	개설
기정	소로	2	10	8	단지내도로	소2-5	소2-5	75	-	75	545	-	545	개설

-도로시설계획(변경)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연 장(m)			면 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로	3	1	6	단지내도로	소2-1	공동실험관	50	-	50	326	-	326	개설
기정	소로	3	2	6	단지내도로	중2-1	공학2호관	85	-	85	523	-	523	개설
기정	소로	3	3	6	단지내도로	광장2호	소1-1	145	-	145	1,007	-	1,007	개설
기정	소로	3	4	6	단지내도로	소3-3	파워플랜트	12	-	12	52	-	52	개설
기정	소로	3	5	6	단지내도로	소3-3	창업보육센터	35	-	35	247	-	247	개설
기정	소로	3	6	6	공공도로	광장1호	지구외	108	-	108	706	-	706	개설
기정	소로	3	7	6	단지내도로	광장3호	주차장24	53	-	53	410	-	410	개설
기정	소로	3	8	6	단지내도로	중2-2	예술1호관	59	-	59	395	-	395	개설
기정	소로	3	9	6	단지내도로	중2-2	체육시설2	206	-	206	1,464	-	1,464	개설
기정	소로	3	10	6	단지내도로	중2-2	소3-9	24	-	24	153	-	153	개설
기정	소로	3	11	6	단지내도로	소3-15	소1-2	189	-	189	1,165	-	1,165	개설
기정	소로	3	12	6	단지내도로	주차장36	광장4	206	-	206	727	-	727	개설
기정	소로	3	13	4	보행자전용도로	소로1-2	도시계획도로 대2-7	46	-	46	206	-	206	개설
기정	소로	3	14	4	공공도로	구역외	소로3-11	98	-	98	1,062	-	1,062	개설
기정	소로	3	15	6	공공도로	소로1-3	소로2-3	363	-	363	1,928	-	1,928	개설
기정	소로	3	16	4	보행자전용도로	소로1-3	도시계획도로 대2-7	42	-	42	170	-	170	개설
신설	소로	3	17	3	보행자전용도로	소로1-3	도시계획도로 대2-7	-	증)46	46	-	증)138	138	금회계획

－광장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세 부 시 설 명	단 위	시 설 규 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광 장	소 계			33,849	－	33,849	
	광－1	교통광장	개소	7,947	－	7,947	완료
	광－2	교통광장	개소	1,046	－	1,046	완료
	광－3	교통광장	개소	2,450	－	2,450	완료
	광－4	교통광장	개소	322	－	322	완료
	광－6	미관광장	개소	9,486	－	9,486	완료
	광－7	미관광장	개소	1,345	－	1,345	완료
	광－8	미관광장	개소	6,371	－	6,371	완료
	광－10	미관광장	개소	4,481	－	4,481	완료
	광－11	미관광장	개소	401	－	401	완료

-주차장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세 부 시 설 명	단 위	시 설 규 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차 장	소계	-	-	49,103	-	49,103	
	주-1	노외주차장	개소	472	-	472	개설
	주-2	노외주차장	개소	196	-	196	개설
	주-3	노외주차장	개소	65	-	65	개설
	주-4	노외주차장	개소	6,487	-	6,487	개설
	주-6	노외주차장	개소	410	-	410	개설
	주-7	노외주차장	개소	85	-	85	개설
	주-8	노외주차장	개소	1,304	-	1,304	개설
	주-9	노외주차장	개소	639	-	639	개설
	주-10	노외주차장	개소	1,304	-	1,304	개설
	주-12	노외주차장	개소	1,140	-	1,140	개설
	주-13	노외주차장	개소	515	-	515	개설
	주-14	노외주차장	개소	2,191	-	2,191	개설
	주-15	노외주차장	개소	69	-	69	개설
	주-16	노외주차장	개소	4,309	-	4,309	개설
	주-17	노외주차장	개소	540	-	540	개설
	주-18	노외주차장	개소	176	-	176	개설
	주-19	노외주차장	개소	138	-	138	개설
	주-20	노외주차장	개소	1,272	-	1,272	개설
	주-22	노외주차장	개소	267	-	267	개설
	주-23	노외주차장	개소	997	-	997	개설
	주-24	노외주차장	개소	2,763	-	2,763	개설
	주-25	노외주차장	개소	1,298	-	1,298	개설
	주-26	노외주차장	개소	5,959	-	5,959	개설
	주-27	노외주차장	개소	2,596	-	2,596	개설
	주-28	노외주차장	개소	70	-	70	개설
	주-29	노외주차장	개소	421	-	421	개설
	주-30	노외주차장	개소	460	-	460	개설
	주-31	노외주차장	개소	602	-	602	개설
	주-32	노외주차장	개소	79	-	79	개설
	주-33	노외주차장	개소	115	-	115	개설
	주-34	노외주차장	개소	910	-	910	개설
	주-35	노외주차장	개소	161	-	161	개설
	주-36	노외주차장	개소	6,493	-	6,493	개설
	주-37	노외주차장	개소	757	-	757	개설
	주-39	노외주차장	개소	1,537	-	1,537	개설
	주-41	노외주차장	개소	2,306	-	2,306	개설

-녹지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세부 시설명	단 위	시 설 규 모 (㎡)			비 고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소계		-	-	266,134	감)241	265,893	
	녹-1	녹-1	경관녹지	개소	2,297	-	2,297	조성완료
	녹-2	녹-2	경관녹지	개소	3,740	-	3,740	조성완료
	녹-3	녹-3	경관녹지	개소	2,505	-	2,505	조성완료
	녹-4	녹-4	경관녹지	개소	8,053	-	8,053	조성완료
	녹-5	녹-5	경관녹지	개소	192,286	-	192,286	조성완료
	녹-6	녹-6	경관녹지	개소	2,945	-	2,945	조성완료
	녹-7	녹-7	경관녹지	개소	349	-	349	조성완료
	녹-8	녹-8	경관녹지	개소	1,182	-	1,182	조성완료
	녹-9	녹-9	경관녹지	개소	3,115	-	3,115	조성완료
	녹-10	녹-10	경관녹지	개소	8,966	-	8,966	조성완료
	녹-11	녹-11	경관녹지	개소	4,709	-	4,709	조성완료
	녹-12	녹-12	경관녹지	개소	4,563	-	4,563	조성완료
	녹-13	녹-13	경관녹지	개소	2,597	-	2,597	조성완료
	녹-14	녹-14	경관녹지	개소	4,106	감)241	3,865	금회계획
	녹-15	녹-15	경관녹지	개소	285	-	285	조성완료
	녹-16	녹-16	경관녹지	개소	7,110	-	7,110	조성완료
	녹-17	녹-17	경관녹지	개소	16,815	-	16,815	조성완료
	녹-18	녹-18	경관녹지	개소	511	-	511	조성완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구 분	내 용
법인명	(학)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법인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대표자	총장 박 덕 영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실시계획인가일	2024년 12월 31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사.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비 내역

1) 총공사비: 59백만원

2) 자금 조달 투입 계획: 사업시행자 100%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붙임』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47	675,460	감)103	675,357	659,355	감)103	659,252					
1	유천동	15-7	도	7	-	7	7	-	7	권○기	강릉시 유산동			
2	유천동	30-4	학	460	-	460	460	-	460	국(교육부)				
3	유천동	34-2	학	119	-	119	119	-	119	국(교육부)				
4	유천동	37-1	대	580	-	580	580	-	580	국(교육부)				
5	유천동	37-6	학	157	-	157	157	-	157	국(교육부)				
6	유천동	37-7	전	352	-	352	352	-	352	국(교육부)				
7	유천동	37-8	도	156	-	156	156	-	156	국(교육부)				
8	유천동	38	학	378	-	378	378	-	378	국(교육부)				
9	유천동	38-1	학	78	-	78	78	-	78	국(교육부)				
10	유천동	40	학	935	-	935	935	-	935	국(교육부)				
11	유천동	40-2	학	942	-	942	942	-	942	국(교육부)				
12	유천동	40-3	도	1,694	-	1,694	1,694	-	1,694	국(교육부)				
13	유천동	40-4	도	134	-	134	91	-	91	국(교육부)				
14	유천동	40-1	도	1,198	-	1,198	1,198	-	1,198	국(교육부)				
15	유천동	43	학	161,721	감)103	161,618	159,290	감)103	159,187	국(교육부)				
16	유천동	43-5	도	81	-	81	81	-	81	국(교육부)				
17	유천동	43-6	도	298	-	298	251	-	251	국(교육부)				
18	유천	50-2	도	30	-	30	30	-	30	미등기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													
19	유천동	75-2	도	3,646	-	3,646	3,640	-	3,640	국(교육부)				
20	유천동	84	답	3,233	-	3,233	3,144	-	3,144	국(교육부)				
21	유천동	85	답	743	-	743	300	-	300	국(교육부)				
22	유천동	98-1	대	387	-	387	357	-	357	국(교육부)				
23	유천동	98-2	유	23	-	23	23	-	23	권○징	강릉시 유천동			
24	유천동	255-8	전	122	-	122	122	-	122	국(교육부)				
25	유천동	262-1	학	1,367	-	1,367	1,367	-	1,367	국(교육부)				
26	유천동	264-1	학	1,457	-	1,457	1,457	-	1,457	국(교육부)				
27	유천동	276-1	학	24,360	-	24,360	24,360	-	24,360	국(교육부)				
28	유천동	730-8	학	59	-	59	59	-	59	국(기획재정부)				
29	유천동	733	도	7,499	-	7,499	3	-	3	국(국토교통부)				
30	유천동	산32	임	7,270	-	7,270	7,270	-	7,270	국(교육부)				
31	지변동	70-4	학	2,106	-	2,106	2,106	-	2,106	국(교육부)				
32	지변동	101-3	학	106	-	106	106	-	106	국(교육부)				
33	지변동	102-5	임	175	-	175	175	-	175	국(교육부)				
34	지변동	102-6	학	248	-	248	248	-	248	국(교육부)				
35	지변동	104-3	도	1	-	1	1	-	1	전○우	강릉시 지변동			
36	지변동	109-2	도	46	-	46	46	-	46	미등기				
37	지변	110-	도	13	-	13	13	-	13	전○찬	강릉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	2									지변동			
38	지변동	123	학	441,495	-	441,495	436,402	-	436,402	국(교육부)				
39	지변동	123-2	도	519	-	519	108	-	108	국(교육부)				
40	지변동	123-3	도	317	-	317	317	-	317	국(교육부)				
41	지변동	123-6	도	310	-	310	310	-	310	국(교육부)				
42	지변동	197-1	대	248	-	248	248	-	248	미등기				
43	지변동	293-1	도	36	-	36	20	-	20	국(교육부)				
44	지변동	714-9	학	40	-	40	40	-	40	국(기획재정부)				
45	지변동	산20	임	4,165	-	4,165	4,165	-	4,165	강릉○씨 종중				
46	지변동	산21-2	임	5,851	-	5,851	5,851	-	5,851	국(교육부)				
47	지변동	산21-3	임	298	-	298	298	-	298	권○윤	강릉시 홍제동			
										정○인	강릉시 교동			

강릉시 공고 제2024-239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44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24-164호(2024.5.1.)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홍제동 568-1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44호선) 개설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 릉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홍제동 56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4호선) 사업

2)명 칭: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4호선)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금회 시행						
소로	1	144	6.0~ 10.0	국지 도로	376	376	중 1-38 홍제 569-8답	홍제 558-106임	일반도로	-	강릉시 고시 제2024-164호 (2024.5.1)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법인의 주소 및 명칭

○ 주 소 :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길 20, 204호(포남동)

○ 명 칭 : 주식회사 유천하이타운

나.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강릉시 홍제동 경강로 1928번길 11 두두빌딩 1층

○ 성 명 : 엄 태 호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6년 07월 30일

바. 자금조달계획

1) 총공사비: 500백만원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1-144호선	L=376.0m, B=6.0~10.0m	도시계획시설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귀속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계				10,067	3,043			
1	홍제동	557-1	답	1,181	413	강릉시		
2	홍제동	558-105	전	861	103	강릉시		
3	홍제동	558-106	임	494	11	강릉시		
4	홍제동	558-111	임	104	47	강릉시		
5	홍제동	558-112	임	186	5	강릉시		
6	홍제동	558-137	전	26	1	강릉시		
7	홍제동	558-138	임	70	1	강릉시		
8	홍제동	564-3	답	855	280	강릉시		
9	홍제동	564-4	답	865	238	강릉시		
10	홍제동	568-1	답	956	463	강릉시		
11	홍제동	569-5	답	439	297	강릉시		
12	홍제동	569-6	답	330	225	강릉시		
13	홍제동	569-8	답	423	381	강릉시		
14	홍제동	569-1	답	1,746	101	강릉시		
15	홍제동	973-1	구	1,222	458	국(기획재정부)		
16	홍제동	973-7	구	29	10	국(기획재정부)		
17	홍제동	973-8	대	255	8	이○형	강릉시 선수촌로	
18	홍제동	571-5	임	25	1	이○형	강릉시 선수촌로	

강릉시 공고 제2024-1102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열람 · 공고

강원도고시 제2017-322호(2017.8.18.)로 최초 결정된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강 릉 시 장

1.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동면 상시동리 128-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 사업

2) 명 칭: 강동면사무소 앞 교차로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	금회시행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4,171	150	광장11호	하시동리 산260-1	일반도로	강원도 고시 제2017-322호 (2017.8.18.)	

2) 사업면적 및 연장

- 폭원(B) ⇒ 35m
- 연장(L) ⇒ 총연장 4,171m → 금회시행 150m
- 면적(A) ⇒ 4,454㎡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2) 성 명: 강릉시장(도로과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4년 12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

1) 총 사업비: 534,650,000원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성 후 강릉시에 귀속될 예정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17	5,388	4,454		
1	강동면 상시동리	128-3	도	552	552	국토교통부	
2	강동면 상시동리	146-12	도	1,097	1,065	건설교통부	
3	강동면 상시동리	129-3	도	542	542	국토교통부	
4	강동면 상시동리	129-2	도	122	11	국토교통부	
5	강동면 상시동리	152-5	도	1,127	579	국토교통부	
6	강동면 상시동리	876-14	도	132	86	건설교통부	
7	강동면 상시동리	147-6	도	114	114	건설교통부	
8	강동면 상시동리	130-2	도	413	285	국토교통부	
9	강동면 상시동리	152-8	도	82	82	기획재정부	
10	강동면 상시동리	130-5	답	40	40	기획재정부	
11	강동면 상시동리	130-8	도	25	25	기획재정부	
12	강동면 상시동리	146-16	도	88	88	강릉시	
13	강동면 상시동리	130-3	도	228	170	건설부	
14	강동면 상시동리	130-4	도	198	198	국토교통부	
15	강동면 상시동리	146-15	도	360	351	국토교통부	
16	강동면 상시동리	146-14	도	77	75	국토교통부	
17	강동면 상시동리	146-13	도	191	191	국토교통부	

2.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2024. 6. 25 ~ 7. 9.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 (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7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서

① 건 명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열람·공고				
② 열람의견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③ 의 견 제 출 인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④ 의 견					

강릉시 공고 제2024-1151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재열람 · 공고

강원도 고시 제70.71호(1977. 4. 19.)로 최초 결정된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강 릉 시 장

1.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노암동 280-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 사업

2) 명 칭: 노암동 너래바위~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	금회시행						
도로	소로	2	9	8	국지도로	330	112	대3-1 노암 245-2	소2-10 노암 280-4	일반도로		강원도고시 제70.71호 (1977.4.19.)	

2) 사업면적 및 연장

- 폭원(B) ⇒ 8m
- 연장(L) ⇒ 총연장 330m → 금회시행 112m
- 면적(A) ⇒ 1,02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2) 성 명: 강릉시장(도로과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4년 12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

1) 총 사업비: 238,160,000원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성 후 강릉시에 귀속될 예정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 계			15	27,650	1,029			
1	노암동	280-10	대	72	38	강릉시		
2	노암동	288-35	도	33	28	강릉시		
3	노암동	288-2	도	149	142	강릉시		
4	노암동	281-9	대	49	49	강릉시		
5	노암동	288-37	대	39	22	강릉시		
6	노암동	282-16	대	39	38	강릉시		
7	노암동	284	도	291	144	강릉시		
8	노암동	824-29	철	41	39	국토교통부		
9	노암동	272-2	철	2,877	147	국토교통부		
10	노암동	272-5	답	77	50	강릉시		
11	노암동	824-28	도	93	2	기획재정부		
12	노암동	824-93	도	23,719	159	기획재정부		
13	노암동	272-12	도	171	171	강릉시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4. 6. 25. ~ 7. 9.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 (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7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서

① 건 명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소유자등 의견 청취 재열람·공고				
② 열람의견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③ 의 견 제 출 인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④ 의 견					

강릉시 공고 제2024-117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6호선, 소로2-200호선, 소로2-392호선, 소로2-86호선)사업 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

강릉시 고시 제2023-226호(2023.06.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1-136호선, 소로2-200호선, 소로2-392호선, 소로2-86호선)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강 릉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강릉 도시계획도로(소로1-136호선,소로2-200호선,소로2-392호선,소로2-86호선)사업

2. 사 업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입암동 52-2 일원

3. 사업 시행자
   가. 성명: 주식회사 아라마루
   나.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08, 2층(유동)

4.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표시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강릉시)	지번(원래지번)	지목	편입면적	단위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1	입암동	52-2	도	3	㎡	1/1	심*윤	강릉시 입암동 *				

5. 사업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	금회시행				
기정	소로	1	136	10	국지도로	104	104	대로3-8호선 입암 75-2전	입암 61-8과	강원도고시 제2011-49호 (2011. 01. 28)	-
기정	소로	2	200	8	국지도로	48	48	소로2-392호선 입암 53-7잡	소로1-136호선 입암 61-23과	-	-
기정	소로	2	392	8	국지도로	81	81	소로2-200호선 입암 56-1도	소로2-86호선 입암 50-4대	-	-
기정	소로	2	86	8	국지도로	315	315	대로3-10호선 입암 51-17도	소로-14호선 입암 64-16과	강원도고시 제78-85호 (1978. 03. 27)	-

6.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7. 1. ~ 2024. 7. 17.(16일간)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강릉시청 6층 도시과(강릉대로 33) ☎033-640-5766

[붙임] 의견서

의 견 서

1.제 목		강릉 도시계획도로(소로1-136호선, 소로2-200호선, 소로2-392호선,소로2-86호선)사업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비 고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시 고시 제2024-115호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신항 진입도로건설공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고시(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30호)된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동 해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승인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구역계 추암동16-4철	일반도로	추암 이주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동해고제30호 (2005. 7. 29.)
변경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구역계 추암동16-4철	일반도로	추암 이주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중로1-37호선 접속부종단조정으로 인한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32	20	집산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도로	북평 산업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동해고제23호 (2002. 8. 19.)
변경	중로	1	32	20	집산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도로	북평 산업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모퉁이 변 조정
신설	중로	1	37	23	집산도로	745 (61)	동해신항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부지	대로2-3 추암동282	일반도로			동해신항(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 )내 연장은 산업단지내 연장임.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완충녹지 (삼척선 철도변)	삼척선 철도변양측	74,674.4	감)231	74,443.4	건고 제705호 (1989.12.6.)	-

3.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해시 고시 제2024-117호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동해시고시 제98호(2020.06.26.)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해시고시 제195호(2021.12.29.)로 변경 인가된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동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가. 동해시 천곡동 산1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가.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사업

3.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가. 면적 : (당초) A = 832,640㎡ ⇒ (변경) A = 830,321㎡ (감 2,319㎡)
   ☞ 동해시고시 제14호(24.1.26.)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변동사항 반영

구분	시설구분	시설결정	기시공(㎡)	금회집행(㎡)	향후집행(㎡)	비 고
공원	근린공원	A=832,640㎡	-	4,995	825,326	당 초
		A=830,321㎡				변 경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동해시장(녹지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6. 사업의 착수 · 준공 예정일 (변경없음)

가. 2020. 06. 26. ~ 2024.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분할 ·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구역 내 토지이동 증감 반영(사업구역 변경 없음)

가.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용정동	277-25	임	2,051	2,051	영*********종중회	동해시 쇄운동 441			
2	용정동	301-1	구거	2,165	63	국(국토해양부)				
3	용정동	324-1	천	622	63	국(기획재정부)				
4	용정동	325-1	전	92	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용정동	326	전	1,402	1,402	동해시				
6	용정동	327	전	2,384	2,3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	용정동	499	하천	1,061	1,061	국(기획재정부)				
8	지흥동	4	임	1,236	1,236	정*진	동해시 부곡동 85-6			
9	지흥동	5	전	912	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	천곡동	101-1	전	1,395	1,395	박*순	강원도 동해시 천곡1길 58, 102동 104호(천곡동, 한움빌리지)			
11	천곡동	107-1	전	817	817	동해시				
12	천곡동	107-2	잡	2,574	2,574	동해시				
13	천곡동	107-3	잡	1,269	1,269	동해시				
14	천곡동	125-1	전	264	264	동해시				
15	천곡동	126	전	1,438	1,438	동해시				
16	천곡동	126-1	대	200	200	동해시				
17	천곡동	126-2	임	2,137	2,137	동해시				
18	천곡동	336-1	전	50	50	동해시				
19	천곡동	341-1	전	156	156	동해시				
20	천곡동	342-1	전	823	823	동해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1	천곡동	343-1	전	1,947	1,947	동해시				
22	천곡동	343-2	전	1,574	1,574	동해시				
23	천곡동	344	전	1,660	1,6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4	천곡동	345	임	1,630	1,6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5	천곡동	346	임	618	618	동해시				
26	천곡동	347	임	152	152	국(재정경제원)				
27	천곡동	348	전	635	635	최*식	동해시 천곡동 409			
						최*철	동해시 천곡동 409			
						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206동 10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8	천곡동	349	전	3,201	3,2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9	천곡동	349-1	전	1,192	1,1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0	천곡동	350	임	1,329	1,3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1	천곡동	351	임	572	5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2	천곡동	352	임	1,299	1,299	김*화	동해시 갯목길 144			
33	천곡동	353	임	519	5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4	천곡동	354	전	136	1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	천곡동	356-1	전	36	36	동해시				
36	천곡동	357-1	전	3	3	동해시				
37	천곡동	1003	대	41,191	30,625	동해시				
38	천곡동	1090-33	도	6,930.9	3,844	동해시				
39	용정동	산26	임	2,637	2,637	남******파종중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40	용정동	산26-2	임	146	146	동해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41	용정동	산26-3	임	39	21	동해시				
42	용정동	산27-1	임	10,294	10,2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3	용정동	산27-2	임	8,446	8,446	정*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7, 102동 1803호			
44	용정동	산27-13	임	2,587	2,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5	용정동	산27-7	도로	1,875	685	동해시				
46	용정동	산28	임	2,254	2,2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7	용정동	산28-1	임	27	27	동해시				
48	용정동	산29	임	553	553	동해시				
49	용정동	산29-2	도로	1,082	395	동해시				
50	용정동	산71-3	임	590	22	동해시				
51	용정동	산75	임	397	334	동해시				
52	용정동	산76	임	397	18	동해시				
53	용정동	산77-2	도로	3,174	689	국(건설부)				
54	용정동	산80-6	임	23,874	23,8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5	용정동	산80-1	임	9918	99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6	용정동	산80-7	임	965	9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7	용정동	산81-1	임	1,489	1,4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	용정동	산82-1	임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	용정동	산88-1	임	13,845	13,845	남******파종중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60	용정동	산89	임	18,248	18,2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	용정동	산90-1	임	13,163	13,1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2	용정동	산91	임	42,546	42,546	강원도교육감	춘천시 옥천동 2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63	용정동	산92	임	15,868	15,868	삼********파**** 종중	동해시 송정동 719			
64	용정동	산93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5	용정동	산94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6	용정동	산95-1	임	2,975	2,975	동해시				
67	용정동	산95-3	임	17,619	17,6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8	용정동	산96-1	임	13,828	13,828	김*기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84-1(발한동)			
69	용정동	산97-3	임	2,834	2,8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0	용정동	산97-4	임	4,338	4,338	이*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4, 504동 202호(양산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5단지)			
71	용정동	산98-1	임	1,349	1,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2	지흥동	산3-1	임	163	163	삼*****파장*종중	동해시 송정동 801			
73	지흥동	산4-1	임	264	264	삼*****파장*종중	동해시 송정동 801			
74	지흥동	산5	임	23,405	23,405	동해시				
75	지흥동	산6-2	임	6,988	6,988	삼**씨감*공파	동해시 천곡동 373-3			
76	지흥동	산19-5	임	46,566	46,566	삼**씨감*공파	동해시 천곡동 373-3			
77	천곡동	산12-2	임	5,982	5,982	남**씨첨**파종중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78	천곡동	산12-5	임	829	829	남**씨첨**파종중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79	천곡동	산12-7	임	212	212	동해시				
80	천곡동	산13-1	임	12,137	12,137	(재)송****단	동해시 송정동 1058			
81	천곡동	산13-2	임	348	348	(재)송****단	동해시 송정동 1058			
82	천곡동	산14	임	2,975	2,9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3	천곡동	산15-1	임	50,083	50,083	홍*표	동해시 천곡동 962-26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홍*영	강원도 강릉시 원대로20번길 10-1 (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4	천곡동	산15-2	임	2,579	2,579	동해시				
85	천곡동	산16-1	임	83,604	83,604	김*백	동해시 용정동 213			
						동해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6	천곡동	산16-2	임	2,975	2,975	동해시				
87	천곡동	산16-3	임	1,884	1,884	국(재정경제원)				
88	천곡동	산16-4	임	2,777	2,777	이*매	동해시 용정동 354			
89	천곡동	산17	임	3,967	3,9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0	천곡동	산18	임	2,380	2,380	동해시				
91	천곡동	산19-1	임	3,967	3,967	동해시				
92	천곡동	산19-2	임	3,074	3,0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3	천곡동	산20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4	천곡동	산21	임	3,967	3,967	박*분	동해시 동굴로 15,502동 201호			
						김*수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5길 20			
						동해시				
95	천곡동	산22	임	1,190	1,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5길 20			
96	천곡동	산23-1	임	35,940	31,682	동해시				
97	천곡동	산23-2	임	893	893	동해시				
98	천곡동	산24-1	임	4,086	4,0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옥	강원도 동해시 망상2길 40-1(망상동)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47-1			
						이*섭	강원도 동해시 망상2길 40-1(망상동)			
99	천곡동	산25	임	14,959	11,802	동해시				
100	천곡동	산26-3	임	4,846	4,8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1	천곡동	산26-7	임	36,998	36,998	동해시				
102	천곡동	산26-10	임	377	377	동해시				
103	천곡동	산26-12	임	18,753	18,7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4	천곡동	산26-13	임	4,088	4,088	동해시				
105	천곡동	산42-6	임	8,766	5,617	동해시				
106	천곡동	산44-1	임	1,253	1,253	동해시				
107	천곡동	산45-1	임	22,728	22,7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동해시				
108	천곡동	산60-2	임	5,851	5,8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동해시				
109	천곡동	산60-3	임	4,055	4,055	동해시				
110	천곡동	산60-5	임	1,057	1,057	동해시				
111	천곡동	산60-7	임	317	317	동해시				
112	천곡동	산61-5	임	85	85	동해시				
113	천곡동	산61-6	임	267	267	동해시				
114	천곡동	산61-7	임	62	62	동해시				
115	천곡동	산61-8	임	552	552	동해시				
116	천곡동	산61-9	임	1,332	1,332	동해시				
117	천곡동	산62	임	10,413	10,413	정*화	동해시 용정동 14			
						정*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8,지층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8	천곡동	산63-1	임	38	38	동해시				
119	천곡동	산64-1	임	168	168	동해시				
120	천곡동	산66-2	임	8,665	8,665	동해시				
121	천곡동	산66-3	임	34	34	동해시				
122	천곡동	산66-4	임	12	12	동해시				
123	천곡동	산68-2	임	23,597	23,597	동해시				
124	천곡동	산69-1	임	730	730	동해시				
125	천곡동	산70-2	임	3,901	3,901	동해시				
126	천곡동	산71	임	298	298	박*란	삼척군 미로면 상거노리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7	천곡동	산72-1	임	10,211	10,211	동해시				
128	천곡동	산73-1	임	1,672	1,672	동해시				
129	천곡동	산74-1	임	27,074	27,074	박*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9			
						박*화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498-6			
						박*우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6 효성빌라 3동 202호			
						문*준	강원도 동해시 샘실3길 89, 401호(천곡동, 대주연립)			
130	천곡동	산74-2	임	2,876	2,876	동해시				
131	천곡동	산74-3	임	793	7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2	천곡동	산75-2	임	15,944	15,944	변*권	서울 성동구 신당동 25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3	천곡동	산76-7	임	15,493	15,4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충의로 19			
134	천곡동	산76-4	도로	214	70	국(국토교통부)				
합 계		총 134필지		862,732.9	830,321					

삼척시 고시 제2024-140호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의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척 원당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48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삼 척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

가. 계획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대상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당동 100-2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 조서

- 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48	10	국지 도로	71	대로3-6 원당동 99-2	원당동 111-8	일반 도로	서부 초교	2022. 11. 4. (삼척시고시 제161호)	오십천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22.11. 4., 삼척-161호)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48	소로1-48	• 선형 일부 변경	• 지적 분할 등 현황을 고려한 도로 모퉁이 등 선형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서부 초등학교	초등 학교	원당동 114 일원	13,827	감) 15	13,812	1981. 3. 16. (강원도고시 제8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2022.11. 4., 삼척-161호)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서부 초등학교	• 면적 축소 : 13,827㎡ → 13,812㎡ (감 15㎡)	• 소로1-48 개설 관련 지적(원당동 111-9번지) 분할선을 반영한 경계 일부 조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www.eum.go.kr) 등재

Ⅱ.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48호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당동 10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나. 명칭 :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시장(도시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가. 사업의 면적: 1,432㎡

※【 변경사항 】[기정] 1,409㎡ → [변경] 1,432㎡ (증 23㎡)

나. 사업의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	노선명	사업면적(㎡)	사업규모(m)	비 고
금회 시행	교통시설(도로)	소로1-48호선	1,432	L=70.0 B=10.0	L(연장), B(폭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23. 5. 19.

나. 준공예정일 :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원당동	111-8	도	80.0	64.0	삼척시	공				
2	원당동	111-2	대	62.0	62.0	삼척시	공				
3	원당동	111-9	대	71.0	71.0	삼척시	공				
4	원당동	100-20	종	2.0	2.0	삼척시	공				
5	원당동	100-1	대	455.0	455.0	삼척시	공				
6	원당동	100-2	도	394.0	292.0	건설교통부	국				
7	원당동	100-6	전	60.0	60.0	삼척시	공				
8	원당동	100-17	도	385.0	31.0	삼척시	공				
9	원당동	100-16	도	56.0	39.0	건설교통부	국				
10	원당동	100-18	도	49.0	49.0	삼척시	공				
11	원당동	99-3	도	28.0	22.0	삼척시	공				
12	원당동	99-2	도	438.0	276.0	삼척시	공				
13	원당동	100-8	도	3,604.0	8.0	건설교통부	국				
14	원당동	100-15	도	36.0	1.0	건설교통부	국				
합 계				5,720	1,432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 ※ 참고 - 변경 전(기정) 토지 조서. 삼척시 고시 제2023-177호(2023. 10. 20.) 고시사항 】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원당동	111-8	도	80.0	64.0	삼척시	공				
2	원당동	111-2	대	62.0	62.0	강원도(교육감)	공				
3	원당동	111-1	대	475.0	71.0	강원도(교육감)	공				
4	원당동	100-3	종	766.0	2.0	강원 삼척시 원당동 10*-*	대한**교				
5	원당동	100-1	대	455.0	455.0	삼척시	공				
6	원당동	100-2	도	394.0	292.0	건설교통부	국				
7	원당동	100-6	전	60.0	60.0	기획재정부	국				
8	원당동	100-17	도	385.0	31.0	삼척시	공				
9	원당동	100-16	도	56.0	39.0	건설교통부	국				
10	원당동	100-18	도	49.0	49.0	기획재정부	국				
11	원당동	99-3	도	28.0	22.0	삼척시	공				
12	원당동	99-2	도	438.0	253.0	삼척시	공				
13	원당동	114	학	3,604	8.0	건설부	국				
14	원당동	100-15	도	36.0	1.0	건설교통부	국				
합 계				6,888	1,409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 참고 사항 】

* 의제처리사항 협의 목록

관련 실·과·소	협의(허가) 내용	문서 번호	허가 기간	비 고
삼척시청 농정과	농지전용	농정과-8783호 (2023. 4. 27.)	-	농지전용협의 비대상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 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4-141호

삼척 도시계획시설(학교: 미로초등학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23-42호(2023. 3. 31.)로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미로초등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325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미로초등학교) 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 미로초등학교) 사업 - 다목적실 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신 순 금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3길 32(교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대지면적: 9,820㎡
   나. 사업규모

금회 사업 내용	비 고
• 다목적실 신축공사 - 건축면적: 496.87㎡ - 건축연면적: 496.87㎡	다목적실 신축(건축물)
• 부대토목공사 - 투수블럭(T60) A=109㎡ - 아스콘포장 A=703㎡ - 미끄럼포장 A=49㎡ - 중력식옹벽 H=1.0m, L=8m - 전석쌓기 H=0.6~1.4m, A=24.4㎡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부대토목공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수일 : 2023. 5. 19. (실시계획 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4. 7. 31.

【 ※ 변경사항 】준공예정일 [당초] 2024. 6. 30. → [변경] 2024.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 토지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계	2필지		9,820	9,820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95-2	학	372	372	국	교육부	
	325	학	9,448	9,448	공	강원도(교육감)	

※ 기타(물건 등)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4-1109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호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2019-268호(2019. 6. 21.)로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되고, 삼척시 고시 제2024-111호(2024. 5. 9.)로 최종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호선) 사업[삼척 도시계획도로(중로2-18호선)의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안) 열람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증산동 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사업
   나. 명칭 : 삼척 도시계획도로(중로2-18호선)의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삼척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의 면적: 6,141.1㎡
   나. 사업의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			금회시행(m)	기 점	종 점
	노선명	폭 원(m)	연 장(m)			
도시계획도로	중로2-18호선	18.5	250.0	B=17.0 L=250.0	대로2-1 증산동71-1(전)	중로3-11 증산동198(임)

5.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 7. 5. ~ 2024. 7. 20. (15일 간)

나. 장소: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6. 2. 2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계속)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증산동	65-2	철	2,744.0	195.0	삼척시	공				
2	증산동	67-6	임	411.0	48.0	삼척시	공				
3	증산동	69-1	전	962.0	242.0	강원 삼척시 증산동 3*	권*진				
4	증산동	69-3	전	661.0	442.0	삼척시	공				
5	증산동	70-3	잡	391.0	391.0	삼척시	공				
6	증산동	70-4	잡	310.0	310.0	국방부	국				
7	증산동	70-5	잡	1,105.9	1,010.0	삼척시	공				
8	증산동	71-1	전	537.0	14.0	삼척시	공				
9	증산동	71-5	철	69.0	69.0	국방부	국				
10	증산동	71-6	전	66.0	66.0	삼척시	공				
11	증산동	71-7	전	231.0	139.0	국방부	국				
12	증산동	71-8	전	56.0	8.0	삼척시	공				
13	증산동	186	임	688.6	133.0	삼척시	공				
14	증산동	189	임	2,737.2	1,822.0	삼척시	공				
15	증산동	190	임	198.0	3.0	강원 삼척시 적노동 1**	김*호				
16	증산동	191	임	240.8	128.0	삼척시	공				
17	증산동	192	임	80.1	80.1	삼척시	공				
18	증산동	193	임	34.0	34.0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	㈜**호텔				
19	증산동	194	임	302.0	181.0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	㈜**호텔				
20	증산동	195	임	260.9	260.9	삼척시	공				
21	증산동	196	임	71.1	71.1	삼척시	공				
22	증산동	197	임	40.0	12.0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	㈜**호텔				
23	증산동	198	임	739.9	390.0	삼척시	공				
24	증산동	199	도	288.6	92.0	삼척시	공				
합 계				13,225.1	6,141.1						

※ 기타(물건 등):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본 공고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고시 제2024-120호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274일

영 월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사업준공을 위해 특정형은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 경계 및 계획을 정비하고, 주거형은 개발 가능성이 없어 폐지, 주거형 폐지에 따른 복합형 기능 상실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하고자 함

나. 위 치 :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다. 면 적

○기정 : 복합형 174,668.1㎡(특정형 138,770.9㎡, 주거형 35,897.2㎡)

○변경 : 특정형 138,900.9㎡

라.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마.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174,668.1	감)35,767.2	138,900.9	100.0	

※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윌드 프렌즈 영월 교육원	복합형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174,668.1	감) 174,668.1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변경			특정형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138,770.9	증) 130	138,900.9		
폐지			주거형	주천면 도천리 산16-1번지 일원	35,897.2	감) 35,897.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구역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74,668.1㎡ → 0㎡ (감 174,668.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복합형 기능 상실로 인한 구역 폐지
변경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138,770.9㎡ → 138,900.9㎡ (증 130㎡)	○조성 현황을 반영한 일부 구간 구역 경계 조정
폐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35,897.2㎡ → 0㎡ (감 35,897.2㎡)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장기간 유휴토지로 방치됨에 따라 사업준공을 위해 구역 폐지

다. 토지이용계획

1) 복합형 : 폐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4,668.1	감)174,668.1	-	-	
연수원용지	70,002.2	감)70,002.2	-	-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감)4,750.3	-	-	
주거용지	10,569.0	감)10,569.0	-	-	
녹지용지	63,576.5	감)63,576.5	-	-	
소공원	2,129.0	감)2,129.0	-	-	
근린공원	12,562.3	감)12,562.3	-	-	
경관녹지	19,953.1	감)19,953.1	-	-	
원형보전녹지	8,466.6	감)8,466.6	-	-	
조경녹지	20,465.5	감)20,465.5	-	-	
공공시설용지	25,770.1	감)25,770.1	-	-	
도로	19,520.0	감)19,520.0	-	-	
보행자도로	3,195.3	감)3,195.3	-	-	
주차장	1,613.8	감)1,613.8	-	-	
공동작업장	1,441.0	감)1,441.0	-	-	

2) 특정형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770.9	증)130.0	138,900.9	100.0	
연수원용지	70,002.2	감)18,816.7	51,185.5	36.8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4,750.3	3.4	
녹지용지	45,899.1	증)13,550.1	59,449.2	42.8	
근린공원	12,562.3	-	12,562.3	9.0	
경관녹지	4,404.7	감)4,404.7	-	-	
원형보전녹지	8,466.6	-	8,466.6	6.1	
조경녹지	20,465.5	증)17,954.8	38,420.3	27.7	
공공시설용지	18,119.3	감)102.6	18,016.7	13.0	
도로	13,310.2	감)246.1	13,064.1	9.4	
보행자도로	3,195.3	증)144.8	3,340.1	2.4	
주차장	1,613.8	감)1.3	1,612.5	1.2	
지원시설용지	-	증)2,041.1	2,041.1	1.5	
운동시설용지	-	증)1,964.5	1,964.5	1.4	
교양시설용지	-	증)1,493.6	1,493.6	1.1	

3) 주거형: 폐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897.2	감)35,897.2	-	-	
주거용지	10,569.0	감)10,569.0	-	-	
녹지용지	17,677.4	감)17,677.4	-	-	
소공원	2,129.0	감)2,129.0	-	-	
경관녹지	15,548.4	감)15,548.4	-	-	
공공시설용지	7,650.8	감)7,650.8	-	-	
도로	6,209.8	감)6,209.8	-	-	
공동작업장	1,441.0	감)1,441.0	-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37 (245)	도천리 39-4	도천리 산19-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37 (245)	도천리 38-3	도천리 129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56	중로2-1	소로1-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20	중로2-1	도천리 산19-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2	중로2-1	도천리 7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7	중로2-1	도천리 8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87	중로3-1	중로3-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1	소로1-2	도천리 산1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80	소로1-2	도천리 86-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41	소로1-2	도천리 산16-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37	소로1-2	도천리 1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63	소로1-2	도천리 1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9	소로1-1	도천리 67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7-226호 (2017.09.05.)	

주) 괄호(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기·종점 지번 오기 정정 -기점:도천리 39-4 → 도천리 38-3 종점:도천리 산19-3 → 도천리 129	○기·종점 지번 오기 사항 정정
중로 3-1호선	중로 3-1호선	○연장 축소 - 556m → 220m(감336m)	○코이카만 이용중인 구간에 대해 매각 및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연장 축소 - 272m → 107m(감165m)	○코이카만 이용중인 구간에 대해 매각 및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소로 1-2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287m → 0m(감287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1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41m → 0m(감41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2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80m → 0m(감80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3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41m → 0m(감41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4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37m → 0m(감37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5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63m → 0m(감63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35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29m → 0m(감29m)	○사업준공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중인 현황을 반영하여 노선 폐지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도천리 67답 일원	1,613.8	감)1.3	1,612.5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면적 축소 - 1,613.8㎡ → 1,612.5㎡(감1.3㎡)	○사업준공을 위해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녹지로 일부 변경 및 도로를 주차장으로 변경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경관녹지1	경관녹지	도천리 63전 일원	55.4	감) 55.4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2	경관녹지2	경관녹지	도천리 129임 일원	4,349.3	감) 4,349.3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3	경관녹지3	경관녹지	도천리 산18임 일원	15,008.4	감) 15,008.4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4	경관녹지4	경관녹지	도천리 산18임 일원	540.0	감) 540.0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1	○ 경관녹지 폐지 - 55.4㎡ → 0㎡(감55.4㎡)	○ 효율적 관리 및 사업준공 후 토지 매각을 위해 군계획시설 폐지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2	경관녹지2	○ 경관녹지 폐지 - 4,349.3㎡ → 0㎡(감4,349.3㎡)	○ 효율적 관리 및 사업준공 후 토지 매각을 위해 군계획시설 폐지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3	경관녹지3	○ 경관녹지 폐지 - 15,008.4㎡ → 0㎡(감15,008.4㎡)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4	경관녹지4	○ 경관녹지 폐지 - 540.0㎡ → 0㎡(감540.0㎡)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12,562.3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4	공원	소공원	도천리 산18임 일원	2,129	감) 2,129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원	○ 소공원 폐지 - 2,129㎡ → 0㎡(감2,129㎡)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소공원 폐지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복합노인 복지시설	도천리 75전 일원	4,750.3	-	4,750.3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복합형	합 계		174,668.1	-	-	감)174,668.1	
	A	연수원용지	70,002.2	-	-	감)70,002.2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	감)2,984.6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	감)4,568.2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	감)1,890.2	
		체험훈련장	57,083.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감)57,083.0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	감)3,476.2	
	B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	감)4,750.3	
	C	주거용지	10,569.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0,569.0	
	D	녹지용지	63,576.5	-	-	감)63,576.5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	감)12,562.3	
		경관녹지	19,953.1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9,953.1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감)8,466.6	
		조경녹지	20,465.5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20,465.5	
	E	공공시설용지	25,770.1	-	-	감)25,770.1	
		도로	19,520.0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9,520.0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	감)3,195.3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	감)1,613.8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특정형	합 계		138,770.9	-	138,900.9	증)130.0	
	A	연수원용지	70,002.2	-	51,185.5	감)18,816.7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2,984.6	-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2,053.3	감)2,514.9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1,890.2	-	
		체험훈련장	57,083.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40,781.2	감)16,301.8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3,476.2	-	
	B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4,750.3	-	
	D	녹지용지	45,899.1	-	59,449.2	증)13,550.1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경관녹지	4,404.7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404.7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8,466.6	-	
		조경녹지	20,465.5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38,420.3	증)17,954.8	
	E	공공시설용지	18,119.3	-	18,016.7	감)102.6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13,064.1	감)246.1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3,340.1	증)144.8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1,612.5	감)1.3	
	F	지원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2,041.1	증)2,041.1	
	G	운동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64.5	증)1,964.5	
	H	교양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121답 일원	1,493.6	증)1,493.6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주거형	합 계		35,897.2	-	-	감)35,897.2	
	C	주거용지	10,569.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0,569.0	
	D	녹지용지	17,677.4	-	-	감)17,677.4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경관녹지	15,548.4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5,548.4	
	E	공공시설용지	7,650.8	-	-	감)7,650.8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6,209.8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복합형	합 계			174,668.1	-	-	감)174,668.1	
	연수원용지			70,002.2	-	-	감)70,002.2	
	A	A-1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	2,984.6	
		A-2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	4,568.2	
		A-3	체험훈련관	3,095.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3,095.0	
		A-4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	1,890.2	
		A-5	체험훈련관	19,894.6	주천면 도천리 117전 일원	-	19,894.6	
		A-6	체험훈련관	5,359.4	주천면 도천리 85전 일원	-	5,359.4	
		A-7	체험훈련관	7,898.6	주천면 도천리 86-1전 일원	-	7,898.6	
		A-8	체험훈련관	1,617.2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1,617.2	
		A-9	체험훈련관	6,194.1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	6,194.1	
		A-10	체험훈련관	5,893.4	주천면 도천리 97-1전 일원	-	5,893.4	
		A-11	체험훈련관	1,308.7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	1,308.7	
		A-12	체험훈련관	5,822.0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	5,822.0	
		A-13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	3,476.2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	감)4,750.3	
	B	B-1	사회복지시설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	4,750.3	
	단독주택용지			10,569	-	-	감)10,569	
	C	C-1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88전 일원	-	594	
		C-2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3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4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5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693	
		C-6	단독주택	56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69	
		C-7	단독주택	55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51	
		C-8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693	
		C-9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0	
		C-10	단독주택	57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9	
		C-11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0	
		C-12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46	
		C-13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93	
		C-14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93	
		C-15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46	
		C-16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46	
		C-17	단독주택	56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61	
		C-18	단독주택	58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83	
복합형	녹지용지			63,576.5	-	-	감)63,576.5	
	D	D-1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D-2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	감)12,562.3	
		D-3	경관녹지1	55.4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	감)55.4	
		D-4	경관녹지2	4,349.3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349.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D-5	경관녹지3	15,008.4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15,008.4	
		D-6	조경녹지	1,128.4	주천면 도천리 77전 일원	-	감)1,128.4	
		D-7	조경녹지	7,471.9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7,471.9	
		D-8	조경녹지	4,383.4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4,383.4	
		D-9	조경녹지	1,493.6	주천면 도천리 121임 일원	-	감)1,493.6	
		D-10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감)8,466.6	
		D-11	조경녹지	3,116.8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	감)3,116.8	
		D-12	조경녹지	198.4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	감)198.4	
		D-13	조경녹지	1,597.3	주천면 도천리 97-2전 일원	-	감)1,597.3	
		D-14	조경녹지	1,075.7	주천면 도천리 93전 일원	-	감)1,075.7	
		D-15	경관녹지4	540.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0.0	
	공공시설용지			25,770.1	-	-	감)25,770.1	
	E	E-1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3,310.2	
		E-2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8임 일원	-	감)6,209.8	
		E-3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	감)3,195.3	
		E-6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	감)1,613.8	
		E-7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특정형	합 계			138,770.9	-	138,900.9	증)130.0	
	연수원용지			70,002.2	-	51,185.5	감)18,816.7	
	A	A-1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2,984.6	-	
		A-2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2,053.3	감)2,514.9	
		A-3	체험훈련관	3,095.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감)3,095.0	
		A-4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1,890.2	-	
		A-5	체험훈련관	19,894.6	주천면 도천리 117전 일원	19,894.6	-	
		A-6	체험훈련관	5,359.4	주천면 도천리 85전 일원	5,450.0	증)90.6	
		A-7	체험훈련관	7,898.6	주천면 도천리 86-1전 일원	6,503.1	감)1,395.5	
		A-8	체험훈련관	1,617.2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1,617.2	-	
		A-9	체험훈련관	6,194.1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6,194.1	-	
		A-10	체험훈련관	5,893.4	주천면 도천리 97-1전 일원	-	감)5,893.4	
		A-11	체험훈련관	1,308.7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	감)1,308.7	
		A-12	체험훈련관	5,822.0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1,122.2	감)4,699.8	
		A-13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3,476.2	-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4,750.3	-	
	B	B-1	사회복지시설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4,750.3	-	
	녹지용지			45,899.1	-	59,449.2	증)13,550.1	
	D	D-2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D-3	경관녹지1	55.4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	감)55.4	
		D-4	경관녹지2	4,349.3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349.3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D-6	조경녹지	1,128.4	주천면 도천리 77전 일원	3,643.3	증)2,514.9	
		D-7	조경녹지	7,471.9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7,473.6	증)1.7	
		D-8	조경녹지	4,383.4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5,542.0	증)1,158.6	
		D-9	조경녹지	1,493.6	주천면 도천리 121임 일원	-	감)1,493.6	
		D-10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8,466.6	-	
		D-11	조경녹지	3,116.8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152.3	감)1,964.5	
		D-12	조경녹지	198.4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8.4	-	
		D-13	조경녹지	1,597.3	주천면 도천리 97-2전 일원	6,835.3	증)5,238.0	
		D-14	조경녹지	1,075.7	주천면 도천리 93전 일원	1,128.6	증)52.9	
		D-16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55.4	증)55.4	
		D-17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4,349.3	증)4,349.3	
		D-18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247.4	증)247.4	
		D-19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3,095.0	증)3,095.0	
		D-20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4,699.7	증)4,699.7	
	공공시설용지			18,119.3	-	18,016.7	감)102.6	
	E	E-1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13,064.1	감)246.1	
		E-3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3,340.1	증)144.8	
		E-6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1,612.5	감)1.3	
	지원시설용지			-	-	2,041.1	증)2,041.1	
	F	F-1	지원시설	-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2,041.1	증)2,041.1	
	운동시설용지			-	-	1,964.5	증)1,964.5	
	G	G-1	운동시설	-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64.5	증)1,964.5	
	교양시설용지			-	-	1,493.6	증)1,493.6	
	H	H-1	추모시설	-	주천면 도천리 121답 일원	1,493.6	증)1,493.6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주거형	합 계			35,897.2	-	-	감)35,897.2	
	C	단독주택용지		10,569	-	-	감)10,569	
		C-1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88전 일원	-	감)594	
		C-2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3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4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5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693	
		C-6	단독주택	56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69	
		C-7	단독주택	55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51	
		C-8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693	
		C-9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0	
		C-10	단독주택	57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9	
		C-11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0	
		C-12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46	
		C-13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93	
		C-14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93	
		C-15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6	
		C-16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6	
		C-17	단독주택	56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61	
		C-18	단독주택	58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83	
	D	녹지용지		17,677.4	-	-	감)17,677.4	
		D-1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D-5	경관녹지3	15,008.4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15,008.4	
		D-15	경관녹지4	540.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0.0	
	E	공공시설용지		7,650.8	-	-	감)7,650.8	
		E-2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8임 일원	-	감)6,209.8	
		E-7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형	폐지	A	A-1~2 주천면 도천리 75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1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복합형	폐지	A	A-3~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6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 지양
				건축선		-
	폐지	A	A-13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폐지	B	B-1 주천면 도천리 178답 일원 (사회복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폐지	C	C-1~18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단독주택)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특정형	기정	A	A-1~2 주천면 도천리 75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1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변경	A	A-3~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A-4~9, A-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6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 지양
					건축선		-
	기정	A	A-13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특정형	기정	B	B-1 주천면 도천리 178답 일원 (사회복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변경없음)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신설	F	-	F-1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지원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30%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거형	폐지	C	C-1~18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단독주택)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마. 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단계별 면적(㎡)	비고
합계	138,900.9	-
1단계	53,883	· 코이카 실사용 연수원용지(편입토지 조서 참조)
2단계	85,017.9	· 1단계 용지 외 부지

■ 1단계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1단계 면적(㎡)	비고
합계	43필지	-	-	206,461	53,883	
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4-1	도	883	308	
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7	답	2,380	1,104	
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8	묘	615	582	
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9	답	1,726	770	
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2	전	519	61	
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4	전	3,266	1,213	
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5	전	4,843	2,367	
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6	전	916	719	
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9	전	8,228	1,280	
1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1	답	2,136	989	
1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2	답	83	83	
1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3	답	496	294	
1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4	답	175	175	
1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5	전	1,501	1,449	
1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6	전	641	641	
1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6-1	전	3,355	2,126	
1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7	전	840	734	
1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1	답	3,114	145	
1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2	답	4,962	274	
2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3	전	3,342	872	
2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4	전	1,696	1,198	
2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5	답	2,747	2,450	
2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6	전	1,068	454	
2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6	전	1,706	1,139	
2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7	전	3,858	2,905	
2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8	전	1,137	1,080	
2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9	전	3,336	2,171	
2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0	전	311	164	
2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2	답	1,279	1,267	
3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3	답	36	36	
3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3-1	답	53	53	
3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4	전	1,362	1,316	
3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5	전	1,702	1,179	
3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6	임	390	363	
3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7	답	2,084	1,159	
3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7-1	답	658	564	
3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8	전	2,185	1,820	
3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9	임	11,042	335	
3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6-1	임	35,178	5,948	
4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8	임	27,868	452	
4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9	임	7,573	2,847	
4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9-3	임	10,611	7,656	
4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21	임	44,560	1,141	

영월군 고시 제2024-1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영 월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내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기관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무릉4	무릉도원면 무릉리 산151 일원	붕괴위험	D	4,8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영월군	
연당2	남면 연당리 산94-6 일원	붕괴위험	D	6,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영월군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붙임 지정 지형도면 참고)

4. 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무릉4	2025년 이후	4,000	- 돌출암 절취 및 암파파쇄방호시설 설치 영구앵커 및 기대기옹벽 등
연당2	2025년 이후	1,000	- 경사완화 및 식생공 낙석방지 울타리 재설치

※ 사업시기, 사업예싼, 사업내용은 예산(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 축대 및 촉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지형고시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끝.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월드프렌즈영월교육원	복합형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174,668.1	감) 174,668.1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변경			특정형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138,770.9	증) 130	138,900.9		
폐지			주거형	주천면 도천리 산16-1번지 일원	35,897.2	감) 35,897.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구역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74,668.1㎡ → 0㎡ (감 174,668.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복합형 기능 상실로 인한 구역 폐지
변경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138,770.9㎡ → 138,900.9㎡ (증 130㎡)	○조성 현황을 반영한 일부 구간 구역 경계 조정
폐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35,897.2㎡ → 0㎡ (감 35,897.2㎡)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장기간 유휴토지로 방치됨에 따라 사업준공을 위해 구역 폐지

다. 토지이용계획

1) 복합형 : 폐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4,668.1	감)174,668.1	-	-	
연수원용지		70,002.2	감)70,002.2	-	-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감)4,750.3	-	-	
주거용지		10,569.0	감)10,569.0	-	-	
녹지용지		63,576.5	감)63,576.5	-	-	
	소공원	2,129.0	감)2,129.0	-	-	
	근린공원	12,562.3	감)12,562.3	-	-	
	경관녹지	19,953.1	감)19,953.1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원형보전녹지	8,466.6	감)8,466.6	-	-	
조경녹지	20,465.5	감)20,465.5	-	-	
공공시설용지	25,770.1	감)25,770.1	-	-	
도로	19,520.0	감)19,520.0	-	-	
보행자도로	3,195.3	감)3,195.3	-	-	
주차장	1,613.8	감)1,613.8	-	-	
공동작업장	1,441.0	감)1,441.0	-	-	

2) 특정형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770.9	증)130.0	138,900.9	100.0	
연수원용지	70,002.2	감)18,816.7	51,185.5	36.8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4,750.3	3.4	
녹지용지	45,899.1	증)13,550.1	59,449.2	42.8	
근린공원	12,562.3	-	12,562.3	9.0	
경관녹지	4,404.7	감)4,404.7	-	-	
원형보전녹지	8,466.6	-	8,466.6	6.1	
조경녹지	20,465.5	증)17,954.8	38,420.3	27.7	
공공시설용지	18,119.3	감)102.6	18,016.7	13.0	
도로	13,310.2	감)246.1	13,064.1	9.4	
보행자도로	3,195.3	증)144.8	3,340.1	2.4	
주차장	1,613.8	감)1.3	1,612.5	1.2	
지원시설용지	-	증)2,041.1	2,041.1	1.5	
운동시설용지	-	증)1,964.5	1,964.5	1.4	
교양시설용지	-	증)1,493.6	1,493.6	1.1	

3) 주거형: 폐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897.2	감)35,897.2	-	-	
주거용지	10,569.0	감)10,569.0	-	-	
녹지용지	17,677.4	감)17,677.4	-	-	
소공원	2,129.0	감)2,129.0	-	-	
경관녹지	15,548.4	감)15,548.4	-	-	
공공시설용지	7,650.8	감)7,650.8	-	-	
도로	6,209.8	감)6,209.8	-	-	
공동작업장	1,441.0	감)1,441.0	-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37 (245)	도천리 39-4	도천리 산19-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37 (245)	도천리 38-3	도천리 129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56	중로2-1	소로1-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20	중로2-1	도천리 산19-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2	중로2-1	도천리 7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7	중로2-1	도천리 8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87	중로3-1	중로3-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1	소로1-2	도천리 산1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80	소로1-2	도천리 86-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41	소로1-2	도천리 산16-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37	소로1-2	도천리 1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63	소로1-2	도천리 1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9	소로1-1	도천리 67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7-226호 (2017.09.05.)	

주) 괄호(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기·종점 지번 오기 정정 -기점:도천리 39-4 → 도천리 38-3 종점:도천리 산19-3 → 도천리 129	○기·종점 지번 오기 사항 정정
중로 3-1호선	중로 3-1호선	○연장 축소 - 556m → 220m(감336m)	○코이카만 이용중인 구간에 대해 매각 및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연장 축소 - 272m → 107m(감165m)	○코이카만 이용중인 구간에 대해 매각 및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소로 1-2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287m → 0m(감287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1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41m → 0m(감41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2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80m → 0m(감80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3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41m → 0m(감41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4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37m → 0m(감37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5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63m → 0m(감63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35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29m → 0m(감29m)	○사업준공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중인 현황을 반영하여 노선 폐지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도천리 67답 일원	1,613.8	감)1.3	1,612.5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면적 축소 - 1,613.8㎡ → 1,612.5㎡(감1.3㎡)	○사업준공을 위해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녹지로 일부 변경 및 도로를 주차장으로 변경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경관녹지1	경관녹지	도천리 63전 일원	55.4	감) 55.4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2	경관녹지2	경관녹지	도천리 129임 일원	4,349.3	감) 4,349.3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3	경관녹지3	경관녹지	도천리 산18임 일원	15,008.4	감) 15,008.4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4	경관녹지4	경관녹지	도천리 산18임 일원	540.0	감) 540.0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1	○ 경관녹지 폐지 - 55.4㎡ → 0㎡(감55.4㎡)	○ 효율적 관리 및 사업준공 후 토지 매각을 위해 군계획시설 폐지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2	경관녹지2	○ 경관녹지 폐지 - 4,349.3㎡ → 0㎡(감4,349.3㎡)	○ 효율적 관리 및 사업준공 후 토지 매각을 위해 군계획시설 폐지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3	경관녹지3	○ 경관녹지 폐지 - 15,008.4㎡ → 0㎡(감15,008.4㎡)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4	경관녹지4	○ 경관녹지 폐지 - 540.0㎡ → 0㎡(감540.0㎡)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12,562.3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4	공원	소공원	도천리 산18임 일원	2,129	감) 2,129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원	○ 소공원 폐지 - 2,129㎡ → 0㎡(감2,129㎡)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소공원 폐지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복합노인 복지시설	도천리 75전 일원	4,750.3	-	4,750.3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복합형	합 계		174,668.1	-	-	감)174,668.1	
	A	연수원용지	70,002.2	-	-	감)70,002.2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	감)2,984.6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	감)4,568.2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	감)1,890.2	
		체험훈련장	57,083.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감)57,083.0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	감)3,476.2	
	B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	감)4,750.3	
	C	주거용지	10,569.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0,569.0	
	D	녹지용지	63,576.5	-	-	감)63,576.5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	감)12,562.3	
		경관녹지	19,953.1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9,953.1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감)8,466.6	
		조경녹지	20,465.5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20,465.5	
	E	공공시설용지	25,770.1	-	-	감)25,770.1	
		도로	19,520.0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9,520.0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	감)3,195.3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	감)1,613.8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특정형	합 계		138,770.9	-	138,900.9	증)130.0	
	A	연수원용지	70,002.2	-	51,185.5	감)18,816.7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2,984.6	-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2,053.3	감)2,514.9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1,890.2	-	
		체험훈련장	57,083.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40,781.2	감)16,301.8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3,476.2	-	
	B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4,750.3	-	
	D	녹지용지	45,899.1	-	59,449.2	증)13,550.1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경관녹지	4,404.7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404.7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8,466.6	-	
		조경녹지	20,465.5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38,420.3	증)17,954.8	
	E	공공시설용지	18,119.3	-	18,016.7	감)102.6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13,064.1	감)246.1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3,340.1	증)144.8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1,612.5	감)1.3	
	F	지원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2,041.1	증)2,041.1	
	G	운동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64.5	증)1,964.5	
	H	교양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121답 일원	1,493.6	증)1,493.6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주거형	합 계		35,897.2	-	-	감)35,897.2	
	C	주거용지	10,569.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0,569.0	
	D	녹지용지	17,677.4	-	-	감)17,677.4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경관녹지	15,548.4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5,548.4	
	E	공공시설용지	7,650.8	-	-	감)7,650.8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6,209.8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복합형	합 계			174,668.1	-	-	감)174,668.1	
	연수원용지			70,002.2	-	-	감)70,002.2	
	A	A-1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	2,984.6	
		A-2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	4,568.2	
		A-3	체험훈련관	3,095.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3,095.0	
		A-4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	1,890.2	
		A-5	체험훈련관	19,894.6	주천면 도천리 117전 일원	-	19,894.6	
		A-6	체험훈련관	5,359.4	주천면 도천리 85전 일원	-	5,359.4	
		A-7	체험훈련관	7,898.6	주천면 도천리 86-1전 일원	-	7,898.6	
		A-8	체험훈련관	1,617.2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1,617.2	
		A-9	체험훈련관	6,194.1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	6,194.1	
		A-10	체험훈련관	5,893.4	주천면 도천리 97-1전 일원	-	5,893.4	
		A-11	체험훈련관	1,308.7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	1,308.7	
		A-12	체험훈련관	5,822.0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	5,822.0	
		A-13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	3,476.2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	감)4,750.3	
	B	B-1	사회복지시설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	4,750.3	
	단독주택용지			10,569	-	-	감)10,569	
	C	C-1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88전 일원	-	594	
		C-2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3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4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5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693	
		C-6	단독주택	56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69	
		C-7	단독주택	55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51	
		C-8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693	
		C-9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0	
		C-10	단독주택	57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9	
		C-11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0	
		C-12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46	
		C-13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93	
		C-14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93	
		C-15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46	
		C-16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46	
		C-17	단독주택	56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61	
		C-18	단독주택	58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83	
복합형	녹지용지			63,576.5	-	-	감)63,576.5	
	D	D-1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D-2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	감)12,562.3	
		D-3	경관녹지1	55.4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	감)55.4	
		D-4	경관녹지2	4,349.3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349.3	
		D-5	경관녹지3	15,008.4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15,008.4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D-6	조경녹지	1,128.4	주천면 도천리 77전 일원	-	감)1,128.4	
		D-7	조경녹지	7,471.9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7,471.9	
		D-8	조경녹지	4,383.4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4,383.4	
		D-9	조경녹지	1,493.6	주천면 도천리 121임 일원	-	감)1,493.6	
		D-10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감)8,466.6	
		D-11	조경녹지	3,116.8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	감)3,116.8	
		D-12	조경녹지	198.4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	감)198.4	
		D-13	조경녹지	1,597.3	주천면 도천리 97-2전 일원	-	감)1,597.3	
		D-14	조경녹지	1,075.7	주천면 도천리 93전 일원	-	감)1,075.7	
		D-15	경관녹지4	540.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0.0	
	공공시설용지			25,770.1	-	-	감)25,770.1	
	E	E-1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3,310.2	
		E-2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8임 일원	-	감)6,209.8	
		E-3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	감)3,195.3	
		E-6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	감)1,613.8	
		E-7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특정형	합 계			138,770.9	-	138,900.9	증)130.0	
	연수원용지			70,002.2	-	51,185.5	감)18,816.7	
	A	A-1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2,984.6	-	
		A-2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2,053.3	감)2,514.9	
		A-3	체험훈련관	3,095.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감)3,095.0	
		A-4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1,890.2	-	
		A-5	체험훈련관	19,894.6	주천면 도천리 117전 일원	19,894.6	-	
		A-6	체험훈련관	5,359.4	주천면 도천리 85전 일원	5,450.0	증)90.6	
		A-7	체험훈련관	7,898.6	주천면 도천리 86-1전 일원	6,503.1	감)1,395.5	
		A-8	체험훈련관	1,617.2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1,617.2	-	
		A-9	체험훈련관	6,194.1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6,194.1	-	
		A-10	체험훈련관	5,893.4	주천면 도천리 97-1전 일원	-	감)5,893.4	
		A-11	체험훈련관	1,308.7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	감)1,308.7	
		A-12	체험훈련관	5,822.0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1,122.2	감)4,699.8	
		A-13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3,476.2	-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4,750.3	-	
	B	B-1	사회복지시설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4,750.3	-	
	녹지용지			45,899.1	-	59,449.2	증)13,550.1	
	D	D-2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D-3	경관녹지1	55.4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	감)55.4	
		D-4	경관녹지2	4,349.3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349.3	
		D-6	조경녹지	1,128.4	주천면 도천리 77전 일원	3,643.3	증)2,514.9	
		D-7	조경녹지	7,471.9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7,473.6	증)1.7	
		D-8	조경녹지	4,383.4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5,542.0	증)1,158.6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D-9	조경녹지	1,493.6	주천면 도천리 121임 일원	-	감)1,493.6	
		D-10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8,466.6	-	
		D-11	조경녹지	3,116.8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152.3	감)1,964.5	
		D-12	조경녹지	198.4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8.4	-	
		D-13	조경녹지	1,597.3	주천면 도천리 97-2전 일원	6,835.3	증)5,238.0	
		D-14	조경녹지	1,075.7	주천면 도천리 93전 일원	1,128.6	증)52.9	
		D-16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55.4	증)55.4	
		D-17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4,349.3	증)4,349.3	
		D-18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247.4	증)247.4	
		D-19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3,095.0	증)3,095.0	
		D-20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4,699.7	증)4,699.7	
	공공시설용지			18,119.3	-	18,016.7	감)102.6	
	E	E-1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13,064.1	감)246.1	
		E-3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3,340.1	증)144.8	
		E-6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1,612.5	감)1.3	
	지원시설용지			-	-	2,041.1	증)2,041.1	
	F	F-1	지원시설	-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2,041.1	증)2,041.1	
	운동시설용지			-	-	1,964.5	증)1,964.5	
	G	G-1	운동시설	-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64.5	증)1,964.5	
	교양시설용지			-	-	1,493.6	증)1,493.6	
	H	H-1	추모시설	-	주천면 도천리 121답 일원	1,493.6	증)1,493.6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주거형	합 계			35,897.2	-	-	감)35,897.2	
	단독주택용지			10,569	-	-	감)10,569	
	C	C-1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88전 일원	-	감)594	
		C-2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3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4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5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693	
		C-6	단독주택	56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69	
		C-7	단독주택	55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51	
		C-8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693	
		C-9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0	
		C-10	단독주택	57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9	
		C-11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0	
		C-12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46	
		C-13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93	
		C-14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93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C-15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6	
		C-16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6	
		C-17	단독주택	56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61	
		C-18	단독주택	58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83	
	D	녹지용지		17,677.4	-	-	감)17,677.4	
		D-1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D-5	경관녹지3	15,008.4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15,008.4	
		D-15	경관녹지4	540.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0.0	
	E	공공시설용지		7,650.8	-	-	감)7,650.8	
		E-2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8임 일원	-	감)6,209.8	
		E-7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형	폐지	A	A-1~2 주천면 도천리 75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1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복합형	폐지	A	A-3~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6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 지양
				건축선		-
	폐지	A	A-13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폐지	B	B-1 주천면 도천리 178답 일원 (사회복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폐지	C	C-1~18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단독주택)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특정형	기정	A	A-1~2 주천면 도천리 75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1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변경	A	A-3~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A-4~9, A-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6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 지양
					건축선		-
	기정	A	A-13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특정형	기정	B	B-1 주천면 도천리 178답 일원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신설	F	-	F-1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지원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30%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거형	폐지	C	C-1~18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단독주택)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마. 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단계별 면적(㎡)	비고
합계	138,900.9	-
1단계	53,883	· 코이카 실사용 연수원용지(편입토지 조서 참조)
2단계	85,017.9	· 1단계 용지 외 부지

■ 1단계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1단계 면적(㎡)	비고
합계	43필지	-	-	206,461	53,883	
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4-1	도	883	308	
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7	답	2,380	1,104	
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8	묘	615	582	
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9	답	1,726	770	
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2	전	519	61	
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4	전	3,266	1,213	
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5	전	4,843	2,367	
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6	전	916	719	
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9	전	8,228	1,280	
1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1	답	2,136	989	
1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2	답	83	83	
1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3	답	496	294	
1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4	답	175	175	
1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5	전	1,501	1,449	
1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6	전	641	641	
1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6-1	전	3,355	2,126	
1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7	전	840	734	
1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1	답	3,114	145	
1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2	답	4,962	274	
2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3	전	3,342	872	
2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4	전	1,696	1,198	
2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5	답	2,747	2,450	
2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6	전	1,068	454	
2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6	전	1,706	1,139	
2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7	전	3,858	2,905	
2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8	전	1,137	1,080	
2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9	전	3,336	2,171	
2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0	전	311	164	
2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2	답	1,279	1,267	
3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3	답	36	36	
3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3-1	답	53	53	
3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4	전	1,362	1,316	
3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5	전	1,702	1,179	
3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6	임	390	363	

3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7	답	2,084	1,159	
3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7-1	답	658	564	
3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8	전	2,185	1,820	
3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9	임	11,042	335	
3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6-1	임	35,178	5,948	
4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8	임	27,868	452	
4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9	임	7,573	2,847	
4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9-3	임	10,611	7,656	
4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21	임	44,560	1,141	

평창군 고시 제2024-107호

지적재조사사업(계촌6・흥정1지구)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하천용도구역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9.16.) 규정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평 창 군 수

1. 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계촌6・흥정1지구) 완료지구 지형도면 변경
2. 사업위치 및 필지수, 면적
   - 계촌6지구 : 계촌리 1389-1번지 일원 54필지(0.06㎢)
   - 흥정1지구 : 흥정리 245-1번지 일원 103필지(0.24㎢)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관계도서 열람 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는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330-2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형도면 지구별 각 1식.

정선군 고시 제2024-51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지역관광자원인 폐 운탄길을 활용한 광차체험코스를 조성하고 삼탄아트마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군관리계획(시설: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6리(파인앤유아파트)~고한15리(삼탄지구)

다. 계획내용

1) 군계획시설 1개소 신설

○ 궤도시설(L=2,779m, A=38,286㎡)

2)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반시설 계획 변경 → 구역 내 궤도시설 면적 3,923㎡, 연장 305m

○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 관광휴양시설용지 면적 : 18,407㎡ → 19,418㎡, 증) 1,011㎡

→ 공 공 시 설 용 지 면적 : 13,035㎡ → 12,674㎡, 감) 361㎡

→ 녹 지 용 지 면적 : 14,588㎡ → 13,938㎡, 감) 650㎡

○ 건축물 계획 변경 → 탄광체험시설 건축물 용도 추가(일반숙박시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Ⅰ.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궤도)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교통시설(궤도)

1)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2	궤도	고한읍 고한리 산1-208	고한읍 고한리 5-26	-	2,779 (305)	38,286 (3,923)	금회	야생화마을 광차체험 시설

* ( ) 안은 삼탄광산아트밸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되는 연장 및 면적임

2)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궤도	• 궤도 신설 - L=2,779m (구역 내 305m) - A=38,286㎡ (구역 내 3,923㎡)	•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을 위하여 궤도 신설

Ⅱ.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궤도)

1)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2	궤도	고한읍 고한리 산1-208	고한읍 고한리 5-26	-	305 (2,779)	3,923 (38,286)	금회	야생화마을 광차체험 시설

* ( ) 안은 궤도 시설 전체의 연장 및 면적임

2)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궤도	• 궤도 신설 - L= 305m (시설 전체 2,779m) - A=3,923㎡ (시설 전체 38,286㎡)	•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을 위하여 궤도 신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가 구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46,030	46,030	-	-
Ⅰ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8,407	19,418	증) 1,011	궤도 (2,133㎡)
Ⅱ	공공시설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035	12,674	감) 361	-
Ⅲ	녹지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13,938	감) 650	-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6,030	46,030	-	-
Ⅰ.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			18,407	19,418	증) 1,011	
Ⅰ- 1	탄광체험시설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10,277	10,277	-	궤도 (2,133㎡)
Ⅰ- 2	탄광체험시설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6,964	5,824	감) 1,140	
Ⅰ- 3	탄광체험시설③	고한읍 고한리 5-26잡	1,166	1,166	-	
Ⅰ- 4	탄광체험시설④	고한읍 고한리 5-26잡	-	2,151	증) 2,151	
Ⅱ. 공공시설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035	12,674	감) 361	
Ⅱ- 1	Main Gate	고한읍 고한리 5-26잡	254	254	-	
Ⅱ- 2	오수처리장	고한읍 고한리 5-26잡	199	199	-	
Ⅱ- 3	광장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51	-	감) 2,151	
Ⅱ- 4	광장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892	892	-	
Ⅱ- 5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67	2,167	-	
Ⅱ- 6	보행자도로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2,490	2,490	-	
Ⅱ- 7	도로	고한읍 고한리 5-26잡	4,564	4,564	-	
Ⅱ- 8	보행자도로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318	318	-	
Ⅱ- 9	궤도	고한읍 고한리 5-26잡	-	1,790	증) 1,790	야생화마을 광차
Ⅲ. 녹지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13,938	감) 650	
Ⅲ- 1	조경녹지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79	79	-	
Ⅲ- 2	조경녹지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325	325	-	
Ⅲ- 3	조경녹지③	고한읍 고한리 5-26잡	67	67	-	
Ⅲ- 4	조경녹지④	고한읍 고한리 5-26잡	128	128	-	
Ⅲ- 5	조경녹지⑤	고한읍 고한리 5-26잡	-	1,140	증) 1,140	
Ⅲ- 6	원지형녹지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989	12,199	감) 1,790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Ⅰ-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 숙소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권장)	●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변경	Ⅰ-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 숙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가목 일반숙박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권장)	●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기정	Ⅰ-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권장)	●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변경	Ⅰ-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권장)	●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기정	Ⅰ-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권장)	●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변경	Ⅰ-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권장)	●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정선군 고시 제2024-5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22,11)에 따라 기 개설된 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 광장부지 폐지와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다. 계획내용

1) 군계획시설 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1개소 신설, 2개소 변경), 도로 외 시설(주차장 3개소 변경, 공원 1개소 변경, 방수설비 1개소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2개소 변경)

2)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172,495㎡ → 변경 171,372㎡, 감) 1,123㎡
- 지구단위계획내용: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등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봉양·애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172,495	감) 1,123	171,372	강고제294호 (05.12.02)	②-1:91,314㎡ ②-2:80,05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봉양·애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축소 - A=172,495㎡ → 171,372㎡ 감) 1,123㎡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구역면적 축소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2,495	감) 1,123	171,37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3,456	감) 935	152,521	89.0	
	준주거지역	18,136	감) 313	17,823	10.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3	증) 125	1,028	0.6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의 편입면적을 기재한 사항으로 정선군 전체 용도지역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8-1 일원	172,495	171,37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편입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기정	합계	27(2)	7,349(1,742)	4	2,511	7(2)	2,949(1,742)	16	1,889
	중로	3(1)	2,960(760)	1	1,957	1(1)	760(760)	1	243
	소로	24(1)	4,389(982)	3	554	6(1)	2,189(982)	15	1,646
변경	합계	28(2)	7,513(1,742)	4	2,511	7(2)	2,949(1,742)	17	2,053
	중로	3(1)	2,960(760)	1	1,957	1(1)	760(760)	1	243
	소로	25(1)	4,553(982)	3	554	6(1)	2,189(982)	16	1,810

* ( )는 지구외 도로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29	주간선도로	1,957	제2호광장 봉양리 34-11도	덕송리 구역계 565-1도	일반도로	정선역	건고제313호 (73.7.25)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도로	760	제2호광장 봉양리 34-11도	중로3-4 봉양리 266-1도	일반도로	상설시장	건고제313호 (73.7.25)	지구외
변경	중로	2	3	15 ~16	보조 간선도로	760	제2호광장 봉양리 34-11도	중로3-4 봉양리 266-1도	일반도로	상설시장	건고제313호 (73.7.25)	지구외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243	중로3-1 애산리 444-8전	중로1-1 봉양리 47-54도	일반도로	금광 아파트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0	중로1-1 애산리 415-147도	소로2-1 애산리 432-389대	일반도로	농협 판매장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64	중로1-1 봉양리 46-31도	소로3-55 봉양리 42-11전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1	23	4 ~10	국지 도로	340	소로1-4 봉양리 78-24전	소로2-11 애산리 432-426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16	중로1-1 애산리 415-106전	소로3-4 봉양리 1-131대	일반도로	봉양초교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82	중로1-1 애산리 415-163제	중로2-3 봉양리 60-2도	일반도로	한강변	강고제15호 (92.2.13)	지구외
변경	소로	2	2	8~9	국지 도로	982	중로1-1 애산리 415-163제	중로2-3 봉양리 60-2도	일반도로	한강변	강고제15호 (92.2.13)	지구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76	중로3-5 애산리 432-1대	중로3-1 애산리 415-112대	일반도로	비봉연립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95	중로3-5 애산리 432-1대	소로1-2 봉양리 57-1도	일반도로	제일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48	중로1-1 애산리 432-1대	소로2-1 봉양리 1-28도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72	중로1-1 봉양리 47-51대	중로3-1 애산리 432-1대	일반도로	보건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91	중로 1-1 애산리 415-110전	소로2-2 봉양리 919-2제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20	소로2-1 봉양리 1-33학	소로2-2 봉양리 2-2제	일반도로	봉양초교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90	중로1-1 애산리 432-1대	중로3-1 애산리 429-3임	일반도로	새마을 회관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51	중로1-1 봉양리 46-13전	소로2-1 봉양리 1-39전	일반도로	나질원 어린이집	정선고제41호 (03.05.09)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99	소로3-33 봉양리 33-17전	소로1-12 봉양리 46-31도	일반도로	감리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310	소로2-2 봉양리 33-9제	소로1-12 봉양리 46-31도	일반도로	감리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84	소로2-8 애산리 432-1대	소로3-9 애산리 432-1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41	중로1-1 봉양리 47-61도	봉양리 37-39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56	중로1-1 봉양리 48-13도	소로2-11 애산리 432-424대	일반도로	제일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51	중로3-5 애산리 432-1대	소로2-8 애산리 432-1대	일반도로	체육관	정선고제41호 (03.05.09)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9	소로2-1 애산리 432-45대	소로3-1 애산리 432-378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29	5~6	국지 도로	53	소로1-2 봉양리 56-1전	소로3-11 봉양리 54-13도	일반도로	미락정 가든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52	중로1-1 봉양리 48-11대	소로3-1 봉양리 34-60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변경	소로	3	33	6	국지 도로	52	중로1-1 봉양리 48-11대	소로3-1 봉양리 34-60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가각 변경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18	소로2-1 애산리 432-1대	소로2-2 봉양리 2-2제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67	소로2-8 애산리 432-1대	소로3-9 애산리 432-422대	일반도로		정선고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3	49	6	국지 도로	74	소로3-9 봉양리 53-29전	소로3-11 봉양리 55-37전	일반도로		정선고제25호 (16.04.15)	
신설	소로	3	55	4	국지 도로	53	소로1-2 봉양리 57-1도	소로1-23 봉양리 54-56대	일반도로		금회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3	중로2-3	◦ 폭원 일부 변경 - B=15m → 15~16m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감속 차로 확보
소로2-2	소로2-2	◦ 폭원 일부 변경 - B=8m → 8~9m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일부 구간 폭원 변경
소로3-5	소로3-5	◦ 연장 확장 - L=199m → 310m 증) 111m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보를 위하여 도로 연장 확장
소로3-33	소로3-33	◦ 가각 변경	◦ 소로 3-5호선의 연장 확장에 따른 가각 변경
-	소로3-55	◦ 도로 신설 - B=4m, L=53m	◦ 기 개설된 도로의 군계획시설 신설 반영

나. 교통시설(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애산리 415-103 일원	1,500	감) 31	1,469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7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애산리 432-442 일원	1,755	감) 119	1,636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10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55-1 일원	929	증) 39	968	정선고제25호 (16.04.15)	
기정	15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애산리 415-8 일원	2,282	-	2,282	정선고제290호 (20.12.24)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주차장	◦ 면적 변경 - A=1,500㎡ → 1,469㎡ 감) 31㎡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7	주차장	◦ 면적 변경 - A=1,755㎡ → 1,636㎡ 감) 119㎡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10	주차장	◦ 면적 변경 - A=929㎡ → 968㎡ 증) 39㎡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다. 공간시설(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애산	어린이공원	정선읍 애산리 432-201 일원	1,500	증) 138	1,638	강고제134호 (85.12.14)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애산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 A=1,500㎡ → 1,638㎡ 증) 138㎡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라. 방재시설(방수설비)

1)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역전 배수펌프장	방수설비	정선읍 봉양리 32-3번지 일원	900	감) 5	895	정선고제96호 (10.07.09)	

2) 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역전 배수펌프장	◦ 면적 변경 - A=900㎡ → 895㎡ 감) 5㎡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Ⅲ.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도면번호	구분	가구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변경면적 (㎡)		
총계		26개소	27개소	126,617	-	133,077	증) 6,460	
가구번호와 동일	변경	현1	주거1	7,475	정선읍 애산리 432-490 일원	7,140	감) 335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	주거2	8,076	정선읍 봉양리 3-23 일원	8,426	증) 35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3	주거3	6,144	정선읍 애산리 432-33 일원	5,356	감) 788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4	주거4	1,201	정선읍 애산리 432-50 일원	1,198	감) 3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5	주거5	2,101	정선읍 애산리 432-61 일원	1,987	감) 11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6	주거6	3,299	정선읍 봉양리 1-37 일원	3,226	감) 73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7	주거7	10,943	정선읍 봉양리 43-12 일원	11,339	증) 39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8	주거8	2,459	정선읍 봉양리 46-1 일원	3,197	증) 738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9	주거9	8,546	정선읍 봉양리 36-4 일원	9,040	증) 49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0	주거10	2,182	정선읍 봉양리 46-49 일원	2,125	감) 57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1	주거11	9,527	정선읍 봉양리 33-1 일원	9,506	감) 2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2	주거12	2,080	정선읍 봉양리 34-47 일원	2,049	감) 3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가구 번호 와 동일	변경	현13	주거13	954	정선읍 봉양리 34-24 일원	898	감) 5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4	주거14	2,726	정선읍 애산리 432-96 일원	2,784	증) 58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5	주거15	7,110	정선읍 애산리 417-6 일원	7,396	증) 28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6	주거16	3,225	정선읍 애산리 432-281 일원	3,149	감) 7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7	주거17	11,662	정선읍 애산리 431-2 일원	11,716	증) 5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8	주거18	6,577	정선읍 애산리 432-198 일원	6,468	감) 10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9	주거19	4,559	정선읍 애산리 447-2 일원	4,730	증) 17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0	주거20	5,151	정선읍 봉양리 51-1 일원	5,381	증) 23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1	주거21	3,161	정선읍 애산리 432-167 일원	3,745	증) 58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2	주거22	4,781	정선읍 봉양리 50-9 일원	3,742	감) 1,03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3	주거23	3,334	정선읍 애산리 53-10 일원	3,388	증) 5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4	주거24	2,238	정선읍 봉양리 54-2 일원	2,445	증) 207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5	주거25	5,046	정선읍 봉양리 54-10 일원	5,005	감) 4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6	주거26	2,060	정선읍 애산리 432-203 일원	2,269	증) 20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신설	-	주거27	-	정선읍 애산리 393-4 일원	5,372	증) 5,372	· 누락된 주거용지 신설 추가

2)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구분	가구번호		기정면적(㎡)	획 지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변경면적(㎡)		
총계		9개소	6개소	8,554	-	8,888	증) 334	
가구번호와 동일	폐지	도1	-	282	정선읍 봉양리 3-5 일원	-	감) 282	· 주거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폐지	도2	-	402	정선읍 애산리 4 32-459 일원	-	감) 402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 되어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폐지	도3	-	280	정선읍 봉양리 53-30 일원	-	감) 280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 되어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폐지	도4	-	200	정선읍 봉양리 5 4-62 일원	-	감) 200	· 군계획시설 도로 신설로 인하여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변경	주1	주차1	1,430	정선읍 애산리 415-103 일원	1,469	증) 39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주2	주차2	1,600	정선읍 애산리 432-442 일원	1,636	증) 36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신설	-	주차3	-	정선읍 봉양리 55-1 일원	968	증) 968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된 주차장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에 신설 포함
	신설	-	주차4	-	정선읍 애산리 415-8 일원	2,282	증) 2,282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된 주차장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에 신설 포함
	폐지	광1	-	1,970	정선읍 봉양리 58-1 일원	-	감) 1,970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광장용지 폐지
	변경	공1	공원1	1,500	정선읍 애산리 432-201 일원	1,638	증) 138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배1	배수1	890	정선읍 봉양리 32-3 일원	895	증) 5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Ⅳ.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1) 주거용지

구 분	건 축 물 용 도	비 고
도면번호	A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계획조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2) 공공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호	가 구	구 분	건 축 물 용 도
폐지	1	도1~4	지정용도	◦ 도로(보차혼용도로)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기정	1	주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변경	-	주차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신설	-	주차3~4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폐지	1	광1	지정용도	◦ 다목적광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기정	1	공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변경	-	공원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공원녹지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기정	-	배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변경	B	배수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나. 건축물의 규모

구 분	주거용지	배수1	비 고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용지

1) 주거용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현1 ~ 현26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계획조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변경	주거1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주거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신설	주거27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2) 주거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1 ~ 주거26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주거27	◦ 누락 가구 및 획지 추가	◦ 누락된 주거용지 신설 추가

나. 공공시설용지

1)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폐지	도1~4	지정용도	◦ 도로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주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변경	주차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신설	주차3~4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폐지	광1	지정용도	◦ 다목적광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공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변경	공원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공원녹지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배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변경	배수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2)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1~4	◦ 도로용지 폐지	◦ 도1 : 주거용지로 편입으로 인한 폐지 ◦ 도2, 도3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 되어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 도4 : 군계획시설 도로 신설로 인하여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주차1 ~주차2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주1 → 주차1 A=1,430㎡ → 1,469㎡ 증) 39㎡ – 주2 → 주차2 A=1,600㎡ → 1,636㎡ 증) 36㎡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주차3 ~주차4	◦ 누락 가구 및 획지 신설 추가 – 주차3 A=968㎡ – 주차4 A=2,282㎡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된 주차장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에 신설 포함
광1	◦ 광장용지 폐지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광장용지 폐지
공원1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공1 → 공원1 A=1,500㎡ → 1,638㎡ 증) 138㎡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배수1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배1 → 배수1 A=890㎡ → 895㎡ 증) 5㎡	◦ 가구번호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정선군 공고 제2024-763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정선군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나. 사용일 및 폐기일 : 2024. 6. 28.

다. 신조 및 폐기 공인의 인영

신조 공인명	인 영	비 고
정선군시설국도시과 수입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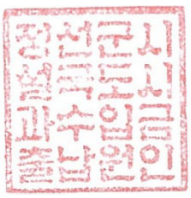	관리부서: 시설국 도시과

양구군 공고 제2024-831호

2030년 양구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 재공람 · 공고

2030년 양구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 · 공고 하고, 주민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7. 05.

양 구 군 수

1. 공람개요
   가. 양구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재공람 · 공고(안)
      - 군계획시설 변경
         ◦ 도로(신설 : 76개소), 체육시설(변경 : 1개소), 학교(변경 2개소, 신설 4개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관련도서 및 조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

3. 공람 및 의견제출 사항
   가. 주민공람
      -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보건소 4층),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나.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제출
      - 제출방법 : 주민공람의견서 양식(양구군 홈페이지)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033-480-7429)등으로 제출
         ※ 우편, Fax의 경우 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공람 및 의견제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 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033-480-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결정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관계기관(부서)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고 제2024-767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거진도시계획도로 소1-29)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진도시계획도로(도로: 소1-29) 개설사업

○ 명 칭 : 거진도시계획도로(소1-29)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사업규모

(단위: m)

사 업 명	위치		총 결정 연장 · 폭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시점	종점				
거진도시계획도로 (소1-29)개설공사	거진리 산52-1	화포리 25-2	L=603 B=10	-	L=603 B=10	-

○ 금회 총 사업 연장 및 사업면적 : 610m / 8,92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성군수

○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마.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착공일 : 2021. 12. 10.

○ 준공일 : 2023. 7. 27.

바.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고성군 공고 제2024-768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5)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50-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간성도시계획도로(도로: 중3-5) 개설사업
○ 명 칭 : 간성도시계획도로(중3-5)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사업규모

(단위: m)

사 업 명	위치		총 결정 연장 · 폭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시점	종점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5)개설공사	신안리 250-5	신안리 349-6	L=328 B=12	-	L=328 B=12	-

○ 금회 사업면적 : 3,59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성군수
○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마.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착공일 : 2018. 4. 19.
○ 준공일 : 2020. 12. 19.

바.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고성군 공고 제2024-780호

고성군 공인 폐기 공고

고성군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고 성 군 수

1. 공인 폐기일 : 2024년 7월 1일
2. 공인 폐기사유 : 민원 인증기 교체
3.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인영	재등록 공인명	인영
고성군수인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인증기전용)		고성군수인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인증기전용)	

고성군 공고 제2024-781호

고성군 공인 폐기 공고

고성군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고 성 군 수

1. 공인 폐기일 : 2024년 7월 1일
2. 공인 폐기사유 : 현내면 민원 인증기 교체
3.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인영	재등록 공인명	인영
현내면명장인 (현내면 인증기 전용)		현내면명장인 (현내면 인증기 전용)	

양양군 고시 제2024-78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경미한 변경) ·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3-115호(2023.6.23.)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제88조에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양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궤도	서면 오색리 497-3	77,144	증)684	77,828	양양군고시 제2023-115호 (2023.6.23.)	폭원12m

□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궤도	• 변경 (증: 684㎡) - 면적 : 77,144㎡ → 77,828㎡	•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 증가

나.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양군 서면 오색리 49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양양 군계획시설(궤도) 사업

○ 명 칭: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현황	기 시 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궤도시설	77,828㎡	-	77,828㎡	-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양군수

○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2,839,037	77,828					
1	서면 오색리	산1	임	22,762,964	55,137	산림청				
2		산1-10	도	10,016	211	건설부				
3		산34	임	26,182	1,605	조*수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7*, 10*동 30*호			
4		산34-2	임	5,886	562	양양군				
5		산104	임	4,587	1,523	양양군				
6		산114	임	264	66	산림청				
7		산114-1	임	430	171	산림청				
8		494	전	3,736	1,721	양양군				
9		495-1	전	2,400	2,400	강원도				
10		495-3	도	288	277	양양군				
11		466	잡	10,512	9,829	양양군				
12		466-3	임	10,304	2,858	양양군				
13		497-3	잡	328	328	양양군				
14		498-2	잡	1,140	1,140	양양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